獨逸統合研究資料集

1990

統　一　院

책을 내면서

이 資料集은 當院의 調査硏究計劃에 의거한 用役課題 硏究報告書를 中心으로 1989年末 以後 推進된 獨逸統一의 背景, 過程 및 諸般 懸案問題들을 綜合, 정리함과 동시에 統獨과 關聯한 條約등을 附錄으로 收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冊子가 獨逸統一과 韓半島 統一問題를 比較·檢討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統一政策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參考資料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收錄된 內容이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時間關係上 各種資料를 多樣하게 收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1990. 12

調 査 硏 究 室

目　　次

◇ 獨逸統一과 유럽 新平和秩序 ····· 3

李源明(한국일보사 統一問題硏究所 硏究委員)

◇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懸案問題 및 解決實態 ····· 81

金淵洙(大邱大學校 敎授)

◇ 附　　錄

1. 東西獨關係 主要日誌
2. 東西獨 統一方案
3. 東西獨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創設에 관한 條約
4. 獨逸統合條約
5. 獨逸問題에 관한 國際的 協議內容
6. 獨·蘇 善隣友好協力 條約
7. 全유럽安保協力會議 頂上會談 結果

獨逸統一과 유럽 新平和秩序

李 源 明

(한국일보사 統一問題硏究所 硏究委員)

目 次

Ⅰ. 序 論

Ⅱ. 獨逸統一의 原因과 背景

Ⅲ. 獨逸統一의 進行過程

1. 內的 統一過程

2. 外的 條件을 위요한 國際協商

Ⅳ. 結論

I. 序　　論

제2차世界大戰 이후 40餘年동안 우리民族과 더불어 分斷의 苦痛을 함께 나누어 오던 獨逸民族은 지금 몽매간에도 그리던 조국통일을 이룩하면서 새 歷史창조의 영광된 道程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3일 0시 子正을 기하여 古色蒼然한 獨逸帝國議事堂앞에 獨逸民族의 역사적 3월 民主革命깃발이자 西獨國旗인 黑·紅·黃三色旗가 높이 게양되고 이어 오전 11시에 "우리 모두 하늘의 神께 감사하세"라는 바흐의 聖樂曲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행된 베를린 필하모니 통일경축식에서 리차드 폰 바이체커 獨逸大統領이 統一獨逸民族國家의 빛나는 첫 出發을 세계만방에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로써 독일民族은 1945년 5월8일 獨逸第3帝國이 무조건 항복을 한지 45年만에 이데올로기對立과 冷戰의 그림자로 짓눌린 民族分斷史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主權을 회복한 統一祖國을 다시 맞게 된 것이다.

10月 3日은 우리 한민족의 開天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白頭山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창건한 날인데 바로 이날이 오늘날 같은 分斷民族이었던 獨逸人에게 지극히 경사스러운 "독일통일의 날"로 되다니—이 무슨 奇異한 인연인가. 한시도 조국통일의 그날을 망각하지 못하는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마치 바람처럼 찾아온 독일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럽分斷과 독일分斷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붕괴된지 1년도 채 되지않는 기간내에 世紀的인 大事件에 속하는 독일통일이 더 더구나 平和的 協商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세계

歷史上 類例가 없는 일이다. 필자는 그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독일통일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먼저 독일통일의 근원적 배경을 규명하고 이어서 東·西兩獨간의 內的 統一過程과 獨逸統一의 外的 條件을 설명한 후 大西洋에서 우랄까지 이르는 유럽 大統合과의 연관속에서 獨逸民族의 장래 및 그 역할을 전망코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今世紀의 역사적인 大實驗인 독일통일 모델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찾아 볼 수 있을런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獨逸統一의 原因과 背景

獨逸統一은 작년 11월 9일 戰後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중의 하나인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베를린장벽이 와해되기 前까지만 하더라도 獨逸統一의 전망은 外的 條件으로 보나 獨逸分斷의 기본적 원인으로 보나 極東지역의 우리 한반도통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둡게 보였다. 獨逸分斷은 우리 한반도분단의 경우와는 달리 세계인류를 비극적 살육의 도가니로 휘몰아 넣은 제2차世界大戰의 전쟁도발이라는 역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히틀러 나치政權의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유태인 大量학살이라는 도덕적 책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實存主義哲學者 야스퍼스, 맑스主義 이론가 하버마스, 歷史學者 골로 만 等 독일의 저명한

歷史上 類例가 없는 일이다. 필자는 그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독일통일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먼저 독일통일의 근원적 배경을 규명하고 이어서 東·西兩獨간의 內的 統一過程과 獨逸統一의 外的 條件을 설명한 후 大西洋에서 우랄까지 이르는 유럽 大統合과의 연관속에서 獨逸民族의 장래 및 그 역할을 전망코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今世紀의 역사적인 大實驗인 독일통일 모델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찾아 볼 수 있을런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獨逸統一의 原因과 背景

獨逸統一은 작년 11월 9일 戰後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중의 하나인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베를린장벽이 와해되기 前까지만 하더라도 獨逸統一의 전망은 外的 條件으로 보나 獨逸分斷의 기본적 원인으로 보나 極東지역의 우리 한반도통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둡게 보였다. 獨逸分斷은 우리 한반도분단의 경우와는 달리 세계인류를 비극적 살육의 도가니로 휘몰아 넣은 제2차世界大戰의 전쟁도발이라는 역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히틀러 나치政權의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유태인 大量학살이라는 도덕적 책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實存主義哲學者 야스퍼스, 맑스主義 이론가 하버마스, 歷史學者 골로 만 等 독일의 저명한

知性들은 獨逸民族은 세계사앞에 속죄하는 대가로 戰後 독일분단 현실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야스퍼스같은 이는 東西關係가 平和共存關係에로 진입하기前인 1960년 3월 "독일통일 요구는 철학적 또는 정치적인 自覺에서 볼 때 非現實的이다. 더우기 비스마르크 獨逸帝國을 기준으로 삼은 독일통일 요구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主張과 같다. 이는 금세기의 소름끼치는 세계적 운명을 불러 일으킨 독일국가의 책임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 이와같은 도덕적 관점이외에 千年의 기독교적 中世 보편질서를 뿌리채로 뒤흔들어 놓은 30년 종교전쟁이후 다채롭게 전개된 근대 유럽정치사를 조감해 볼 때도 중부유럽지역인 독일땅 위에서 통일민족국가를 창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곧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주변국가들은 모두 유럽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땅에서 국제정치적 헤게모니를 요구하게 될 강력한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만, 아드레아스힐 구르버 等 독일사학자들은 19世紀中葉 중부유럽지역에서 비스마르크가 비록 오스트리아지역을 제외했지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小獨逸統一을 이룩한 것을 두고 可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2] 독일사학자들은 독일의 지정학적·전략적 위치에 근거하여 중부유럽지역인 독일땅위에 複數國家가 존재하는 것이 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해 요청되는 현실적 조건으로 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독일민족의 국가적 통일이란 독일인들의 영원한 꿈, 理想에 속하며 독일분단이 오히려 유럽정치사의 큰 흐름이라고 까

지 極言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독일분단은 도도한 유럽 근대정치사의 맥락에서 볼 때 깊은 정치역학적·지정학적 곡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밖의 유럽인은 물론이고 독일인들조차 어느 누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독과정이 지금처럼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社會主義民族理論을 내세워 東獨社會主義國家의 獨自的發展을 강조하면서 民族分離政策을 고수한 [3] 호네커 지배하의 東獨이 1970년대초에 西獨과 基本條約을 체결, 兩獨間 平和共存關係에 진입한 後 유엔에 加入하여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또한 東歐共產圈가운데 가장 높은 국민소득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성장하여 세계 10大공업국의 하나로 發展하자 [4] 독일땅위에서 두개의 독일국가 존재가 사실상 확고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생각되었다. 더욱이 美蘇英佛등 4大전승연합국이 두개의 독일국가존재를 전제로 한 戰後유럽의 現狀維持政策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5] 독일통일은 今世紀중에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理想으로만 看做되어 왔었다.

이처럼 도덕적, 역사적, 및 세력균형관계적 見地에서나 東獨當局의 民族分離政策面에서 볼 때 독일통일이란 그야말로 難題중의 難題였는데도 불구하고 昨年가을 마치 活火山의 분화구가 터지듯 統獨問題가 다시 절박한 민족문제로 터져나오고 급기야 東西兩獨國家가 統一에로 急進展하게 된 근원적 배경은 무엇인가?

東西兩獨이 平和共存關係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급속히 國家的 統一에로 줄달음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베를린장벽의 開放과 이에 잇따른 스탈린주의적인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의 급격한 붕괴에서 형성되었다. 時

空間的 次元에서 독일통일과정은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의 붕괴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의 붕괴를 가져온 對外的 및 對內的 要因, 그리고 서독정부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統獨政策등 세가지 요소를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戰後 40년동안 지속되어온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가 급격하게 붕괴하게 된 原因을 對外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2次大戰 이후 전개된 東西冷戰의 이데올로기對立的 狀況속에서 東歐社會主義陣營의 전략적 前方哨所로서 창설된 東獨社會主義國家가 밖으로부터 危機를 맞이하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소련체제의 혁명적 개혁과 함께 西方국가들과의 協力體制 형성을 표방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運動이 등장하고서부터이다. 周知하듯이 고르바쵸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1917년의 볼세비키大革命과 함께 登場한 소련국가사회주의체제가 점차 깊은 停滯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자 이를 재빨리 통찰하고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이라는 마력적 슬로간아래 對內的으로 총체적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對外的으로는 군축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對西方開放外交를 들고 나왔다.[6] 다시 말하면 崩壞一路에로 들어서는 소련국가사회주의체제의 大轉換과 소련사회주의의 르네상스를 위해 "위로부터의 革命"을 시도한 것이다. 人間的인 民主的 社會主義理念을 표방한 고르바쵸프는 스탈린주의적 國家社會主義의 폐기하에 공산당의 정치권력독점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적 국가계획경제제도의 구조적 개혁과 체제민주화를 도모하고 나왔다. 고르바쵸프는 黨과 國家간의 二元的인 권력分化를 시도하면서 黨權으로부터 獨立된 國家機能의 확대를 내

세웠으며 또한 이러한 政治的 改革과 병행하여 소련경제의 生産性 고양을 위해 국민경제생활의 자율성 확대와 市場經濟制度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고르바쵸프는 對外政策면에서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한 "유럽공동의 집" 창설의 비젼을 제시하여 [7] 戰後유럽分斷秩序의 克服을 도모하고 軍縮을 바탕으로 하여 西方자유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질적으로 大幅擴大하고자 했다. 물론 이와같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70년대초 西獨 빌리 브란트 首相의 東方政策 이니셔티브로 창설된 全유럽安保協力會議體를 주축으로 하는 東西平和共存體制가 점차 유럽大陸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1975년 8월 알바니아를 제외한 全유럽국가 및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의 국가대표들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이른바 全유럽安保協力會議(Konferenz ü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의 最終文書(Schlussakte)에 서명했는데 이 文書는 國家間의 일반관계를 규율하는 10大原則과 이 10大原則을 기본으로 하여 3가지 分野로 나누어지는 細部方針들을 포함하고 있다[8] 헬싱키最終文書의 10大原則은 ① 主權尊重과 主權平等 ② 武力使用 禁止 ③ 國境不侵害 ④ 領土不可侵 ⑤ 紛爭의 平和的 解決 ⑥ 內政 不干涉 ⑦ 人權尊重과 思想의 自由,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 判斷의 自由를 포괄하는 基本的 自由權 尊重, ⑧ 民族同等과 自決權, ⑨ 國家間의 協力增進 그리고 ⑩ 諸般 國際法的 義務履行 등이다. 이 10大原則을 토대로 한 3가지 領域에서의 細部 方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구축과 軍縮에 관한 方針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훈련에 대한 事前通告, 軍事훈련참관단의 상호교환 및 기타 군사적 신뢰형

성조치의 실시와 군축 等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 학술, 기술 및 환경영역에서의 國家間 協力을 促進하기 위한 方針으로서 貿易條件의 改善, 商業活動 保護, 商業發展의 장애요소 除去, 經濟情報 開放, 投資保障, 技術協力 擴大, 환경보호에 대한 상호 협력 및 旅行促進 등 여러가지의 協力促進에 관한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셋째, 人權, 人道的인 문제 및 其他 文化領域에 관한 方針으로서 人的 接觸확대, 情報開放, 言論 및 放送 自由化, 教育 및 學生交流, 그리고 文化交流 增進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全유럽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 最終文書에 明示되어 있는 10大原則을 비롯하여 신뢰구축과 군축, 국가간의 경제기술 협력촉진, 인권존중 등 3분야에서의 細部方針들이 기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있어 기본전제가 되었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헬싱키最終文書에 立脚한 脫이데올로기적인 東西平和共存體制의 形成이 없었다면 登場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觀点에서 보면 이데올로기 對立的인 東西冷戰狀況속에서가 아니라 東西兩陣營間의 平和共存關係속에서 비로소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전환 또는 청산이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에서 "위로부터의 革命", 즉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개시된지 몇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東歐共產圈諸國에서도 體制變革運動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소련의 경우와는 달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等 東歐국가들에서는 밑으로부터 세차게 일어난 平和的 革命에 의해 共產黨이 權座에서 退進당하고, 戰後40여년동안 지속된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이

와동시에 새로운 개혁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수용, 본격적인 체제개혁에로 나아갔다.[9] 그런데 分斷國이라는 특수지위를 가진 東獨의 경우, 다른 어느 東歐 共産國家보다는 먼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토로이카정책을 재빨리 수용하는 前向的 姿勢를 취하여 急變하는 새로운 狀況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은 오히려 退嬰的인 保守主義的 姿勢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土崩瓦解를 당하고 말았다.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의 예상밖의 급속한 붕괴로 말미암아 새로 登場한 東獨의 改革政權도 體制改革 機會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모두 호네커 東獨共産政權의 완고한 時代逆行的 政策路線의 결과에서 緣由되었다 하겠다. 周知되듯이 東歐共産圈에서 국민소득 제1위의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성장하여 소위 사회주의우등생이 된 호네커공산당서기장 아래의 동독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단호히 반대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역사적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호네커는 東獨국가사회주의체제가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미 성취했다고 주장하며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노선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東獨式 사회주의" (Sozialismus in den Farben der DDR)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주의의 마지막 堡壘로 자처했다.[10]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西獨과의 體制競爭을 의식하여 호네커공산정권은 東獨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정책을 부각시켜 서독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東獨국가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89年 10月 6日 東獨建國 40주년 慶祝式을 기해 東獨首都 東베를린을 방문한 소련 고르바쵸프大統領이 東獨공산당 지도부를 향해 "너무 늦게 오는 자는 역사에 의해 벌받게 된다."라는 예언적 警句를 던지며[11] 東獨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조속한 개혁을 직접 종용했을 때도 호네커 동독공산당서기장은 오히려 東獨이 이룩한 업적을 과시하면서 이에 반대했었다. 이처럼 體制改革과 開放路線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한 동독 호네커정권은 폴란드, 헝가리등 이웃 동구공산국가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급속히 추진되어 본격적인 단계에로 접어들자 마침내 孤立無援의 궁지에 빠져 결국 對外的으로 자기가 설 땅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대한 정면거부로 인해 對外的으로 딛고 설 토대를 잃고 孤立된 東獨호네커政權은 동시에 對內的으로도 支持基盤을 상실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호네커의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가 몰락하게된 對內的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獨 호네커政權은 주변의 상황변화에 아랑곳없이 공산당의 獨占的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적인 국가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면서 밑으로부터 일어난 民主的 體制改革運動을 엄중히 탄압했는데 이는 결국 戰後 40餘年동안 유지되어온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의 완전붕괴를 가져온 導火線이 되었다. 東獨의 體制民主化運動은 폴란드·헝가리等 東歐이웃국가에서처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고취되어 활발히 展開되기 시작했는데 이 運動은 자유연대勞組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체제저항적 개혁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작가, 종교인 학자 等의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12]이들 체제비판적인 東獨지식인들은 고르바쵸프登場 이전부터 이미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노선을 신랄하게 비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독일민족의 어두운 分斷現實도 고발해왔다. 이를테면 유명한 시인이자 작사자인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같은 이는 호네커정권이 내세운 사회주의민족이론에 입각한 民族分離政策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분단장벽의 非人間性을 고발했다. 그가 읊은 여러 詩작품가운데

"철조망이 천천히 안으로 파고든다
깊숙히 살속으로, 가슴·다리 속으로,
뇌속으로, 회색빛 세포속으로,
철사줄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섬나라,
납파도가 부딪치는…"[13]

라는 애상의 詩는 감수성 예민한 지식인들이 느끼는 自由不在의 分斷狀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東獨국가정책의 기본노선에 반대하고 국가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며, 意思發表의 자유 等 人間의 基本的 自由權을 요구하는 체제비판적 지식인들을 동독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人物로 규정하고 東獨市民權을 박탈, 西獨 및 西方세계로 추방하든가 또는 감시·수감했다. 호네커정권은 1970년이후 東西平和共存의 테두리속에서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等 기본적 자유권을 制限的·選擇的으로 넓혀 나갔으나 東獨體制의 골격인 國家社會主義體制 자체의 구조적 개혁은 단호히 거부, 지식인들의 民主的 體制改革運動을 엄중히 탄압한 것이다 80년대말 체제개혁운동이 점차 民主的 市民權 회복을 위한 권리요구운동의 樣相을 띄고 東獨國家安全當局의 감시가 약한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확대되어 나가자, 호네커政權은 이에 대한 국가의 統制機能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갔다. 이리하여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인사들이 체포·구금되었다. 1989年 10월 호네커政權이 붕괴되기까지 약

75,000명 가량의 인사가 반체제정치범으로 규정되어 투옥되었는데, 그중 34,00명 정도가 서독정부에 의해 서독으로 구제되었다.

東獨호네커政權은 또한 西獨言論人들의 東獨지역취재활동을 제한했을뿐만 아니라 1988년 11월에는 심지어 소련에서 발간되는 "스푸트니크" 잡지마저도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선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조치를 취했다. 1989년 1월 호네커당서기장이 "베를린장벽은 앞으로 100년동안 더 존속해야 할 것"[14]이라고 호언하며 現實로부터 완전히 유리된채 밑으로부터의 체제개혁요구를 탄압하자 東獨人들은 未來에의 希望을 완전 상실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헝가리 等 이웃 사회국가들에서의 체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9년 여름에 동독시민의 90%가 개혁을 열망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체제개혁열망의 배경에는 정치적 억압이외에도 東獨의 사회·경제적 침체현상이 또 하나의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상 東獨은 비록 東歐 공산권지역에서 최고의 소득수준을 가진 공업국가였지만 이는 공산권내에서의 상대적인 발전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東獨經濟는 餘他東歐諸國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體制 자체에서 오는 경제적 모순때문에 生產性이 낮아지고 成長이 鈍化되면서 심각한 停滯危機에로 빠져 들어갔다. 그밖에 물가조정, 주택건설, 住居費 및 公共料金補助 等의 社會政策分野에 대한 全國家豫算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투여는 심각한 국가재정적자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적 딜렘마와 함께 東獨은 西獨과의 體制競爭에서 완전히 뒤떨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政治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역시 체제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네커정권은 이를 외면했으니, 東獨住民들이 東獨국가의 未來

에 비관적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東獨인구의 약 3분의 1을 점하는 1960년이후 출생한 젊은이들은 호네커정권의 保守的인 국가사회주의노선 고수로 인해 절망하다시피 되었다고 한다. 이들 동독 젊은이들은 히틀러 전쟁의 悲劇을 경험하고 東獨建國의 어려움을 겪은 老長年層의 東獨住民이 과거의 苦難時節을 比較·回想하며 旣存의 東獨國家社會主義體制를 묵묵히 받아들여 왔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전혀 새로운 基準을 가지고 東獨體制를 西獨體制와 비교하면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박수를 보내고 東獨국가사회주의체제의 혁명적 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호네커정권의 단호한 체제개혁 거부로 그 希望이 사라지자 일부 젊은이들은 지식인들이 주도한 民主示威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밖의 일부 젊은이들은 東獨을 떠나 西獨에로의 탈출을 감행했다.

東獨젊은이들이 대거 西獨行 탈출을 감행한 것은 헝가리·오스트리아 國境이 완전개방된 1989년 여름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소련과 폴란드보다 한걸음 앞장서서 체제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고 개방체제로 나아간 헝가리는 1989년 5월 2일을 기해 對오스트리아국경을 개방한 후 9월 10일에는 東獨市民에게도 헝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헝가리·오스트리아국경의 자유통과를 허용했는데, 이와같은 헝가리의 旅行自由化措置는 東獨住民에게 마음대로 서독행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15] 이로인해 東獨社會主義國家의 국경을 둘러 막아놓은 울타리의 一角이 무너진 결과가 되었다. 이때 東獨住民들은 결심만 하면 헝가리·오스트리아국경을 통해 마음대로 서독에로 이주해 올 수 있게 되었다.

헝가리당국이 자국에 여행온 동독인에게 헝가리·오스트리아국경을 자유로이 越境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실제로 동독주민의 서독행 탈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2년 동서양독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매일 평균 50명전후의 동독주민이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탈출 내지 移住해 왔는데 1984년과 1988년 두해에는 평균 100여명의 인원이 날마다 서독에로 넘어왔다.그러던 것이 독일인에게 헝가리·오스트리아국경이 개방된 9월 10일 이후에는 동독주민의 서독행 탈출숫자가 대폭 증가,매일 평균 1,000명이상이 되었으며 9월말까지 20일 남짓한 기간동안 25,000명가량의 동독인이 고향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갔다. 헝가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주재의 서독대사관을 통해 동독을 탈출한 주민의 숫자까지 합치면 10월말까지 50,000명가량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한 셈이 되었다. 이리하여 1989년 한해동안 거의 30만의 동독주민이 서독에로 탈출 내지 이주해왔는데 이중 60%이상이 東獨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20代, 30代의 젊은이들이었다. 1949년 東獨社會主義國家 건국이래 1989년말까지 서독으로 탈출내지 移住해 온 동독주민의 통계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16]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 탈출 및 移住者 통계

Flüchtlinge und Übersiedler aus der DDR(einschl. Berlin-Ost)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lnschl. Berlin-West)1949-1988

Jahr (년도)	Flüchtlinge (탈출자)	Übersiedler[1] (移住者)	darunter: Freikäufe politischer Häftlinge (석방된 정치범)	Insgesamt (총계)
1949[2]	129,245			
1950	197,788			
1951	165,648			
1952	182,393			
1953	331,396			
1954	184,198			
1955	252,870			
1956	279,189			
1957	261,622			
1958	204,092			
1959	143,917			
1960	199,188			
1961	207,026			
1962	16,741	4,615		21,356
1963	12,967	29,665	8	42,632
1964	11,864	30,012	880	41,876
1965	11,886	17,666	1,160	29,552
1966	8,456	15,675	400	24,131
1967	6,385	13,188	550	19,573
1968	4,902	11,134	700	16,036
1969	5,273	11,702	850	16,975
1670	5,047	12,472	900	17,519
1971	5,843	11,565	1,400	17,408
1972	5,537	11,627	730	17,164
1973	6,522	8,667	630	15,189
1974	5,324	7,928	1,100	13,252
1975	6,011	10,274	1,150	16,285
1976	5,110	10,058	1,490	15,168
1977	4,037	8,041	1,470	12,078
1978	3,846	8,271	1,480	12,117
1979	3,512	9,003	900	12,515
1980	3,988	8,775	1,010	12,763
1981	4,340	1,1093	1,584	15,433
1982	4,095	9,113	1,491	13,208
1983	3,614	7,729	1,105	11,343
1984	3,651	34,982	2,236	38,633
1985	3,484	18,752	2,676	22,236
1986	4,660	19,982	1,536	24,642
1987	6,252	11,459	1,247	17,711
1988	9,718	29,033	1,083	38,751
1989				343,000

1 Legale Übersiedlungen mit Genehmigung der Behörden der DDR.
2 Ab September 1949
Quellen:DDR-Handbuch, 3 Aufl., Köln 1985, S. 419; Mitteilungen des Budesministeriums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Jens Schmidthammer:Rechtsanwalt Wolfgang Vogel:Mittler zwischen Ost und West;Hamburg 1987, S. 222

상기 통계에서 명확해지고 있듯이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행 탈출 사건은 결국 1989년에 와서 東獨地域의 空洞化問題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이는 東獨 호네커체제를 결정적인 궁지에 몰아 넣었다. 무엇보다도 기술자, 의사등 동독의 고급기술인력이 대거 서독으로 빠져나갔기때문에 東獨經濟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東獨주민의 서독행 탈출에 관해 東獨의 유명한 작가 스테판 하임(Stefan Heym)은 "현재의 移住파도는 가공할 만한 현상이다. 全東獨이 破產될 위험에 처해있다. 東獨지도부는 자유를 허용하여 인간이 모여드는 사회주의를 창설해야 한다."[17]라고 경고했다. 東獨주민의 서독행 탈출동기와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의사표현자유의 억압, 여행자유의 제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 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밖에 생필품 부족, 경제적 침체도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 동독주민의 서독행 탈출동기로 작용한 요소들이 거의 모두 동독사회주의체제 자체의 취약점에서 생겨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東獨住民의 西獨行 탈출 및 移住動機

(單位:%)

動 機 別	1984	1989
意思發表自由制限	71	74
여행자유 制限	56	74
미래에의 희망 상실	45	69
정치적 억압 및 國家監視	66	65
생필품 공급부족	46	56
가족재결합	36	28
직장에서의 승진 희망 부재	21	26

출처:Richard Hilmer/Anne köhler, Der DDR läuft die Zukunft davon, in: Deutschland Archiv, Heft 12/1989, S. 1385.

東獨국가사회주의의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찾아나선 동독주민의 서독행 탈출사태가 漸增되고 동시에 체제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한편으로 東獨改新教 종교지도자회의는 9월10일 호네커당서기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東獨市民들의 체제개혁 요구와 批判的 意思의 수용,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인들의 동독고향 재방문허용 등을 건의했다.[18]

그러나 호네커아래의 동독당지도부는 이 건의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市民들의 체제개혁 요구를 오히려 탄압했다. 이처럼 동독호네커정권이 변화해가는 정세에 逆行하는 方向으로 경직된 태도를 취함에 따라 東獨內部狀況은 새로운 정치적 긴장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동독의 국가안전당국의 감시가 약한 교회를 근거지로 하여 지금까지 체제민주화운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해오던 비판적 지식인들이 개혁을 열망하는 市民들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운동단체를 활발하게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9월과 10월사이에 여류화가 베르벨 볼라이(Bářbel Bohley)와 변호사 롤프 헨리히(Rolf Henrich)를 중심으로 한 「노이에스 포름(Neues Forum: 新廣場), 物理學者이자 宗教會議委員인 한스유르겐 피쉬벡(Hans-Jűrgen Fischbek)과 영화감독 콘라드 바이쓰 (Konrad Weiss)를 중심으로 한 「지금 民主主義」 (Demokratie Jetzt), 목사 라이너 애펠만(Rainer Eppelmann)과 변호사 볼프강 쉬누르(Wolfgang Schnur)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벽당」 (Demokratischer Aufbruch), 그리고 역사학자인 이브라힘 뵈메(Ibrahim Bőhme)와 목사였던 마르쿠스 멕켈(Markus Meckel)를 중심으로 한 東獨社民黨(Sozialdemokratische Partei Detschlands)等의 정치단체

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이들은 정치이념상으로는 서로 상이한 기치를 내세웠지만 旣存의 동독국가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사회적, 환경적 市場經濟"(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에로 체제개혁을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견을 보여 주었다.[19]

人權과 體制民主化를 슬로간으로 내세워 비판적 지식인들의 집결체로 등장한 초당적 성격의 노이에스 포름은 9월9일 동독지역대표 30인이 參席한 發起大會이래 東獨 國家安全部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탄압을 받아오다가 10월中旬 정식으로 當局승인을 받았는데, 그 회원수가 곧 10만을 넘어섰다. 노이에스 포름을 비롯하여 새로 등장한 비판적 지식인 중심의 정치운동단체들은 10월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독체제의 民主化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을 다짐했다.[20] 이처럼 조직화되기 시작한 체제민주화운동은 10월7일 東獨건국40주년 慶祝式에 參席한 소련 고르바쵸프당서기장이 東獨공산당지도부에게 깊은 우려와 함께 東獨체제의 시급한 개혁을 직접 종용한 이후 급격히 민중운동의 형태를 띠고 東獨大都市지역에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소련 고르바쵸프가 호네커 등 동독당지도부의 경직된 기본노선을 반대하고 있음이 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東獨건국40주년 慶祝式이 끝난 후 이틀째인 10월9일 라이프찌히市의 칼마르크스 廣場에서 7만의 市民이 모여 意思發表의 자유, 旅行의 自由 그리고 體制民主化를 요구하는 示威데모를 벌였는데 이 군중시위는 1953년 東獨의 反蘇민중봉기이래 가장 규모가 큰 데모였다. 10월9일의 라이프찌히 월요군중데모에 대해서 동독국가안전부는 武力使用에 의한 강제저지를 처음으로 시도하지 않았다.[21] 한편 같은 날 東베를린 겟세

마네教會에서는 베를린改新教監督 고트프리드 폴크(Gottfried Forck)중심의 교회대표들이 서명한 呼訴文이 發表되었으며, 이 呼訴文은 平和的 示威를 하다가 지금까지 拘束되어 있는 市民들의 무조건 석방과 함께 平和的 示威데모의 合法的 승인을 당국에 요구하면서 體制民主化와 法治國家化를 주장했다.

이후 계속해서 라이프찌히, 東베를린, 드레스덴, 포츠담, 할레, 프라우엔等 東獨大都市에서 民衆데모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러한 體制民主化를 요구하는 民衆示威는 바로 1970년이래 18년동안 執權해온 호네커政權에 대한 正面挑戰이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호네커아래 東獨당지도부의 경직된 保守主義的 태도는 결국 미래에의 希望을 상실한 東獨젊은이들의 대규모 서독행 탈출사태를 불러 일으켰는가 하면 동시에 東獨民衆의 혁명적 체제저항을 유발했다. 이것이 對內的 원인이 되고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반대로 인해 야기된 호네커정권의 국제적 고립이 對外的 원인으로 작용하여 호네커정권은 드디어 1989년 10월18일 붕괴되고 말았다.[22)]

그런데 東獨호네커政權의 붕괴는 餘他 東歐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공산정권의 몰락차원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이 東獨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동시에 獨逸統一의 계기를 형성하는 깊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10월18일 東獨共産黨인 社會主義統一黨(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중앙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호네커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새로운 SED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함께 東獨國家 기본정책방향의 轉換도 公表되었다.

東獨공산당의 新任黨書記長 에곤 크렌츠는 소련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노선을 수용하여 사회주의틀속의 民主的 改革을 내세웠다. 그는 時急한 政治問題로 제기된 東獨住民의 不法的인 대규모 서독행 脫出事態를 저지하기 위해 旅行의 自由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旅行法의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에곤 크렌츠아래 동독공산당 지도부의 새로운 개혁적인 발걸음보다 東獨民衆의 改革要求는 한걸음 더빨리 나아가고 있었다.

에곤 크렌츠당서기장이 호네커처럼 國家評議會議長과 민족국방위원회의장의 兩職務를 겸직하기로 한 전날인 10월23일 라이프찌히에서 3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民衆이 參加한 民主示威데모가 일어났는데, 이 示威데모에서 東獨民衆은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외치면서 공산당권력독점을 전제로 한 국가사회주의적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편, 자유선거 실시 및 여행 자유화를 들고 나왔다. [23] 이처럼 새로운 슬로건아래 구체적 목표를 내세운 民衆데모는 그후 동독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리하여 11월8일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제10차 중앙위회의에서 21명의 당정치국원 모두가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다. 에곤 크렌츠는 당중앙위원회에 의해 당서기장으로의 유임이 再確認되었지만 호네커시대에 主役을 담당한 당정치국원이자 총리인 빌리 스토프와 國家安全部長인 에릿히 밀케를 비롯하여 헤르만 악센, 쿠르트 하거, 호르스트 진더만 等이 모두 물러났고 그대신에 개혁자로서 명성이 높은 드레스덴지역 당서기장인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새 정치국원이 되었으며 정치국원 총숫자도 21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되었다. 동시에 당중앙위는 11월7일자

로 사퇴한 前總理 빌리 스토프의 후임에 개혁자인 한스 모드로우를 선출하도록 인민의회에 추천했다.

이와같이 東獨 정치권력체제의 핵심인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정치국의 인적 개편이 단행된 후 에곤 크렌츠당서기장은 1989년 11월9일을 기해 유럽분단과 독일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의 역사적인 개방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에곤 크렌츠의 충격적인 베를린장벽 개방조치는 東西兩獨住民의 열광적인 환영뿐만 아니라 世界到處로부터도 好意的인 반응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分斷國의 처지에서 휴전선의 분단장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공산당지도부의 베를린장벽 개방단행과 연관하여 특히 銳意注目해야 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를린장벽 개방조치가 어떠한 전략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장벽개방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소련 고르바쵸프의 영향력이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점이다. 에곤 크렌츠 동독당서기장은 그가 당서기장을 사임한 후 곧 집필한 「장벽개방－평화적 혁명」 (Wenn Mauern fallen. Die Friedliche Revolution:Vorgeschichte－Ablauf－Auswirkungen)이라는 책에서 베를린장벽의 완전개방은 당시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었던 자기자신이 역사발전의 大勢에 순응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 개방단행에 앞서 11월1일 에곤 크렌츠 동독당서기장은 소련을 방문, 고르바쵸프당서기장을 만나 東獨의 장래를 의논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고르바쵸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앞으로 창설될 「유럽 공동의 집」속에서 소련은 독일민주공화국

(DDR)과 독일연방공화국(BRD)에 대해 각각 어떠한 位置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東西兩獨關係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東獨은 餘他 사회주의국가들과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東獨은 소련이 낳은 아들로 볼 수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24] 이와같은 에곤 크렌츠 동독당서기장의 질문에 대해 고르바쵸프는 "지금 東西兩獨간에는 수없이 많은 人的交流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事實을 아무도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人的交流를 저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人的交流는 管理下에 두어져야 하며, 航路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25]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양독주민간의 人的交流 차원을 넘어서는 베를린장벽의 완전 개방조치에 관한 고르바쵸프의 직접적인 言及에 관해서는 아직도 그 資料가 公開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베를린장벽 개방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에곤 크렌츠의 訪蘇當時만 하드라도 고르바쵸프소련당서기장이 여전히 두개의 독일정책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르바쵸프소련당서기장이 크렌츠동독당서기장에게 東西兩獨간의 「規制된 그러나 활발한 人的交流」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명확해진다 하겠다.

그렇다면 독일통일의 불가피성을 담고 있는 베를린 장벽의 완전 개방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전략적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그대로 남는다. 에곤 크렌츠 동독당서기장은 현재 東西兩獨간의 旅行自由化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적극적 견해를 전적으로 존중하여 베를린 장벽의 역사적 개방을 스스로 단행했다고 주장할 뿐 그 以上의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독일통일이 이루진 오늘날 동독에서는 에곤 크렌츠당서기장이 여행자유화를 부르짖고 나온 東獨民衆들의 감정적인 파토스에 휘몰려 베를린장벽을 갑작스럽게 완전개방한 것은 너무 조급하고 무책임한 조치였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를린장벽의 무계획적이고 너무 성급한 완전개방으로 말미암아 동독사회주의국가가 민주적 체제개혁의 시기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정녕 동독사회주의국가의 最後理性(Ultima ratio)이란 말인가"라고 회의하면서 무엇보다도 東獨體制의 민주적 개혁을 부르짖은 동독개혁정치가 한스 모드로우가 한탄했듯이 東獨社會主義國家는 베를린장벽의 완전개방이후 體制民主化의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채 그만 정치적·경제적으로 그의 生存能力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베를린장벽의 개방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후 에곤 크렌츠아래의 동독당지도부는 곧이어 체제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듯이 11월 9일 저녁 베를린장벽 개방이 공표되고 11월10일 續開된 東獨SED 당중앙위 10차회의는 東獨體制의 全般的 改革을 내용으로 하는 SED의 「行動강령」(Aktionsprogramm)을 發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선거법 제정, 연립정부 형성, 지방자치행정 실시, 헌법재판소 설립, 정치형사법 개정, 새로운 言論法 제정, 인민의회에 의한 국가안전기관의 통제, 총체적 경제개혁 等의 體制民主化 方向을 제시했다.[26]

이처럼 에곤 크렌츠아래의 새 동독당지도부가 베를린장벽의 역사적 개방과 체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公表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13일 라이프찌히에서는 20만에 이르는 민중의 示威데모가 또 다시 일어났다. 이 民衆示威데모는 무엇보다도 동독공산당의 권력독점에 반대

하는 주장을 들고 나왔으며 이 주장과 함께 조속한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물론 라이프찌히에서 뿐만 아니라 노이브란덴부르크, 코트부스, 쉬베린, 할레, 마르데부르크, 칼맑스 市, 드레스덴 等의 도시에서도 數萬名의 군중이 모여 같은 내용의 요구를 내세운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은 민중데모가 일어나자 동독SED 당내에서도 당의 下部基層幹部들이 당지도부의 권력독점을 신랄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黨의 일대혁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東獨SED의 기능마비화 현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40여년동안 지속된 당의 동독국가지배에 종식을 가져오는 導火線으로 작용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10월18일 호네커당서기장 아래의 동독정치권력체제가 붕괴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사이에 東獨社會主義體制의 基軸인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이 몰락에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으니-이는 바야흐로 동독에서 정치권력의 공백현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개혁자 한스 모드로우가 이미 당중앙위 제10차회의에서 적절하게 예언했듯이 "이제 이나라 동독에서 社會主義 存在自體가 문제"로 등장했다.[27]

東獨공산당지도부의 기능상실로 인한 정치적 공백현상의 到來를 깊이 우려한 한스 모드로우는 인민의회에 의해 內閣總理로 선출된지 사흘째인 11월17일 즉시 새 聯立政府를 구성하고 그의 첫 정부성명서를 통해 국가, 경제, 사회等 全般에 걸쳐 총체적 개혁을 약속했다. 이리하여 東獨改革旗手인 한스 모드로우總理가 에곤 크렌츠 SED당서기장을 대신하여 東獨정치권의 중심인물로 浮上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東獨各地域에서 民衆示威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동시에 東獨故鄕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가는 移住者의 숫자도 늘어났다.

베를린장벽의 개방조치후 서베를린과 서독을 방문, 풍요롭고 자유로운 서독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른 한편 공산당권력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 해방된 수백만의 동독민중들은 동독국가사회주의체제의 민주적 개혁범위를 넘어서서 조국통일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동독민중들은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지금까지의 구호대신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새로운 통일슬로건을 부르짖으면서 示威를 벌였는데, 이는 바로 東獨의 體制民主化運動이 民族統一運動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東獨民衆이 社會主義理念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西獨生活을 동경하면서 民族統一을 부르짖자 한스 모드로우총리아래의 東獨政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인간적이고 民主的인 社會主義理想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아 體制民主化運動을 주도해 온 비판적 동독지식인들조차 상황의 급진적 변화에 당황과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東獨 모드로우정부와 비판적 지식인 중심의 재야세력은 동독 사회주의국가의 독자성을 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모드로우총리는 11월 17일에 발표한 그의 첫 정부성명에서 명백히 했듯이 東獨사회주의국가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兩獨間의 광범한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주장했었다.[28] 모드로우총리의 東西獨 條約共同體方案은 서독경제의 지원을 받아 당면의 동독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이를 통해 東獨住民의 대규모 서독행 탈출을 완화 내지 저지하는데에 주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모드로우총리는 통일문제란 정치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먼 장래의 민족

문제라고 看做했는데 여기에 대해 체제비판적인 동독지식인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東獨民衆의 감정적 분위기와 동독내부상황의 흐름은 이미 感傷的 統一방향에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드로우정부와 東獨在野 지식인들은 統獨問題를 위요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1월27일 라이프찌히에서 20만의 동독민중이 또 다시 示威를 벌이고 대대적으로 통일을 부르짖고 나왔을 때 東獨政府는 기실 進退兩難의 어려움에 있었다. 이와같은 동독내부상황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통찰한 西獨聯邦 헬무트 콜 首相은 11월28일 10개항목의 새로운 統獨方案을 제시했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29]

① 서독연방정부는 여행조건의 과감한 완화를 조건으로 하여 東獨住民의 서독행탈출 등으로 일어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즉각적 해결을 위해 과도기동안 현금지원의 용의가 있다.

② 서독연방정부는 경제, 학문, 기술, 문화 및 환경 等 제반분야에서 兩獨間의 광범한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③ 동독당국이 재야세력과의 합의를 통한 헌법개정과 새로운 선거법 제정, 東獨공산당의 권력독점 폐지, 정치적 형법폐지에 의한 모든 정치범의 즉각석방 等의 조치를 통해 동독정치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市場經濟制度를 도입하는 등 동독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면 광범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④ 모드로우총리가 제안한 조약공동체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⑤ 독일에서 하나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창설하기 위해 兩獨間에 국가연합적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결정적 措置를 취할 용의가 있다.

⑥ 兩獨關係의 발전은 전유럽 발전과정속에 귀속돼야 할 것이다.

⑦ 연방정부는 동독의 유럽공동체 가입과 이를 위한 양독간의 무역협력협정의 즉각적 체결을 찬성한다.

⑧ 전유럽안보협력회의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⑨ 유럽분단과 독일분단의 극복은 군비통제와 군축의 빠른 진전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⑩ 독일의 국가적 통일은 연방정부의 정치적 목적이다.

서독연방 콜수상의 단계적인 10개항 통독방안이 발표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2월4일 東獨의 수많은 大都市－즉 라이찌히, 칼 맑스 스타트, 쉬베린, 드레스덴, 노이브란덴부르크, 코트부스, 할레, 마그데부르크, 동베를린, 포츠담, 술, 프랑크푸르트에서 수십만명의 東獨民衆이 東獨SED 前指導部의 직권남용과 부패를 규탄하고 동시에 兩獨간의 즉각적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데모를 벌였는데, 이 示威는 東獨內部 정치상황변화에 커다란 轉機를 가져왔다.

동독공산당 정치국원등 특권층만이 거주하는 반트리즈(Wandlitz)지역의 호화판 생활, 당특권층의 부패타락, 직권남용 等의 과거사실이 폭로되면서 일어난 東獨住民들의 분노때문에 호네커前당서기장과 에리히 밀케前國家安全部長이 반트리즈에서 家宅拘禁되고, 그밖의 前당정치국원들이 형사처벌대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이로인해 東獨SED는 화려한 과거의 권력지위를 완전상실하고 말았다.

이와동시에 비판적 지식인중심의 재야정치세력은 東獨체제민주화의 감시자 및 통제자 역할을 목적으로 내세운 「圓卓會議」(Runden Tisch)를 결성, 12월7일 東베를린에서 第1차회의를 열었다. 이 제1차 圓卓會議에는

1989년 가을이후 새로 등장한 노이에스 포름, 지금 민주주의, 민주개벽당, 東獨社民黨, 東獨녹색당, 평화인권발의(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等 재야정치그룹(정당 및 사회단체)을 비롯하여 社會主義統一黨(SED, 1989년 12월 6일부터 SED/PDS, 1990년 2월 4일부터 PDS), 자유민주당(LDPD, 1990년 2월 1일부터 LDP), 민족민주당(NDPD), 민주농민당(DBD), 기민당 (CDU)等 旣存 5개政黨을 포함, 모두 17개 동독정치단체들의 39명의 대표자들이 參席했다.

東獨民衆의 體制民主化요구를 代辯한 在野勢力中心의 圓卓會議는 1989년 12월7일의 제1차회의 開催를 벽두로 하여 1990년 3월 12일에 마지막 열린 제16차회의까지 지속되었는데, 무엇보다도 市民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동독국가안전부의 해체, 정치범 석방, 자유선거 실시, 그리고 東獨憲法 개정 等의 요구 및 관철에 있어서 決定的 役割을 했다.[30] 이리하여 圓卓會議는 東獨政府나 人民會議보다도 더많은 국민의 信賴를 얻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로우총리는 국가기본정책의 실시나 對西獨政治協商을 하게될 경우 國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圓卓會議의 자문내지 적극적 協力을 요청했다.

그런데 統一問題에 관해서는 圓卓會議도 모드로우政府와 마찬가지로 東獨民衆의 감상적·급진적인 통일요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모드로우총리가 12월 20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서독 콜수상과 東西兩獨간의 광범한 協力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공동체에 합의했을 때 圓卓會議는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모드로우총리는 東獨民衆의 감상적 統一열망에 대해 크게 우려했지만, 統獨문제가 이미 또다시 時代的 民族問題로 등장했음을 인식하고, 1990

년 3월18일에 역사적인 첫 人民議會 自由總選을 실시할 것을 圓卓會議 대표들과 합의한 후 1월30일 소련을 방문, 고르바쵸프당서기장과 統獨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31] 이 협의를 통해 소련이 독일통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드로우총리는 곧이어 2월1일 "독일이여, 통일조국이여"(Deutschland, einig Vaterland)라는 슬로건아래 단계적인 새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새 통일방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32]

첫째, 東西兩獨간에 協力과 友好善隣에 관한 協定締結, 둘째, 東西兩獨간의 國家聯合 창설, 셋째, 兩獨國家의 주권적 권리를 독일국가연합에 이관, 넷째, 독일국가연합 틀속에서 통일독일국가 형성, 다섯째, 상기의 발전과정을 위한 필연적 전제조건으로서 독일연방(Főderation)의 길로 들어선 東獨과 서독의 군사적 중립화. 이와같은 모드로우총리의 새 통일방안의 전략적 목적은 동서양독간의 급속한 국가적 통일보다는 오히려 東獨의 당면한 체제위기를 兩獨간의 고도협력체제에 입각한 국가연합 방식을 통해 해결코자 하는데에 있었다.

모드로우총리는 새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후, 2월 5일 圓卓會議의 在野勢力대표13명을 無任所長官으로 발탁한 擧國的 責任內閣을 구성, 한편으로 3월18일에 실시될 自由總選擧에 대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2월 13일 서독수도 본에서 개최될 제2차 東西兩獨頂上會談에 臨할 준비를 했다. 第2차 東西兩獨頂上會談을 바로 목전에 두고 圓卓會議도 2월12일 第12차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하나의 「독일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주요조치로서 100억내지 150억의 DM(독일마르크화)에 달하는 「연대기여금」(Solidarbeitrag)을 즉시 지원해줄

것을 西獨정부에 요청하는 협상전략문서(Positionspapier für Verhandlungen)가 통과되었다.[33] 이 협상전략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認知한 모드로우총리는 2월13일 서독수도 본을 방문, 서독연방 콜수상과 兩獨頂上會談會議를 했다.

이 兩獨頂上會談에서 東西兩獨間의 화폐통합과 경제공동체형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서독연방 콜수상은 현재의 과도적인 모드로우 東獨정부가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즉각적인 連帶寄與金지원을 거절했다. 서독연방 콜수상은 3월 東獨自由總選이후 새로 들어서는 완전한 合法性을 가진 東獨新政府와 더불어 구체적 경제지원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對東獨協商方針에 입각하여 西獨基民黨 소속의 콜수상은 이미 2월5일 서베를린에서 東獨基民黨(CDU)의장 로타르 드메이지어(Lothar de Maiziere), 독일사회연맹(Deutsche Soziale Union)의장 한스-빌헬름 에베링(Hans-Wilhelm Ebeling), 민주개벽당(Demokratischer Aufbruch)의장 볼프강 쉬누르(Wolfgang Schnur)等 동독 右翼民主陣營의 대표들과 만나 東獨人民議會 자유총선대비를 위한 선거전략을 협의했었다.

이 협의후 동독에서는 곧 우익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선거동맹체인 소위 「독일을 위한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이 구성되었다.[34] 이처럼 東獨地域에서 우익민주진영이 「독일을 위한 연합」을 구성하여 東獨자유총선대비를 완료하자, 곧이어 2월10일 서독연방 콜수상은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외상을 帶同하고 모스크바를 방문, 獨蘇頂上會談을 열고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 고르바쵸프당서기장의 意中을 살폈었다. 이 頂上會談자리에서 西獨聯邦 콜수상은 기존의 두개 독일정책을

넘어서서 원칙적으로 독일통일을 독일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로 규정하는 소련 고르바쵸프당서기장의 새로운 對獨政策方向을 처음으로 確知했었다.[35]

이와같이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對獨政策方向을 명백히 認識한 서독연방콜수상이 비록 체제개혁자이긴 하지만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東獨民衆의 지지기반도 弱한 모드로우東獨總理와 과도적인 모드로우정부를 협상대상으로 삼지않고 동독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자유총선에 대비하여 동독 우익민주진영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로 나아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드로우東獨總理가 2월13일의 第2次 본兩獨頂上會談에서 西獨聯邦 콜수상으로부터 아무런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얻어내지 못하고 東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東獨內部 政治狀況은 보다 두드러지게 政治的 空白現象을 露呈하기 시작했고 東獨住民의 經濟生活도 工業生産의 減退와 생필품의 공급부족 등으로 惡化一路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雪上加霜으로 東獨住民의 西獨行 脫出숫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었으며, 동시에 급진적 통일을 부르짖는 東獨民衆의 示威 역시 동독 전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처럼 東獨內部狀況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不安定의 파도에 휩쓸린 가운데 東獨의 여러 旣存정당들은 물론이고 호네커정권의 붕괴전후 새로 생긴 정당 또는 정치단체들도 東獨建國以來 40여년만에 최초로 실시되는 3월18일의 자유총선을 대비하여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東獨右翼民主陣營이 선거동맹체로서 「독일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자, 곧 잇따라 2월7일 東獨의 진보적 在野세력인

「노이에스 포름」 (Neues Forum), 「지금 민주주의」(Demokratie Jetzt), 「평화 인권발의」(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等이 「동맹 90」(Bűndnis 90)이라는 이름아래 하나의 조직체로서 결합하여[36] 자유총선에 臨할 준비를 했고, 2월11일에는 東獨의 자유주의자정당에 속하는 독일자유민주당(Liberal-Demokratische Partei:LDP, 1945 7월5일 창설), 自民黨(Freie Demokratische Partei:FDP, 1989년 12월 창설), 獨逸廣場黨(Deutsche Forumspartei:DFP)等 3정당이 「자유민주주의자연맹」 (Bund freier Demokraten)을 결성,[37] 총선대비에로 나아갔었다. 그후 2월14일에 東獨綠色黨(Die Grűne Partei)이 여성단체인 「獨立女性同盟」 (Der Unabhängige Frauenverband)과 선거동맹체를 구성했으며, 東獨社民黨(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은 2월 25일 라이프찌히 제1차 지역당대회에서 서독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를 명예의장(Ehrenvorsitzender)으로 추대한 후 총선대비에로 나아갔다.[38] 한편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후신인 「民主社會黨」(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 PDS)도 2월23일에서 25일까지 이틀동안 東베를린에서 열린 선거대비를 위한 全黨大會에서 모드로우총리를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후 "민주적 자유을 위해, 社會的 安定을 위해"라는 선거강령을 채택하는 等 선거채비를 서둘렀다.[39]

東獨의 좌우익 정당들이 모두 독일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한결같이 인정, 東西兩獨간의 통일을 정책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東獨社會主義計劃經濟를 조속히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할 것을 내세운 점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보여 주었지만, 統獨方法에 있어서는 의견대립을 보여주었다. 즉 우익민주정당들은 대체로 조기통일을 주장한 반면, 좌파민주정당

들은 점진적인 통일에로 기울어졌다. 東獨右翼陣營의 基民黨, 독일사회연명, 민주개벽당은 東獨社會主義體制를 서독모델에 따라 改革할 것을 주장, 즉 동독을 정치적으로 연방체제에 바탕을 둔 의회정치제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전환할 것을 내세웠으며 이와함께 統獨方法으로서는 東獨의 서독연방 가입을 뜻하는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제시했다.

이들 東獨우익민주진영의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서독기민당 소속의 콜수상은 3월1일 동독 칼맑스스타트 선거집회에 모인 20만 군중을 향해 서독연방정부는 자유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되는 합법적 동독정부에 대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긴급비상계획(Sofortprogramm)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東西兩獨화폐의 1對1 等價交換에 입각한 兩獨間 화폐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동독자유주의자들의 선거동맹체인 「자유민주주의자연맹」도 조기통일을 주장하면서 동독사회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法治國家原則에 따라 구조적 개혁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동독지역에 적용할 것을 내세웠다. 東獨자유민주주의자들은 기본법 23조에 입각한 早期統一을 주장한 점에서 基督敎民主主義者들과 軸을 같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원리를 강조했다는 데에 그 특색을 보여 주었다.

東獨의 기독교민주주의자들이나 자유민주주의자들과는 달리 東獨社會主義者들은 民族문제보다는 社會問題에 중점을 두면서 점진적 통일을 내세웠다. 東獨社民黨의 당강령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東獨社會民主主義者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동독체제를 「사회적·환경적 시장경제」 (Sozial und ökologisch orientierte

Marktwirtschaft)로 전환하고, 1990년 7월1일부터 兩獨間 경제·화폐통합을 실시할것을 주장했다. 統獨문제에 있어서 東獨社民黨은 기본법23조에 입각한 통일이란 西獨의 동독흡수를 의미하는 통일이기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서독기본법 146조에 의거, 새 통일헌법 제정과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東獨社會主義 統一黨의 후신 東獨民社黨(PDS)은 과거와의 완전결별을 통해 진정한 좌익민주진영의 旗手가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다원적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적·환경적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社會主義經濟의 장점과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을 모두 취한다고 하는 소위 第3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동독의 사회적 공적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동서양독간의 대등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民社黨 統獨政策이라고 했다.

東獨의 진보적 在野民主勢力의 聯合體인 「동맹 90」 (Bűndnis 90)은 市民의 自由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사회의 民主的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代議民主主義의 취약점을 補塡하기 위해 直接民主主義要素를 가미·확대할 것을 公約했다. 그리고 경제제도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사회보장권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적·환경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동맹 90」의 東獨在野民主人士들이 비록 정치이념적으로 완전합의를 본 정책테제를 내세우지 못하고 일부는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으로, 또 일부는 좌파사회주의입장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東獨體制가 우파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통독방식에 대해는 그들 在野民主人士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명백히

反對했다.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의 권력독점 폐지, 東獨國家安全部의 해체, 그리고 스탈린주의적인 동독국가사회주의체제의 극복을 가져옴에 있어 주도적 역활을 해온 그들 재야민주인사들의 眼目으로 볼 때에는 서독 기본법 23조에 입각한 동서독 조기통일이란 동독민중의 서독 콜정부에로의 투항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 90」의 在野民主人士들은 東獨體制의 民主的 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東西兩獨이 對等한 조건위에서 서서히 점진적 통일에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밖에 동독녹색당과 독립여성동맹은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한편, 조기통일을 반대하고 동서양독의 상호개혁과정으로서의 統獨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東獨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각기 자기들의 정치이념이나 信條에 입각하여 東獨體制의 民主的 改革을 위한 다채로운 정강정책을 내세웠는가 하면, 또 한편 東獨住民들의 感傷的 통일분위기를 의식하여 여러가지 統獨方案을 제시, 東獨건국이래 최초로 실시하는 自由총선에 臨했다.

東獨人民會議 自由總選에 대비하여 등장한 東獨政黨들의 여러가지 統獨方案들은 그 內容 골격을 간추려 보면 결국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기통일방법과 점진적 통일방법이다. 早期統一方法論은 右派에 속하는 기독교민주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漸進的 統一方法論은 대체로 左派에 속하는 社會民主主義者들과 진보적 在野民主人士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기독교민주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내세운 早期統一論이 東獨의 서독 및 서방세계에로의 조속한 편입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던데 반해, 漸進的 統一論은 東西兩獨이 무리하게

早期統一을 추진하는 경우, 이것이 동서양독주민들의 막대한 物的·心的 희생을 강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세계균형 관점으로 볼 때도 국제적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단계적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즉 단계적 통일방법이란 東西兩獨間의 현존 平和共存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우선 東獨體制를 사회적 시장경제구조로 개혁한 이후 全獨 경제문화공동체를 실현, 자연스러운 進化的 발전을 통해 정치적 통합에로 나아가게 한다는 주장이다.

激動의 혁명적 상황속에서는 靜的인 理性의 힘보다는 動的인 파토스의 정열이 歷史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東西古今의 哲理란 말인가. 1990년 3월18일 東獨最初의 自由總選에서 東獨民衆의 파토스는 급진적인 조기통일을 선거모토로 내건 東獨基民黨에 다수지지표를 던졌다.[40] 東獨人民議會 自由總選에는 24개의 정당, 정치단체 그리고 선거명부 연합단이 15개 선거구역에서 選擧戰을 벌였다. 선거유권자 총수 12,377,372명가운데 93,22%가 人民議會 총선에 참여, 투표했다. 40,91%의 최대다수 득표를 얻어 제1당이 된 동독기민당은 인민의회의원 총 400명가운데 164개 의석을 차지했고, 21,84%의 지지표를 얻어 2위의 득표를 한 東獨社民黨은 87개 의석을 차지했다. 東獨共産黨의 후신인 民社黨(PDS)은 16.33%의 득표를 얻어 65개 의석을 확보했으며, 동독자유주의자들의 정당연합체인 「자유민주주의자연맹」 (Bund Freier Demokraten)은 5,28%의 득표를 획득, 21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東獨의 진보적 在野民主人士들의 정치연합체인 「동맹 90」 (Bűndnis 90)은 예상외로 득표율이 低調, 겨우 2.90%의 지지표를 얻는데 그쳐 12개 의석만을 차

지했다. 그밖에 농민당이 2.19% 지지를 얻어 9개 의석을, 녹색당이 1.96% 지지를 얻어 8개 의석을, 「독일민족민주당」(Nation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이 0.39% 지지를 얻어 2개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 나머지 독일민주여성동맹, 좌파연합 (Aktionsbündnis Vereinigte Linke), 새물결 청년명부연합 (Alternative Jugendliste)이 각각 0.33%, 0.18%, 0.13%의 지지를 얻어 똑같이 1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東獨人民議會 자유총선의 결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注目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東獨의 스탈린주의적인 호네커 국가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東獨體制民主化의 門을 여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적인 모드로우정부의 거국적 책임내각 구성에 참여하여 對西獨 정치협상에 있어서도 실질적 받침대 역할을 한 동독재야인사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東獨在野民主勢力의 선거패배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는 첫째 東獨在野民主勢力의 선거연합체인 「동맹 90」이 東獨住民들을 매혹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과 분명한 政策代案을 제시하지 못했고, 둘째 東獨在野民主勢力 自體가 정치이념에 있어 여러갈래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독 민중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재야민주세력이 제대로 효율적인 선거운동 등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東獨基民黨, 東獨社民黨 그리고 東獨自民黨 等은 西獨에 있는 兄弟黨으로부터 物心兩面으로 대거지원을 받아 총선에 臨했다. 특히 東獨基民黨의 경우 서독연방

콜수상 자신이 직접 나서서 東獨住民에게 서독정부의 대규모 경제지원 等을 公約하면서 東獨基民黨의 선거운동을 측면지원하고 나왔으니 東獨基民黨의 승리는 강건너 불을 바라보듯 명확한 일이었다 하겠다.

東獨人民議會 총선에 있어 서독모델에 입각하여 早期統一을 내세운 東獨基民黨이 승리하고 在野民主勢力이 참패함으로써 東獨國家의 운명적 주사위는 이미 던져지고 말았다. 東獨땅위에 체제개혁을 통해 인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또한 이를 통해 동독국가의 독자성을 유지한 후, 그 바탕위에서 1對1 동등한 자격으로 서독과 더불어 점진적 통일을 이룩해가고자 한 在野民主勢力의 꿈은 선거참패와 함께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으며, 이로인해 또 한편으로는 동독 社會主義國家가 딛고 설 수 있는 토대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셈이 되었으니—이는 역사의 필연성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동독민중이 전후 40여년동안 동독공산당 지도부가 사실상 全獨逸의 社會主義化를 내세우면서 민족분리정책을 강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民族單一意識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조기통일을 부르짖게된 실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도 西獨의 현실주의적이고 실질적인 統獨政策을 分析하고 이와함께 社會的 市場經濟에 바탕을 둔 서독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東獨住民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론과 스탈린주의적 국가사회주의이념을 기본전제로 한 통제적인 東獨體制속에 살면서 獨逸人으로서의 역사의식을 잃지 않고 民族的 單一性을 維持高揚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정부가 지난 20년동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추진해온 현실주의적인 "작은

걸음정책"의 덕택이다.

1969년 서독연방정부 首相職에 오른 社民黨出身 빌리 브란트에 의해 提示된 작은 걸음정책은 1民族2國家理論에 입각하여 東獨을 國際法上 行爲主體가 될 수 있는 사실상의 國家로 승인하고 이러한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Staatsrechtliche Anerkennung)을 토대로 東西兩獨間 平和共存體制를 確立, 이 平和共存體制 틀속에서 東西兩獨간의 人的交流 확대를 활발히 추진하고 동시에 역사적인 民族單一性을 유지 高揚하는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41]

서독정부는 이 작은 걸음정책에 입각하여 東西양독간의 분단장벽을 넘어 인간과 인간간의 만남을 촉진, 분단의 고통을 감소하기위해 온갖 가능한 현실적 조치를 모두 다 취해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은 브란트의 작은 걸음정책이 동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가 그의 對東獨 작은 걸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먼저 서독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相互武力不行使宣言을 행할 것을 제의했다는 것은 주지된 일이다.

서독정부의 현실주의적인 작은 걸음정책 덕택으로 東獨住民들은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체제에 의해 세워진 분단의 장벽을 넘어 西獨住民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기집 안방에서 서독의 TV방송을 사실상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東獨人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독자유민주주의체제,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서독일상생활을 피부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서독마르크貨의 국제적 위력도 알았다.

그리고 고르바쵸프소련대통령의 외교정책고문으로서 독일문제전문가인 다쉬체프교수가 말하듯이 東獨人들은 사회적 시장경제틀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독의 사회보장정책이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보장정책보다 실제에 있어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事實도 명확히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東獨 호네커체제가 붕괴되고 베를린장벽이 개방되자 東獨住民들이 사회주의를 박차버리면서 서독모델에 따라 東獨體制를 조속히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독일통일을 소리높여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겠다.

이러한 視角에서 보면 두개의 독일국가를 하나로 묶는 끈이자 또한 장차 외적 여건이 성숙할 경우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민족적 단일성의 유지와 人間과 人間의 접촉교류를 통해 분단고통의 감소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빌리 브란트의 작은 걸음정책이 독일민족의 국가적 통일에 기여한 공적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Ⅲ. 독일통일의 進行過程

自由, 民主主義, 社會的 市場經濟 도입 및 早期統一을 선거구호로 내세운 東獨基民黨이 3월18일의 東獨人民議會 자유총선에서 승리하고 드메이지어 총리아래의 聯立정부가 등장함으로써[42] 東西兩獨간의 內的 統一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실현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統獨內部條件이 형성되었다.

東西兩獨관계가 통일을 향해 신속하게 움직여 나가자 독일통일의 外的條件을 위요한 美蘇英佛등 4大전승연합국 중심의 국제협상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독일통일의 內的過程과 外的過程이 두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서로 맞물려 진행된 것은 독일통일문제 자체의 2중적 성격에 기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럽대륙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독일의 지정학적, 전략적 지위때문에 독일통일문제가 독일민족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全유럽인들의 死活的 안보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국제문제라는 兩面性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된 일이다. 이러한 독일통일문제의 본질적 성격때문에 독일통일과정은 美蘇英佛등 4大전승연합국 뿐만 아니라 폴란드 等 독일 이웃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美英佛 등 3대 西方聯合國은 이미 1952년 5월 파리에서 西獨 아데나워政府와 맺은 소위 「獨逸條約」 (Vertrag ű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Drei Mächten)에 입각하여 新生 독일연방공화국에게 主權을 돌려주면서 同 조약 7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일민족이 "유럽공동사회에 통합되고 독일연방공화국과 같이 자유민주헌법을 가진 통일독일"을 평화적 방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다면 이를 공동지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43]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래 동독내부에서 치솟아 오른 주민의 통일열기에 부응하여 東西兩獨의 정부가 서독기본법 23조에 따른 독일통일을 추진해 나가자 美英佛 3강대국은 이를 반대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단지 서방3강대국은 유럽평화질서 테두리속에 독일통일을 지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러나 통독문제의 주요한 열쇄하나를 갖고 있는 소련이 통일독일의 서방세계 편입을 가져오는 서독기본법 23조에 따른 통독방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통일은 대외적으로 難關에 봉착해 있었다. 소련의 대독일정책은 한국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1952년에 스탈린이 제안한 독일중립화 통일안이[44] 서독 아데나워정부와 서방3강대국의 거부로 좌절된 이래 점차 두개의 독일국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소련의 두개 독일정책은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다.

고르바쵸프도 두개 독일정책에 기초하여 소위 "유럽공동의 집을 창설하자"라는 그의 全유럽 통합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후 얄타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고르바쵸프의 大유럽비전은 동독 호네커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베를린장벽의 개방으로 인해 독일 내부상황이 통일에로 급속히 움직여 나감에 따라 사실상 그 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의 對유럽 및 對獨逸정책이 狀況變更으로 인해 그 基調에 있어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勿失好機라 서독 연방정부 콜수상과 겐셔외상의 적극적이고 生動的인 對蘇統一外交가 개시되었다. 서독 콜수상은 고르바쵸프의 유럽공동의 집 구상을 수용하여 포괄적인 獨蘇經濟協力關係의 形成을 조건으로 "독일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공동의 집을 창설할 것"을 제의했다.[45] 이러한 콜首相의 기본구상 제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서독 겐셔외상은 천재적인 對蘇統一外交를 전개, 결국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으로부터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 이로써 독일통일의 문은 전후 독일이 분단된지 45년만에 처음으로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독일통일의 外的 진행과정이 東西양독간의 內的 統一을 촉진시켰는가 하면, 거꾸로 兩獨간의 內的 통일속도는 또다시 外的 統獨條件에 대한 강대국간의 국제협상을 촉진시켰다. 물론 독일통일의 內的, 外的 진행과정을 추진시켜온 原動力은 독일민족의, 특히 동독주민들의 통일의지에 있었다.

1. 內的 統一過程

東西兩獨間의 內的 統一過程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완전한 民主的 合法性을 가진 東獨新政府가 들어선지 일주일째인 1990년 4월 19일 드메이지어총리가 그의 첫 施政연설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구호아래 동독체제의 개혁을 요구한 동독국민은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목표에로 전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독모델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독일통일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나서부터이다.[46] 東獨基民黨의 드메이지어총리 시정연설이 발표되자 곧 잇따라 西獨基民黨의 콜수상은 동독경제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東西兩獨間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兩獨間 국가조약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리하여 4월 24일 서독 首都 본에서 東西兩獨 頂上會談이 개최되고 이 會談에서 드메이지어총리와 콜수상은 우선 독일통일을 위한 첫단계로서 東西兩獨간의 화폐통합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조약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이 4월25일 베를린에서 서독 연방은행총재 한스 티트마이어와 동독총리실 정무장관 귄터 크라우제사이에 열려 그후 5월 12일 본에서 종결되었다. 이 實務회담이 끝난 후 5월18일 서독 재무장관 데오도르 바이겔과 동독재무장관 발터 롬베르그는 서독 콜수상과 동독 드메이지어총리의 배석아래 서독首都 본의 옛 아데나워首相 집무실인 샤움부르크宮 고벨린홀에서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위한 東西獨국가조약(Der Vertrag ű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에 서명했다.[47]

서명이 끝난지 바로 3일째인 5월 21일 東獨政府는 국가조약안을 人民議會에 제출했다. 국가조약안은 民社黨(PDS), 「동맹 90」 그리고 綠色黨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人民議會에서 찬성 302, 반대82, 기권1의 투표결과에 따라 통과되었다. 서독 연방의회도 같은 날 찬성 444, 반대 60의 투표결과로써 국가조약안의 비준을 완료했는데, 東獨社民黨의 경우와는 달리 西獨社民黨의 경우 상당수 의원이 국가조약

내용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하여 綠色黨과 함께 국가조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6월22일 서독연방 상원의 同意를 얻은 국가조약안은 1990년 7월 1일부터 發效되었다.

이처럼 역사적인 東西獨國家條約이 체결완료된 후 서독연방 콜수상은 동 조약의 전략적 意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폭풍우를 만난 두개의 가운데 배하나가 사회주의 명령경제때문에 난파되었다. 난파된 배가 이제 구조됐다."[48] 한편 東獨 드메이지어총리는 "국가조약 체결과 함께 실제적인 독일통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49]

국가조약은 6章38條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속문서로써 主旨에 관한 공동의정서, 9개 부칙 그리고 공동의정서 선언들이 첨부되었다. 국가조약의 본질적 내용은 레닌의 민주적 중앙집중원칙에 입각한 동독 사회주의체제를 東西兩獨간 통화통합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이의 前提條件으로서 국가조약은 그 前文에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입각, "자유속의 독일통일을 유럽平和秩序 테두리안에서 곧 이룩할 것"을 명시했다.[50] 독일민족의 국가적 통일을 前提로 한 東西兩獨간의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조약은 확실히 독일통일에로의 획기적인 첫걸음이자 독일민족사의 새 章을 여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국가조약의 發效後 東西兩獨政府는 7월 1일을 기해 서독의 마르크貨(DM)를 東獨地域에 도입, 兩獨間의 화폐통합을 실현하고 동시에 경제사회통합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東獨의 社會主義的 계획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구조로 전환되면서 東西兩獨間의 內的 統一은 바야흐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東西兩獨政府 주도하의 이와 같은 급격한 체제통합추진에 대해 비난하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서독사민당 수상후보자인 라퐁테느가 40년이상 지속되어온 東獨社會主義體制를 하루아침에 조급히 시장경제구조로 전환하여 一方的 흡수통합을 시도하는 서독 콜 연방수상과 동독 드메이지어총리의 국가조약방식이 현실조건을 무시한 너무 무리한 方法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해 동독에서는 주민생활의 不安定과 대량의 실업사태가 유발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서독주민에게도 너무 많은 통일비용을 부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이질적인 東西兩獨間의 체제통합에 있어 과도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 동독체제의 自生力을 前提로 하는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서양독의 綠色黨이나 좌파인텔리들은 국가조약이란 "서독이 돈을 주고 동독을 매입, 흡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독사민당을 비롯한 東西兩獨지역의 야당세력들은 민족문제보다는 오히려 사회문제 또는 사회정책적 측면의 취약점을 부각, 지적하여 국가조약의 보강, 이를테면 東西獨環境同盟(Umweltsunion)等을 주장하고 나왔다. 녹색당과 東獨 사회주의통일당 후신인 東獨民社黨(PDS)은 국가조약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年金, 건강보험, 실업수당, 직업재교육 等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정책적 문제점을 위요하고 야당이 제기한 건설적 提案들에 대해서는 서독연방 콜정부가 수용해서 국가조약에 보강했다. 서독연방 콜수상은 사회정책적 논리보다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적 시각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조약을 정당화했다. 국가조약에 대한 야당

들의 비난에 대해 콜수상은 단기적으로 비록 동독사회주의체제를 전환함에 있어 숱한 어려움을 겪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東獨經濟를 사회적 시장경제구조로 전환함으로써 全獨逸經濟의 「제2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民族의 歷史的 大課業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논박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운 동독 생활사정을 고려할 경우 동독사회주의경제를 하루라도 속히 사회적 시장경제구조로 바꾸어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동독동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조약에 의하면 東西獨 화폐통합이 단행된 후 東獨의 社會主義體制가 市場經濟構造로 전환되어 東西兩獨이 完全한 經濟社會統合을 이루기까지 약5年간의 과도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想定하고 있다. 이 5年간의 과도기간중에 東獨地域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異質體制간의 통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은 명확하다. 예상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운데 우선 화폐단일화를 기점으로 하는 東西兩獨간의 경제·사회체제 통합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동독국가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서독연방 콜수상은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를 설치했다. 1천150억 독일마르크(DM)에 이르는 독일통일기금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기금

기금출처	기금총액(DM)	대 동독지원금액(분할원조)
연방예산(절약) 200억 마르크	1천 150억 마르크	1990:220억 마르크
		1991:350억 마르크
자본시장 (연방, 州, 군읍) 950억 마르크		1992:280억 마르크
		1993년:200억 마르크
		1994:100억 마르크

독일통일기금 총액인 1천150억 DM가운데 200억마르크는 연방예산에서 절약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950억마르크는 서독연방소속의 各州와 군읍(Gemeinde)이 책임을 지고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기로 되어 있다. 이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서독정부는 1995년도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동독경제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서독연방 콜수상이 지난 3월18일의 동독 자유총선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동독화폐를 1對1 等價交換比率에 따라 서독마르크화로 교환해줄 경우 동독경제가 인플레에 빠지게 되고 동독국가재정이 거대한 적자현상을 노출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정부의 동독국가재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제분야에서의 동독국가最高權은 점차 서독정부에로 移管되었다. 국가조약 제2章의 화폐통합규정에 의하여 서독연방은행이 동독지역의 통화정책을 관할하게 되고 통일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실무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東獨經濟를 市場經濟로 전환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동독지역의

토지와 기업에 대한 私有化問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東獨 정무원 총리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3일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후 서독연방 재무성 산하로 넘어간 신탁공사(Treuhandanstalt)가 실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인민의회가 6월18일 통과시킨 「人民所有財産의 私有化와 再編成에 관한 法」(일명 신탁법:Treuhandgesetz)을 근거로 하여 현재 신탁공사는 8,000개 가량되는 동독국가소유기업의 私有化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동서양독간에 역사적인 국가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7월 1일을 기해 양독간 화폐통합이 전격적으로 실현된 후 東獨經濟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에로 전환해 가는 과도적 상황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었다. 東獨問題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동독경제는 인플레와 실업파도에 휘몰려 들어갈 위험신호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에 의해 난국에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당관료들이 동독사회조직의 중심되는 위치에 요소요소마다 자리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적 경제전문가나 경영책임자들이 여전히 동독사회 전분야에 걸쳐 實權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東獨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중심적인 장애요소로 되고 있었다.[52] 그 뿐만 아니라, 40여년의 긴 세월동안 사회주의체제에서 살아온 동독주민들의 意識과 生活慣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즉 실제 소비경제생활의 주체인 동독주민이 아직도 여전히 사회주의적 生活方式을 墨守하고 있었기 때문에 東獨經濟가 市場經濟에로의 전환을 이룩함에 있어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밖에 私有財產權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東獨體制의 전환을 어렵게 했다. 이리하여 兩獨間 화폐통합을 단행한지 한달 남짓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동독경제는 바야흐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원리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迷宮의 死角地帶에로 빠져 들어갈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雪上加霜으로 東獨농민데모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민당 출신 드메이지어총리가 동독사민당출신의 롬베르크재무장관을 비롯한 4개부처 장관을 해임시키자 이에 항의하여 8월19일 東獨社民黨이 聯政脫退를 선언하면서 東獨政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치적 空白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동독체제가 경제구조 전환의 과도적 상황속에서 일종의 정치적 空白現象을 露呈하기 시작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드메이지어 동독총리는 8월20일 당면한 東獨體制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로써 기본법23조에 입각한 동독의 서독연방가입을 조속히 실현하고 통일독일의 총선일자를 예정된 12월 2일에서 10월14일로 앞당기자는 새로운 제의를 폭탄선언했다. 드메이지어동독총리의 제안가운데 全獨議會 자유총선을 10월 14일로 앞당겨 실시하자는 제의는 서독사민당으로부터 동서양독 기민당의 공동선거술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결국 철회되었다.

그러나 당면의 동독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법23조에 입각한 동독의 서독연방가입을 조속히 실시하자는 드메이지어동독총리의 제의는 西

獨與野政黨들에 의해 東獨現實의 어려움을 감안히 볼 때 事理에 맞는 제의라고 간주되어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西獨 政治界의 見解는 그대로 東獨에 전달되었으며 드디어 동독인민의회에서도 동독의 조속한 서독연방가입주장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8월23일 東獨人民議會는 서독기본법 23조에 입각하여 동독이 10월 3일에 서독연방에 가입할 것을 결의했다. 東獨이 西獨聯邦에 가입함으로써 1972년 東西獨基本條約에 의해 승인된 동독의 국가적 주권은 소멸되며 이와 동시에 독일은 서독기본법 테두리 속에서 완전한 국가적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8일 체결된 국가조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제·사회적 체제통합으로부터 정치적 체제통합에로 이행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곧 독일민족의 국가적 통일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동독인민의회가 80%이상의 압도적 절대다수로 기본법23조에 입각한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일자를 확정 결의하자 서독연방 콜수상은 바로 그날 "오늘은 우리 독일인 모두를 위한 기쁨의 날입니다. 오는 10월 3일은 통일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 民族史에 있어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53]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일자가 확정되자 이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동서양독주민이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통일독일집」의 건축이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설계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집」 건축설계도의 작성에 관해서는 서독연방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과 동독총리실 귄터 크라우제 정무장관이 동독인민의회가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일자를 확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 內密한 協商을 해왔었다. 이리하여 8월 31일 쇼이블레 서독연방 내무장관과 크라우제 동독총리실 정무장관은 동베를린 황태자宮에서 「독일통일 완성에 관한 독

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ű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이라는 이름하의 「통일독일집」 건축설계도를 작성, 완료했다.

독일통일조약을 동베르린 황태자宮 홀에서 동독 드메이지어총리의 배석하에 동독총리실 크라우제정무장관과 공동서명한 후 서독연방 쇼이블레내무장관은 "이 독일통일조약 체결과 함께 全 獨逸에서 통일적인 생활조건을 가능한 빨리 창설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54]

독일통일조약은 45개 조항의 조약본문, 의정서, 그리고 西獨法 移轉(확대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東獨 有効法規에 관한 특별규정, 未解決 財産問題에 관한 東西兩獨政府 공동선언 等 3개의 부속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000페지가 넘는 방대한 작품이다.[55] 통일조약 前文에서 東西兩獨國家는 民族自決權에 입각하여 平和와 自由속의 독일통일을 完成한다고 밝히면서 장차 통일독일이 유럽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통일독일은 기본법에 明示되어 있는 自由, 民主主義, 法治國家, 社會國家原則에 바탕을 둔 연방국가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방국가체제에 입각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집중제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동독 사회주의국가체제를 연방구조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實現하는 方法과 原則을 제1조에 명시했다. 즉 동독은 1952년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울부르히트서기장의 전면적인 국가사회주의화 정책에 의해 폐지된 東獨5個州인 브란덴부르크, 멕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을 다시 과거처럼 독립된 州로 부활시키고, 이후 곧

서독연방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제2조에서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확정하되 의회와 정부의 소재가 될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통독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東獨5個州가 부활되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10월3일을 「독일통일의 날」로 명명, 국경일로 정했다.

통일조약 제4조는 기본법 前文改正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즉 지금까지 前文속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云云하는 文句와 "全獨逸民族은 자유로운 자결에 입각하여 독일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文句를 삭제하고, 동시에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에 입각하여 독일통일과 자유를 완성했다.

이와함께 기본법은 全독일민족에게 유효하다"라는 새 文句를 基本法 前文에 삽입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앞으로 2년내에 기본법 개정 또는 보충에 관해 논의하는 문제와 기본법 146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문제를 규정했다. 그밖에 통일조약은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에 따라 제기되는 정치·외교·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의 제반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세밀한 법규들을 규정해 놓았다.

東西兩獨간의 체제통합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될 과도적 상황속에서 동독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 기존의 동독법규가 유효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도 확정해 놓았다. 그리고 1945년 히틀러 獨逸帝國이 무조건 항복한 이래 1949년 東獨社會主義國家가 창설되기까지 소련점령당국이 동독지역에서 권리행사한 재산처리, 또는 기타 전후문제 처리에 관해서 통일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선도 분명히 그어 놓았다.

이와같은 내용들을 가진 통일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독일민족은 전후 분단된지 45년만에 처음으로 비로소 하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된 법질서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드메이지어 동독총리는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하는 당면의 제반 경제·사회적 문제들은 거의 15,000일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유산"이라고 말하면서 "독일통일에의 도정에 있어 결정적이고 위대한 발걸음"인 통일조약의 실시와 함께 그 유산이 곧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6]

서독건국이래 40년동안 통독문제를 실무적으로 관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과업의 성취와 동시에 지금 아이로니컬하게도 영광스런 해체의 운명을 맞고 있는 西獨內獨關係省의 마지막 장관이 될 도로테 빌름즈女史는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10월3일에 독일통일은 外形的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생활조건과 생활감정의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분단의 물질적·정신적 결과를 청산하고 과거를 극복하는 과업"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57]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10월3일 동서독의 국가적 통일이 완수되자 東西兩獨地域의 與野政黨들은 오는 12월2일로 정해진 全獨聯邦議會 자유총선에 대비하여 黨體制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자유주의자들의 정당으로서 前向的이고 기동력높은 自民黨은 이미 지난 8월초에 東西兩獨地域의 兄弟黨들사이에 정당통합을 완료하고 선거전 준비에로 진입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社民黨도 9월말 동서양독지역 兄弟黨들간의 정당통합을 완료, 연방의회 총선대비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통일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온 基民黨은 10월 1일~2일 兩日동

안 함부르크에서 東西兩獨基民黨 통합대회를 열고 선거전 대비에로 들어갔다. 녹색당, 동맹90, 民社黨(PDS), 그리고 기타 群小정당들도 그들나름대로 활발하게 총선대비를 해나가고 있다.

오는 12월2일의 全獨聯邦議會 자유총선의 前哨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지난 10월 14일의 東獨5개州議會 선거결과를 보면 社民黨이 승리한 브란덴부르크州를 제외한 4개州에서 基民黨이 승리를 거두었다.[58] 東獨5개州議會 선거에서 기민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東獨住民들이 비록 지난 7월 1일의 兩獨간 화폐통합이래 여러가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통일후 독일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비약적 경제발전을 약속한 기민당의 정책노선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社民黨, 自民黨도 善戰하여 대체로 좋은 선거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녹색당을 비롯하여 民社黨, 동맹90, 노이에스 포름 等 동독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 및 정치단체가 예상밖으로 지지표를 얻지 못하고 선거참패의 苦杯를 마셨다. 이러한 특이한 동독지역의 선거氣流가 장차 東獨地域의 政治活性化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東獨 5개州 의회선거 득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東獨5個州議會 (90.10.14) 선거결과 통계 (및 바이에른州 선거)

◇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州

(10.14 투표율: 65.22%)

(3.18 투표율: 92.97%)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3.18득표율
CDU	38.33	29	36.34
SPD	27.00	21	23.41
PDS	15.65	12	22.81
FDP	5.48	4	3.59
Bűndnis	2.22	–	2.37
CSU	1.11	–	–
DSU	0.75	–	2.39
Grűne	4.16	–	2.00
NPD	0.17	–	–
Neues Forum	2.92	–	–
Rep.	0.89		–

◇ 작센－안할트州

(10.14 투표율: 65.64%)

(3.18 투표율: 93.41%)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3.18득표율
CDU	38.99	48	44.54
SPD	26.00	27	23.70
FDP	13.51	14	7.71
PDS	11.98	12	14.01
Grűne/NF	5.29	5	3.97
DFD	1.11	–	–
DSU	1.71	–	2.40
Rep.	0.64	–	–
NPD	0.15	–	–

◇ 튜링겐州

(10.14 투표율: 72.12%)

(3.18 투표율: 94.46%)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3.18득표율
CDU	45.40	44	52.55
SPD	22.75	21	17.52
FDP	9.27	9	4.64
LL/PDS	9.72	9	11.38
NF / Grűne /DJ	5.47	6	3.80
DSU	3.28	–	5.76
NPD	0.23	–	–
Rep.	0.83	–	–

◇ 브란덴부르크州

(10.14 투표율: 67.43%)

(3.18 투표율: 93.54%)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3.18득표율
SPD	38.25	36	29.91
CDU	29.40	27	33.56
PDS	13.40	13	18.30
Bűndnis 90	6.41	6	3.27
FDP	6.63	6	4.70
DSU	0.98	–	3.32
Grűne	2.84	–	2.14
Rep.	1.15	–	–
NPD	0.13	–	–

◇ 작센州
(10.14투표율: 73.47%)
(3.18투표율: 93.58%)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3.18득표율
CDU	53.82	92	43.41
SPD	19.09	32	15.05
LL/PDS	10.22	17	13.60
NF/Bündn. /Grüne	5.60	10	2.97
FDP	5.26	9	5.69
DA	0.57	—	—
DSU	3.58	—	13.09
NPD	0.68	—	—

◇ 서독 바이레른州
(10.14투표율: 66.0%)
(1986年투표율: 70.1%)

정당별	10.14 득표율	의석수	1986年 득표율
CSU	54.9	127	55.8
SPD	26.0	58	27.5
Grüne	6.4	12	7.5
FDP	5.2	7	3.8
Rep.	4.9	—	3.0
ÖDP	1.7	—	—
Bayernpartei	0.8	—	—

앞으로 통일독일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오는 12월2일의 全獨聯邦議會 자유총선에 의해 결정된다. 통일독일의 對外政策路線에 있어서는 여러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유럽平和優先이라는 大義名分아래 보편적인 유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強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對內政策方向에 있어서는 각 정당들이 자기들의 정치이념에 입각하여 다채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장차 통일독일 민족사 전개에 있어 역사상 가장 큰 의미를 지닌 自由總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12월2일의 전독연방의회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현재 각 정당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對照的으로 독일국민들은 너무나 조용히 총선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奇

異한 형상이란 생각된다. 하지만 유럽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땅안의 動靜에 대해 유럽주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2. 외적 조건을 위요한 국제협상

독일통일문제는 독일인 자신과 마찬가지로 美英佛蘇 등 4대전승연합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 모두에게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유럽대륙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지위로 인해 독일통일문제는 유럽의 안보 및 평화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9] 여기에서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美英佛蘇 등 4대전승연합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東西兩獨政府가 서독수도 본에서 개최한 兩獨頂上會談에서 東西獨간의 화폐·경제통합을 위한 兩獨 전문가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바로 그날인 1990년 2월13일, 캐나다수도 오타와에서 개최된 외상회의에서였다. 이 오타와외상회의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23개 회원국이 領空開放과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담인데 이 외상회담에서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정식 제기되었다. 그리고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을 논의하는 方法으로서 東西兩獨과 美英佛蘇 등 4대전승연합국이 동시에 참가하는 소위 「2+4」외상회담方式이 合意된 것이다.

이리하여 지난 5월5일 서독 본에서 열린 제1차「2+4」통독외상회담 이

래, 6월22일 제2차 동베를린「2+4」외상회담, 7월17일 제3차 파리「2+4」외상회담, 9월12일 제4차 모스크바「2+4」외상회담 등 네차례의 통독외상회담이 열렸다[60]. 동서양독간의 內的 統一過程이 8월31일의 통일조약 체결과 함께 완결되자, 이에 곧이어 통독국제협상도 9월12일 제4차 모스크바「2+4외상회담에서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조약」(Vertrag über die abschliess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이 체결됨으로써 성공적으로 끝났다.[61]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동독이 기본법 23조에 의거, 서독연방에 가입함으로써 內的 統一을 이룩한 독일이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조약」의 체결에 의해 비로소 對外的 主權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독일민족이 東西兩獨간의 內的 統一과 시기를 같이하여 4大전승연합국으로부터 對外的 主權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서독연방 한스 디트릿히 겐셔외상의 빛나는 對蘇統一外交때문이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작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活火山의 분화구가 터지듯 치솟아 오른 동독내부의 통일기운때문에 소련의 두개 독일정책이 궁지에 빠지자 겐셔 서독외상은 美英佛 3大서방연합국은 물론이고 특히 소련을 향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했다. 겐셔외상은 우선 동독 모드로우총리가 1990년 1월30일 고르바쵸프당서기장과의 모스크바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온 후 곧 이어 발표한 통일독일의 군사적 중립화를 전제로 한 통독방안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가한 후, 소련의 대독일정책 변화가능성을 직접 打診해보고자 했다. 겐셔외상의 이니셔티브로 2월10일 모스크바에서 독·소정상회담이 열렸다.[62]

이 회담에서 서독연방 콜수상과 겐셔외상은 소련 고르바쵸프당서기장이 동독 호네커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 독일사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통독문제를 정치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밖에 "소련은 하나의 국가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독일인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독일문제가 총체적인 동서관계 발전과정속에, 全유럽신질서 형성과정속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63]라고 말하는 고르바쵸프의 자세에서 겐셔외상은 새로운 獨蘇協力關係의 형성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했다.

콜수상과 겐셔외상은 모스크바 독·소정상회담을 마치고 본으로 돌아온 후 지체없이 곧 바로 통독문제를 국제협상의 정치현안으로 제기할 것을 결정했다. 때마침 2월13일 캐나다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외상회담자리를 이용하여 겐셔외상은 美英佛蘇 4大전승연합국에게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에 관한 국제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이리하여 오타와외상회의에서 소위 독일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4」 회담방식이 兩獨과 4大전승연합국사이에 합의되었다. 「2+4」 회담방식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직접당사자인 양독일의 외상과 美英佛蘇등 4대전승연합국의 외상이 만나 독일통일의 정치·군사적 조건을 유럽안보와 연관하여 허심탄회하게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궁극적으로 통독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는 것이다.

겐셔외상의 기민한 외교적 노력으로 5월5일 서독수도 본에서 1954년 제네바외상회담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통독문제를 중심테마로 한 국제회담, 즉 제1차 「2+4」외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美英佛蘇 등 4대전승연합국은 독일민족의 자결권원칙에 입각한 독일통일에 전원 合意

를 보았다. 4대연합국 외상들은 이 합의와 함께 "독일통일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일은 전적으로 독일인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64] 그러나 4大연합국 사이에 의견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美蘇兩國이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를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했다. 美國 베이커국무장관이 나토전략의 수정을 전제로 하여 통일후 독일의 나토가입을 제의한 반면, 소련 셰바르드나제외상은 통일후 독일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양 군사동맹체로부터 탈퇴하여 비동맹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셰바르드나제외상은 통일독일이 나토의 밖에 존재하게 되면 소련은 동독주둔 소련군 38만명을 동독지역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美蘇양국간의 날카로운 의견차이를 서독 겐셔외상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를 취하여 조심스럽게 제3의 해결방식을 제시했다. 즉 겐셔외상은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독일에 대한 역사적 안보이해관계를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동독의 特殊安保地帶化방식을 내놓았던 것이다. 동독의 特殊安保地帶化방식이란 주동독소련군이 동독지역에서 완전 철수한 후 동독지역을 非核地帶化하며 또한 이 지역에 NATO산하의 외국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차 「2+4」외상회담이 상호의견교환이외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후, 한달 반 이상이 지난 6월22일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에서 제2차 「2+4」외상회담이 열렸다.

이때는 이미 동서양독정부가 국가조약을 체결, 조기통일을 목표로 하여 7월1일을 기해 兩獨간의 화폐단일화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인 체제통

합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후였기 때문에 4대전승연합국들은 독일통일의 군사적 조건에 관해 상호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美蘇간의 의견차이는 여전히 좁아지지 않았고 단지 소련 셰바르드나제외상이 소련의 독일에 대한 안보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통일독일 보유 군사력의 상한선을 20만 내지 25만으로 확정할 것을 제의했다. 셰바르드나제외상은 또한 1990년 12월2일 전독의회총선이 실시되고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면 통독정부수립 6개월이내에 美英佛蘇등 4大전승연합국의 군대가 베를린에서 완전철수하며, 이와 동시에 베를린에 대한 4大전승연합국의 책임과 권리를 폐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어서 주독일 외국군 철수문제를 비롯, 통일후 독일의 정치·군사적 지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자고 말했다. [65)]

이와같은 소련측의 제의에 대해 겐셔 서독외상은 소련의 對獨안보이해관계를 고려할 경우 소련의 통일독일 군사력 상한선 설정요구는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통일독일에게 완전한 국가주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과도기를 설정하겠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일반원칙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최종문서에 입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을 위요한 의견차이로 인해 「2+4」외상회담이 사실상 딜렘마에 빠지자, 서독연방 콜수상과 겐셔외상은 同외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獨蘇頂上會談을 통한 對蘇直接外交를 추진했다. 獨蘇頂上會談을 개최하기 전에 콜수상은 우선 독일문제해결의 기본조건이 되는 나토전략 변경을 위해 美英佛 西方 3大연합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

즉 콜 수상은 독일통일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유럽의 신정세와 이에 따른 나토전략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7월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런던나토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유연반응전략과 전진방어전략을 폐기하는 전제로 多國籍機動軍을 편성하고 마지막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이성」(Ultima ratio)으로서 핵무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새로운 「기동전략 개념」 (Mobilmachungs konzept)에 찬성하는 한편, 독일통일을 비롯한 유럽제국의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는 토대위에 비엔나 재래식군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나토를 정치기구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66]

그리고 그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 동맹체관계를 과거의 적대관계로부터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있는 소련을 조속한 시일내에 서방의 개방체제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나토기존전략과 나토기구성격의 혁신적 변화를 결정한 런던나토정상회담에 곧이어 콜수상은 7월9일과 10일 양일간에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제16차 선진7개국 경제정상회담에 참가하여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대해 전후 독일경제를 부흥시킨 마샬원조계획과 비슷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창했다. 이 제창과 함께 콜수상은 서독정부가 우선 모델케이스로 50억마르크 상당의 對蘇경제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이 금액으로서는 소련경제지원에 있어 아주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와같은 서독 콜수상의 대규모 對蘇경제원조 제창이 외교적 전술의 시각에서 볼 때 독일통일의 외적 조건에 대한 소련측의 양보를 노리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對蘇경제지원에 있어 美英양국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불란서 미테랑대통령은 서독 콜수상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나왔다. 때마침 7월초부터 개최되고 있던 제28차 소련공산당전당대회에서 고르바쵸프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보수파의 거센 비난으로 곤궁에 빠지자, 휴스턴 세계경제정상회담 도중의 미국 부시대통령, 불란서 미테랑대통령, 서독 콜수상 等은 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서방세계의 건설적 지원약속을 천명하면서 공공연하게 고르바쵸프의 공산당서기장 재선을 희망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결국 고르바쵸프가 28차 소련공산당전당대회에서 보수파를 물리치고 공산당서기장에 재선되자, 곧 바로 7월 15일 서독 콜수상은 겐셔외상과 바이겔재무장관을 대동하고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쵸프의 당서기장 재선을 축하한 후 獨蘇頂上會談을 개최, 통독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동시에 포괄적인 獨蘇經濟協力體制의 형성을 제의했다. 처음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던 獨蘇會談은 7월15일 모스크바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된 후, 그 이튿날인 7월 16일에 고르바쵸프대통령의 고향 코카서스북쪽의 전원도시 스타브로폴에서 다시 열렸다.

고르바쵸프대통령의 고향땅으로 초청받은 콜수상은 감격어린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에게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날이군요. 고향이란 우리 독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랍니다. 그 따스함, 어머니의 음성, 어릴 때 친구들의 이야기, 대지의 숨결, 이런 것들이 고향이란 말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67]스타브로폴근처 콤소몰젠언덕에 있는 제2차대전 전몰장병기념지에 도착하여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은 헌화

를 마친 후 콜 서독수상에게 "우리는 전쟁의 참담한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상호협력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다정한 얼굴표정으로 말했다.[68]

7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에 열린 이 獨蘇頂上會談에서 서독 콜수상과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은 1941년 6월 히틀러 독일제국 군대의 선전포고없는 對蘇공격개시이래 적대관계로 들어간 후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던 제2차대전의 전쟁유산을 완전청산하고 독일민족과 소련민족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창설하는 데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서독 콜수상이 2차대전후에 형성된 유럽국경선의 국제법적인 완전승인, 통일독일 보유 군사력의 37만 상한선 설정, 그리고 독일통일후 이전 동독지역의 非核特殊安保地帶化 등을 약속함으로써 소련의 독일에 대한 사활적 안보이해관계를 보장해준 반면,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 통일독일의 나토가입을 수락했다. 이로써 서독 콜수상은 소련으로부터 통일독일의 서방세계 귀속을 양해받았는데 이는 서독의 對蘇統一外交의 일대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고르바쵸프의 새 獨逸政策은 소련아카데미 학술원장으로서 고르바쵸프의 외교고문인 다쉬체프교수가 말했듯이 "거대한 경제력과 잠재력을 가진 독일의 중립화를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나토전략을 수정하는 전제조건하에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非核國家獨逸이 나토회원국이 되는 것이 소련의 안보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어떠한 논리로 설명하든 유럽대륙의 심장부에 있는 중부유럽요충지인 독일지역의 서방세계 귀속은 17세기 피터大帝이래의 소련 근세외교사 전개에 있어 新紀元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 하

겠다.

독소정상회담 하루후인 7월 17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2+4」통독외상회담은 통일독일의 나토가입문제에 대한 독소양국의 직접 합의로 말미암아 독일문제를 위요하고 더 이상 깊이 다룰 대상을 찾지 못했다. 단지 이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한 폴란드외상의 요구로 서독 겐셔외상은 다시 한번 독일·폴란드간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승인에 대한 서독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국제법적으로 이를 최종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했다.

제3차 「2+4」파리회담이 종결된 후 독소양국은 獨蘇코카서스정상회담의 결과를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외상급회의를 계속했다. 그후 9월 12일 제4차 「2+4」 통독외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모스크바회담에서 독일통일의 정치·군사적 지위를 위요한 문제는 동서양독과 美英佛蘇등 4大전승연합국간에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및 10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은 "독일민족은 민족자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입각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실현하는 그의 의지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1990년의 국경선에 입각하여 통일된 독일은 "유럽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1조에서는 통일독일의 영토는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全베를린의 영역을 포괄"한다고 했고, 통일독일 국경선의 최종적 확정은 "유럽신평화질서의 본질적 구성요소"라 했다. 그리고 제3조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생산·소유 및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제

5조에서는 동독지역의 非核特殊安保地帶化를 명시했다. 즉 동독지역과 베를린지역으로부터 소련군대가 완전철수한 후 이지역에는 외국군대·핵무기 그리고 핵탄두를 장치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주둔. 이동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물론 통일독일의 연방군은 주둔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에서 美英佛蘇등 4대전승연합국이 이 조약체결과 함께 1945년 5월 8일 히틀러독일제국의 무조건 항복이후 지금까지 유보해 온 全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종식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통일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고 했다.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조약」이 모스크바의 「10월 호텔」 홀에서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의 이례적인 참석아래 동서독과 美英佛蘇등 4대전승연합국들의 외상에 의해 서명되자, 서독 겐셔 외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오늘은 우리 독일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새 유럽의 역사적 순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온 유럽인들은 이 조약체결과 함께 전후시대가 완전 종식되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독일에 관한 최종해결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美英佛蘇등 4대전승연합국 의회의 비준이 요청된다. 비준이 완료되지 않으면 10월3일 통일조약에 입각하여 동서양독이 통일을 완결하더라도 통일독일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법률적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러한 법률적 차질을 제거하기 위해 美英佛蘇 4대국외상은 10월1일 뉴욕에서 개최된 전유럽안보협력회의 외상회담의 자리를 이용하여 전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4대전승연합국의 유보권을 독일통일의 날인 10일3일부터 정지시키는 소위 「독일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독일민족은 10월3일 조국통일과 동시에 완전주권을 회복함에 있어 모든 장벽을 완전히 극복했다.

Ⅳ. 結　　論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후 냉전의 촛점이었던 독일통일문제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지 겨우 11개월도 채되지 않은 짧은 기간사이에 완전해결을 보았다. 세기적 대사건인 독일통일을 평화적 협상의 테이블을 통해 이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壯快한 일이라 하겠다. 10월3일 통일후 독일정부는 독소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유럽정치질서의 혁명적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사의 전개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유럽공동체(EC)와 나토에 뿌리를 둔 통일독일이 獨蘇協力體制를 구축한 후 東歐와 西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명실공히 담당하게 되면 대서양에서 우랄에 이르기까지의 유럽大統合의 꿈은 머지않아 現實로 다가올 것이다. 즉 독일인들이 말하는 "독일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유럽신평화질서"가, 혹은 소련 고르바쵸프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유럽공동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유럽신평화질서나 「유럽공동의 집」은 불란서대혁명이래 유럽인들이 몽매간에도 갈구해 온 유럽 大平和 — 독일철학자 임마뉴엘 칸트가 구가한 유럽연방주의에 입각한 「永久平和」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된 독일통일의 기적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를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으랴!

註 釋

1. Jaspers, Karl,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über Aufgaben Deutscher Politik, München 1960, S,110

2. Vgl. Hillgruber, Andreas, Die Deutsche Frage im 19. und 20. Jahrhundert zur Einführung in die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Problematik, in: Josef Becker/Andreas Hillgruber(Hgg.), Die Deutsche Frage im 19. und 20. jahrhundert. München 1983, S. 3－5.

3. Vgl. Plate, Bernard von, Die Aussenpolitik und internationale Einordnung der DDR, in: Weidenfeld, Werner/Zimmermann, Hartmut, Deutschland Handbuch. Eine doppelte Bilanz 1949－1989, München 1989, S. 589～603.

4. Vgl. Cornelsen, Doris, Die Wirtschaft der DDR in der Honecker Ära, in: Glaessner, Gert－Joachim(Hrsg.), Die DDR in der Ära Honecker. Politik－Kultur－Gesellschaft, Opladen 1988, S. 357－370.

5. Vgl. Mampel, Siegfried/Horn, Hannelore, Die deutsche Frage aus der heutigen Sicht des Auslandes, Berlin 1987, S. 15～134.

6. Vgl. Gorbatschow, Michail, Perestroika. Die zweite russische Revolution, München 1987, S. 77ff.

7. Ebenda(上同) S. 252～268. Auch Gorbatschow, Michail, Das gemeinsame Haus Europa und die Zukunft der Perestroika, Düsseldorf/Wien/New York 1989.

8. Vgl. Guz, Eugeniusz/Weseloh, Hans Achim (Hrsg.)(編)KSZE Belgrad, Das erste Folgetreffen der Konferenz ü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Stuttgart 1989, S. 9～39.

9. Vgl. Maull, Hanns/Heynitz, Achim von, Osteuropa: Durchbruch in die Postmoderne? Umrisse einer Strategie des Westens, in:Europa Archiv, Folge 15/1990, S. 441～451.

10. Vgl. Meuschel, Sigrid, Die SED zwischen Konformität und Eigenständigkeit, in:Die DDR im vierzigsten Jahr, Geschichte Situation Perspektiven. Zwei und zwanzigste Tagung zum Stand der DDR-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6. bis 19. Mai 1989, Köln 1989, S. 31～36

Auch Spittmann, Ilse, Sozialismus in den Farben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3/1989, S. 241～244.

11. Baumann, Eleonore/Baumann, Wolf-Rüdiger/Bleek, Wilhelm/Kuppe, Johannes L./Staritz, Dietrich, Der Fischer Weltalmanach Sonderband DDR, Frankfurt a. M. 1990, S. 151.

12. Vgl. Fricke, Karl Wilhelm, Opposition und Widerstand, in: Fischer, Alexander (Hrsg.)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aten, Fakten, Analysen, Würzburg 1987, S. 121～124.

13. Vgl. Jäger, Manfred, Verband unsrer gemeinsamen Wunden. Deutsche Schriftsteller zur deutschen Frage, in:Fischer, Alexander(Hrsg.), Vierzig Jahre Deutschland-Politik in internationalen Kräftefeld, Köln 1989, S. 53～55.

"Der Stacheldraht wachst langsam ein:

Tief in die Haut, in Brust und Bein ins Hirn, in graue Zelln

Uumgűrtet mit dem Drahtverband

Ist unser Land ein Inselland umbrandet von bleiernen Wellln."

14. Auf einer Tagung des Thomas－Műntzer－Komitees am 19 Januar 1989 erklářte SED-Generalsekretar Erich Honecker, die Mauer wird in 50 und auch in 100 Jahren noch bestehen bleiben, wenn die dazu vorhandenen Grűnde noch nicht beseitigt sind. in: Deutschland Archiv, 2/1989, S. 239.

15. Windisch, Elke/Stechmesser, Peter, Das Ungarische Tor. Hinter den kulissen Jener Tage im Spátsommer '89, in:Horizont international, 26/ 1990, 36 Woche, S. 6－13.

16. Vgl. Ammer, Thomas, Stichwort:Flucht aus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1/1990, S. 1207.

17. Spittmann, Ilse/Helwig, Gisela (hrsg.), Chronik der Ereignisse in der DDR, Kőln 1990, S.2.

18. Baumann, Eleonore/Baumann, Die friedliche Revolution in der DDR. Chronik der Ereignisse von 1. 9. 1989 bis 18. 3. 1990, in: siehe Anmerkung(11), S. 146.

19. Vgl. Wensierski, Peter, Das Haus brennt… Auszűge aus Interviews mit Oppositionellen in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0/1989, S. 1179－1184.

20. Oktober 1989: Wider den Schlaf der Vernunft, hrsg. von Elefanten Press, Berlin 1989, S. 43－44.

21. Deutschland Archiv, 11/1989, S. 1320.

22. Vgl. Ammer, Thomas/Kuppe, Johannes L.,Ein langer Absied. Die SED nach dem Sturz Honeckers, in: Deutschland Archiv 12/ 1989, 2. 1393 −1401.

23. Vgl. Menge, Marlies, Ohne uns läuft nichts mehr. Die Revolution in der DDR, Stuttgart 1990, S. 166ff.

24. Siehe Neues Deutschland vom 3./4. November 1990.

25. Ebenda (上同)

26. Vgl. Deutschland Archiv, 12/1989, S, 1440−1451

27. Neues Deutschland Vom 10. November 1989, S. 5.

28. Siehe die Erklärung von Ministerpräsident Hans Modrow anlasslich der 12. Tagung der Volkskammer, in: Neues Deutschland vom 18./19. November 1989.

29. Kohl, Helmut,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Bonn 1990, S. 1177−125.

30. Vgl. Thaysen, Uwe, Der Runde Tisch. Oder: Wer war das Volk? in: Parlamentsfragen, Julu 1990, S. 257−308.

31. Vgl. Spittmann, llse, Deuschland einig Vaterland, in: Deutschland Archiv, 2/1990, S. 190.

32. Siehe Hans Modrows Dentschlandplan, in: ADN (Allgemeiner Deutscher Nachrichtendienst) vom 1. Februar 1990.

33. Vgl. Kuppe, Johannes L., Modrow in Bonn, in:Deutschland Archiv, 3 /1990, S. 338ff.

34. Vgl. Hesse, Jőrg, Die Allianz fűr Deutschland, in: Deutschland Archiv,

4/1990, S. 502－506.

35. Siehe Bundeskanzler Kohl in Moskau, in: Deutschland Archiv, 3/1990, S. 473－474. Auch Tass vom 10. Februar 1990.

36. Vgl. Fink, Hans Jűrgen, Bűndnis 90. Die Revolutionăre der ersten Stunde verloren die Wahl, in: Ebenda S. 515～517.

37. Vgl. Helwig, Gisela, Bund Freier Demokraten. Die Liberalen auf dem műhsamen Weg zur Vereinigung, in:Ebenda S. 511～514.

38. Vgl. Fink, Hans Jűrgen, Die SPD in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2/1990, S. 180－185.

39. Vgl. Spittmann, Ilse, Runderneurt. Die PDS,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in: Deutschland Archiv, 4/1990, S. 508－511.

40. Siehe Volkskammerwahl vom 18. Măr 1990, in: Pressespiegel Aus Zeitungen und Zeitschriften der DDR, hrsg. vom Bundesministrium fűr innerdeutsche Beziehungen, Nr. 5－21.3. 1990.

41. Vgl. Hacke, Christian, Die Deutschl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Weidenfeld, Werner/ Zimmermann, Hartmut(Hrsg.) Deutschland Handbuch. Eine doppelte Bilanz 1949－1989, S. 535～550.

42. 東獨 드메이지어總理 아래의 聯政構成:

東獨 드메이지어總理 아래의 聯立政府內閣 名單

Die neue DDR－Regierung

총리	Ministerpräsident:Lothar de Maiziere(CDU)
경제	Wirtschaft:Gerhard Pohl(CDU)
보건	Gesundheitswesen:Jűrgen Kleiditzsch(CDU)

에너지 • 원자력안전	Energie－und Reaktorsicherheit:Karl-Hermann Steinberg(CDU) ※기민당
청소년 • 체육	Jugend und Sport:Cordula Schubert(CDU)
가족 • 여성	Famile und Frauen:Christa Schmidt(CDU)
교통	Verkehr:Horst Gibtner(CDU)
교육 • 학술	Bildung und Wissenschaft:Hans－Joachim Meyer (parteilos, von der CDU nominiert)
언론정책	Medienpolitik:Gottfried Műller (CDU)
문화	Kultur:Herbert Schirmer (CDU)
총리실정무	Leiter des Amtes des Ministerpräsidenten (im Minister-rang)Klaus Reichenbach(CDU)
외무	Auswärtige Angelegenheiten:Markus Meckel(SPD)
재무	Finanzen:Walter Romberg(SPD) ※사민당
통상 • 관광	Handel und Tourismus:Sybille Reider(SPD)
노동 • 사회	Arbeit und Soziales:Regine Hildebrandt(SPD)
우편 • 통신	Post-und Fernmeldewesen:Emil Schnell(SPD)
연구 • 기술	Forschung und Technologie:Frank Terpe(SPD)
식량 • 농림업	Ernährung, Land-und Forstwirschaft:Peter Pollack (parteilos, von der SPD nominiert)
법무	Justiz:Kurt Wunsche (Bund Freier Demokraten Die Liberalen) ※자유민주연맹
지역업무	Regionale und Kommunale Angelegenheiten:Manfred Preiss(Bund Freier Demokraten－Die Liberalen)

건설	Bauwesen, Städtebau und Wohnungswirtschaft: Axel Viehweger(Bund Freier Demokraten-Die Liberalen)
내무(副總理)	Innere Angelegenheliten und stellvertretender Ministerpräsident: Peter－Michael Diestel(DSU)
경제협력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Hans － Willhelm Ebeling(DSU) ※ 독일사회연맹
군축・국방	Abrüstung und Verteidigung: Rainer Eppelmann (DA)※ 민주개벽당

43. Vgl. Rausching, Dietrich (Hrsg.), Rechtsstellung Deutschlands. Völkerrechtliche Verträge und andere rechtsgestaltende Akte, Nördlingen, S. 48.

44. Vgl. Steiniger, Rolf, Eine Chance zur Wiedervereinigung? Die Stalin－Note vom 10. März 1952. Darstellung und Dokumentation auf der Grundlage unveröffentlichter britischer und amerikanischer Akten, Bonn 1985, S, 15ff.

45. Kohl, Helmut, Reden und Erklärungen zur Deutschlandpolitik,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89, S. 122.

46. Neues Deutschland vom 20. April 1990.

47. Politik. Informationen aus Bonn, Nr. 2/3 vom 28. Juni 1990,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48. Ebenda(上同)

49. Ebenda(上同)

50. Stern, Klaus/Schmidt-Bleibtreu, Bruno(Hrsg.), Staatsvertrag zur Wő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mit Vertragsgesetz, Begrűndungen und Materialien, Nordlingen 1990, S. 79.

51. Classen, Dieter/Heemann, Karen/Sartori, Adam, Einladung ans Ausland, Die gesamtwirtschaftlichen Folge des DDR- Hilfsfonds lassen sich kaum abschőtzen. in: Wirtschaftswoche, 25. Mai 1990. S 94.

52. Interview mit Prősident des Gesamtdeutschen Instituts Detlef Kűhn. (全獨問題 硏究所長 데틀레프 퀸과의 인터뷰)

53.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9. Mai 1990.

54. Siehe Politik, Informationen aus Bonn, Nr. 6 Sept./Okt. 1990,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55. Vgl.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ű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Bulletin, Nr. 104/S. 877 Bonn, den 6. September 1990,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56.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 September 1990.

57. Das Parlament, Nr. 38/14. September 1990.

58. Pressespiegel aus Zeitungen der fűnf neuen Bundesląnder, Nr. 16-24. 10. 1990, hrsg. vom Bundesministerium fűr innerdeutsche Beziehungen.

59. Vgl. Jűttner, Alfred/Blumenwitz, Dieter/ Loewenstern, Enno von, Die Deutsche Frage. Grundsőtzliche Probleme und aktuelle Aspekte. Bericht des Deutschlandseminars der Hochschule fűr Politik in Kooperation mit der Bayerischen Landeszentrale fűr politische

Bildungsarbeit vom 3.—5. Oktober 1982, München 1983. S. 11ff.

60. Vgl. Horizont international. Magazin für Politik und Wirtschaft, 27/90, 37 Woche, S. 6—17.

61. Vgl. Vertrag über die abschliess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Die Verhandlungen über die äusseren Aspekte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hrsg. vom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90.

62.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11. Februar 1990.

63. Spittmann, Ilse/Helwig, Gisela (Hrsg.), Chronik der Ereignisse in der DDR, Gütersloh 1990, S. 64.

64.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vom 6. Mai 1990.

65.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23, Juni 1990.

66. Siehe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6. Juli 1990, auch vom 7. Juli 1990.

Auch Vgl. Wegener, Hennig, Die Nord-atlantische Allianz im Wandel, in: Der NATO Brief, Nr. 4/1990—Juli/August, hrsg/ von NATO Information Service, Sankt Augustin 1990, S. 3—10.

Vgl. Voigt, Karsten, Ziel:ein Europäischer Sicherheitsvertrag, in:Horizont international Magazin für Politik und Wirtschaft, 25/90, 35 Woche, S. 27—28.

67. Siehe Frankfurter Rundschau vom 16. Juli 1990.

68. Ebenda.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懸案問題 및 解決實態

金 淵 洙

(大邱大學校 敎授)

目 次

Ⅰ. 問題提起
Ⅱ. 東西獨의 統一政策과 그 結果
Ⅲ.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國際政治的 懸案問題
Ⅳ.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政治的 懸案問題
Ⅴ.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經濟的 懸案問題
Ⅵ.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社會的 懸案問題
Ⅶ. 結論：獨逸統一問題와 韓半島統一問題와의 比較

Ⅰ. 問題提起

제2차세계대전은 1945년 聯合軍이 獨逸帝國과 일본의 추축국들에 대하여 승전함으로써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民族들이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時代가 도달하였구나 하는 期待와 希望이 부풀게 되었지만 獨逸 게르만민족과 韓半島의 韓民族은 외세에 의해 다시 國土가 分斷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國際政治的인 發展過程에 있어서 많은 學者들은 남북한의 再統一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主張하는가 하면 東西獨의 統一은 영원히 希望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獨逸의 國際法 大家이면서 서독 킬(Kiel)대학교 국제법연구소 소장인 「멘젤」(E. Menzel)소장은 "獨逸의 分斷은 敗戰한 게르만민족이 전승한 연합국에게 바친 영원한 損害賠償이다"라고 규정을 하였던 것이다.[1)]

그런가 하면 東獨共產黨 政權은 東西獨의 統一이라는 헌법상의 조항조차도 1974년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 버렸으며, 西獨國民들도 지난 1972년도 여론조사에는 85퍼센트의 국민이, 그리고 1987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91퍼센트의 서독국민들이 東西獨의 統一은 不可能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의 統一은 21世紀에 政治的 奇蹟처럼 성공을 하고 말었는데, 예를 든다면 1990년 7월 1일에는 동서독간의 經濟 및 貨幣統合, 10월 3일에는 동서독간의 統一宣布, 그리고 금년말인 12월 2일에는 동서독의 단일총선거를 실시, 통일독일의 새정부를 구성하면 동서독의

통일은 完成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같은 分斷國家인 南北韓政府는 동서독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제정세에 의해 통일될 수가 있었는가를 엄밀히 그리고 客觀的으로 硏究함으로써 우리 7천만 韓民族의 소원인 南北韓의 統一도 가능하게 할 努力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東西獨이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懸案問題를 學術的으로 調査, 糾明을 하는 한편, 독일민족이 그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比較硏究의 目的은 우리 韓半島에 있는 南北韓 政府도 동서독정부와 같은 政治的 처지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懸案問題를 어떠한 方法으로 解決하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한 模倣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東西獨의 統一過程에서 노정된 懸案問題의 解決方法 硏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硏究하고 糾明해야 할 問題는 東西獨政府의 統一政策, 다시 말해 東西獨政府가 樹立된 1949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統一政策에 대해서 간단히 調査를 한 연후에, 이번 1990년도에 실제로 統一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政治的인 解決이 필요했는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Ⅱ. 東西獨의 統一政策과 그 結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A. Hitler)의 「나찌독일」(Nazi－Deutschland)이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켰다가 2천만의 蘇聯國民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통일은 完成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같은 分斷國家인 南北韓政府는 동서독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제정세에 의해 통일될 수가 있었는가를 엄밀히 그리고 客觀的으로 硏究함으로써 우리 7천만 韓民族의 소원인 南北韓의 統一도 가능하게 할 努力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東西獨이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懸案問題를 學術的으로 調査, 糾明을 하는 한편, 독일민족이 그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比較硏究의 目的은 우리 韓半島에 있는 南北韓 政府도 동서독정부와 같은 政治的 처지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懸案問題를 어떠한 方法으로 解決하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한 模倣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東西獨의 統一過程에서 노정된 懸案問題의 解決方法 硏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硏究하고 糾明해야 할 問題는 東西獨政府의 統一政策, 다시 말해 東西獨政府가 樹立된 1949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統一政策에 대해서 간단히 調査를 한 연후에, 이번 1990년도에 실제로 統一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政治的인 解決이 필요했는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Ⅱ. 東西獨의 統一政策과 그 結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A. Hitler)의 「나찌독일」(Nazi－Deutschland)이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켰다가 2천만의 蘇聯國民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戰爭結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美·蘇·英·佛 등의 聯合國에게 1945년 5월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獨逸領土중 일부는 蘇聯과 폴랜드영토로써 영구히 빼앗기고, 그 나머지 領土는 聯合國 4개국의 分割地域과 獨逸의 수도 백림은 共同占領地域으로서 분단됨으로써 「7등분」의 독일분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후 美蘇間의 政治·軍事的인 對立은 聯合軍들간의 政治的 이익때문에 占領地域인 獨逸內에는 1949년에 두개의 게르만족의 「반국가」(半國家)가, 즉 西獨인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東獨인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東西獨 政府는 곧 獨逸의 통일을 위한 政策을 발표하고 또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1949년 10월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 「울브리트」(W. Ulbricht)는 1971년 5월까지 25년간을 지배하면서 赤化統一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1959년 12월에 東西獨聯邦政府案을 提案한 것이외에 이렇다할 統一政策이라는 것은 없었다. 단지 서독의 「아데나워」(K. Adenauer) 政府의 반공적인 통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政治的 선전밖에 못하고 있던 「울브리트」는 1971년 5월에 실각당하고, 6월에 동독정권을 인수한 「호네커」(E. Honnecker) 東獨 社會主義統一黨 당수는 1974년도에 憲法改正을 하면서 統獨政策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실제 그때까지 東獨의 1968년도 憲法 제8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文句가 아직까지도 東獨이 獨逸의 統一을 위해 형식상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 "獨逸民主共和國과 東獨國民은 獨逸民族이 帝國主義에 의하여 강요된 獨逸分斷을 극복하고 두개의 獨

逸國家를 民主主義와 社會主義 바탕에 의해서 통일할 때까지 段階的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한다."[2]

그러나 동독 호네커정부는 이 憲法에서 規定하고 있던 東西獨의 統一政策을 1974년 憲法改正을 통해서 완전히 삭제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74년 憲法改正以後 정식으로 東獨에서는 동서독의 統一問題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1. 西獨의 아데나워首相의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ktrin)

獨逸聯邦共和國의 초대수상인 「아데나워」박사의 東西獨 統一政策은 너무나도 유명한 「할슈타인 독트린」을 骨子로 한 반공적인 통독정책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아데나워」수상은 불란서를 비롯한 西方陣營들과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 한편, 공산주의의 위협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J. Stalin)이 西獨政府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하의 중립적인 東西獨 統一政策案을 1952년도에 제안하였을 때도 이는 서독의 對西方 友好政策을 방해하려는 信憑性이 없는 政策이라는 간단한 이유로써 무시하고 말았을 정도였다.

다시 말해서 西獨初代首相 「아데나워」의 통독정책은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 「할슈타인 독트린」에 의하면 서독은 "동독과 국교를 맺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서독에 대한 非友好的인 政策으로 규정, 이런 국가들과는 國交樹立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교된 국가와도 국교를 절단한다."는 原則인 것이다. 그리고 이 「할슈타인 政策」에 의해서 서독은 동독과 국교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유고슬라비아와는 1957년에, 쿠바와는 1963년에, 그리고 스리랑카와는 1964년도에 맺었던 國交를 단절하였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는 1964년도에 國交를 樹立하기로 한 것을 取消하고 말았던 것이다.[3)]

西獨 「아데나워」수상은 西獨이 經濟的으로 또는 政治的으로 西方國家들과 국건한 關係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서독이 부유해지면 東獨共產黨政權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孤立되다가 종래는 서독에게 흡수, 통합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더욱이 아데나워수상의 反共的인 統一政策은 반드시 東西獨이 지금의 東西獨領土 뿐만 아니라 1937년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獨逸帝國의 영토, 예를 든다면, 지금 소련이나 폴랜드의 領土가 돼버린 前地域까지 합해서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主張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데나워수상의 반공적인 統一政策에 대하여 蘇聯의 「니키다 후르시쵸프」수상은 「東西獨, 즉 2개의 獨逸 獨立國家論」으로서 대항했는가 하면, 東獨의 「울브리트」 社會主義統一黨 政權은 1961년 8월 13일 「베르린障壁」을 쌓음으로써 西獨 「아데나워」首相의 東西獨統一政策은 완전히 失敗하고 말았던것이다. 그러자 西獨의 學者들은 아데나워首相의 반공적인 통독정책은 「한개의 대동구 내지는 대동독 無政策」(Nichtspolitik gegenüber den Osten)이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이다.[4)]

2. 「빌리 • 브란트」(W. Brandt)首相의 「東方政策」(Ostpolitik)

1969년도에는 西獨은 물론 동서구에 政治的 變化가 發生하였는데 그

것은 西獨의 總選擧에서 「사민당」(SPD)이 勝利를 함으로써 100년만에 처음으로 「사민당」당수인 「빌리·브란트」가 西獨首相에 就任을 하였기 때문이다. 「브란트」首相은 1969년도 政策發表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政治를 要約 發表하였다.:

"오늘날 政治的 보장에 대한 相互信任 없이는 同盟國도 없으며 또한 安全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은 모든 국가들에게는 물론 東獨에게 무력포기조약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무력포기만이 앞날의 政治的 發展을 약속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란트」首相은 이 政策發表에서 東獨을 國家로서 認定했는데 이 政策은 「브란트」首相이 「기민당」(CDU)과 사민당과의 대연정 당시 서독외상으로서 1967년 4월 20일 「할슈타인 독트린」을 포기하고 또한 동독을 인정할수 있다고 발표를 한 정책에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브란트」의 東獨政府 인정은 「아데나워」식 통독정책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아울러 西獨 초대 「아데나워」수상의 東西獨 統一政策과 사민당 「브란트」수상의 통독정책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데나워」수상의 동서독 통일정책은 「1민족 1국가」(Eine Nation, Ein Staat), 다시 말해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인데 비해, 「브란트」수상의 통독정책은 「1민족 2국가」(Eine Nation, Zwei Staaten), 즉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정책이다. 두번째, 「아데나워」수상의 통독정책은 국민경제, 국가외교 그리고 정치적인 면을 중심으로 獨逸을 統一하겠다는데 비해, 「브란트」首相은 東獨 내지는 蘇聯 및 동구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다시 말해서 동서구간의 平和를 中心으로 하는 國際政治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브란트」수상은 獨逸이 다시 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東西獨政府間의 관계부터 正常化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브란트」首相의 생각에는 지금은 東西獨이 分斷을 解決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만 東西獨의 分斷을 약화시키는 시간이라는 점이었다.

이와 결부하여 중요한 문제는 蘇聯도 東西獨의 統一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交涉도 반대할 것이나, 동서구간의 安全과 平和는 절대로 希望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西獨은 平和政策을 發展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브란트」수상의 東方政策의 基礎政策인데, 이 東方政策에 의하면 西獨은 「아데나워」수상이 벌써 成功的으로 西方國家들과의 평화관계를 수립한 것처럼, 동서구간에도 平和의 다리를 建設하여야만 하며, 또한 西獨은 東獨, 東歐, 그렇지 않으면 蘇聯과의 관계를 改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東西獨의 젊은이들도 이 平和의 다리밑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決定하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希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5)]

이와같은 西獨 「브란트」수상의 平和政策은 옛날 적국이었던 소련 내지는 동구국가들과도 무력포기조약과 平和條約을 맺게 되었으니, 예를 든다면 1971년 5월에 蘇聯과 西獨間의 무력포기조약을 맺은 것을 시발로 폴랜드, 체코슬로바키아와도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72년에는 동서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東西獨基本條約도 締結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다음과 같은 3개 특징, 예를 든다면, 첫째, 동서독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데나워」首相의 「할슈타인 독트린」을 포기하는 現實的인 政策이며, 두 번째 적국이던 소련과도 무력포기조약을 체결하는 평화정책이었으며, 그리고 세번째 독일정책의 최종목적인 東西獨의 統一을 위해 먼저 동서독 내지는 동구간의 緊張緩和를 먼저 달성하는 糾明政策이라는 3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브란트」수상의 東方政策 결과는 東西獨 내지는 東西歐間의 安保, 平和定着에는 큰 공을 세웠으나 동서독의 再統一을 달성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브란트」수상의 東方政策도 하나의 理想主義的인 國際政治로서 「브란트」수상의 표현을 빌린다면, 獨逸分斷의 약화는 가져왔으나 東西獨의 再統一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東獨의 「호네커」정권이 1974년 東獨 社會主義憲法을 개정하면서 「東西獨의 再統一」이라는 헌법문구까지 삭제해 버렸을 때, 「브란트」수상이 주장하던 東方政策의 목적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면, 「브란트」수상 자신도 동독에서 보낸 스파이사건때문에 실각하는 운명이 되었을 때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이 얼마나 큰 이상주의였는가는 저절로 증명이 되었던 것이다.

3. 東西獨의 統一의 基礎는 東獨 호네커 黨首의 失脚

東西獨의 再統一은 獨逸聯邦共和國 초대수상인 「아데나워」박사의 반공적인 「할슈타인 독트린」으로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민당 「브란트」수상의 平和的인 東方政策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은 완전한 統一에 成功을 하였다. 다시 말해 東西獨의 統一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던 주장과는 달리 하나의 정치적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독일통일이라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그때까지 동서독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던 「호네커」공산정권이 실각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獨逸의 政治的 變化를 가져온 사람은 바로 蘇聯의 「고르바쵸프」(M. Gorbachev) 대통령이라 하겠다. 1990년 2월 10일 독일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蘇聯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서독 「콜」수상은 "독일문제는 獨逸國民들이 스스로 決定할 일이다"라고 천명한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의 希望的인 발언을 듣게 되자, 기뻐서 "오늘이야말로 나에게는 제일 행복한 날이며 獨逸國民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날이다."라고 主張을 하면서[6] 西獨으로 歸國을 하던 비행기속에서 파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파티에 대해서 東獨의 신문인 「베르린-자이퉁」(Berliner Zeitung)은 6월 13일자 사설에서 "東西獨間의 결혼식에는 아직 解決해야만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술파티는 너무 이르지는 않는가"하고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7]

그런데 이런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의 友好的인 對西獨政策은 1989년 11월, 즉 東獨 「호네커」共產政權의 실각을 意味하는 중요한 政治的 事件에서도 보여진다. 「호네커」社會主義統一黨 당수는 그간 蘇聯 「고르바쵸프」대통령의 「그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즉 開放政治나 改革政治가 東獨에서는 필요없다는, 다시 말해 어느 면에서는 反蘇聯的인 정치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호네커의 고자세적인 이유에는, 蘇聯이나 모든 東歐圈 社會主義國家들이 經濟問題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東獨의 經濟는 國民 1人當 國民所得, 즉 1인당

GNP가 1만 3000달러나 되는 대단히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東獨의 國民들은 西獨의 텔레비전을 보면서 동독 「호네커」 정권의 공산당일당독재에 불만도 많았고, 특히 「호네커」 공산정권의 反改革政治에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東獨國民들은 게르만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인 헝가리의 「바라톤제」(Balatonsee)호수지역으로 수만명이나 휴양여행을 갔었다. 그간 헝가리는 西方 門戶開放 經濟政策을 성공시킴으로써 國民經濟에 새 활력소를 찾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대서방국가 國境開放을 단행하자, 東獨國民들은 이런 헝가리의 政治的 發展에 「쇼크」(Shock)를 받아 게르만민족의 특성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즉 獨逸의 파도를 일으켰던 것이다.[8)]

東獨國民들이 헝가리에서 西獨으로 集團移住를 하게 되자, 동시에 東獨의 3대 도시인 베르린, 라이프찌히(Leipzig), 그리고 드레스덴(Dresden)시민들이 「호네커」에 대항하여 항의데모를 일으키면서 東獨共產黨政權에 改革政治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호네커」 동독국가원수는 자기에게 盲目的인 忠誠을 다하고 있던 東獨의 인민군(Volksarmee)과 「스타지」(Stasi), 즉 東獨비밀경찰을 동원하여 武力으로 東獨國民들의 항의데모를 진압하려고 했으나, 蘇聯 「고르바쵸프」대통령은 동독 「호네커」국가원수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東獨이 군을 동원했다가 發生하는 모든 事態에 대해서는 호네커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과 또한 "東獨政府가 改革政治를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責任"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공산세계의 宗主國인 蘇聯 「고르바쵸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적이며 또한 노골적인 비판을 받은 「호네커」는 蘇聯의 政治的 지지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健康을 이유로 사임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동독의 「호네커」공산정권이 실각함으로써 동독에서는 베르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독과의 통일의 길을 위한 모든 정책에서 협력하게 된 것이다.

Ⅲ.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國際政治的 懸案問題

오늘날 東西獨의 統一은 우리 韓國國民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根本的인 이유에는 지금까지 獨逸의 再統一을 가장 심하게 反對하여 오던 蘇聯이 이번에는 東西獨의 統一에 제일 앞에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蘇聯 내지는 다른 聯合國들이 東西獨의 統一을 형식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獨逸이 統一되면 구주에서는 제일 강한 국가가 된다는 政治的 不安 때문에 東西獨統一을 원치 않았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든다면 西方側聯合國 國民들의 輿論調査에서 東西獨의 統一을 지지하는 정도가 英國과 폴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소수였던 것이다.

물론 위의 統計에서는 蘇聯國民들이 東西獨統一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項目은 없다. 이 問題와 結付하여 獨逸은 제2차세계대전시 나찌독일에 의하여 2천만명의 蘇聯사람들이 生命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러나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이 1990년 2월부터 東西獨의 再統一을 公開的으로 지지하고 있어, 西方側 聯合國들은

적이며 또한 노골적인 비판을 받은 「호네커」는 蘇聯의 政治的 지지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健康을 이유로 사임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동독의 「호네커」공산정권이 실각함으로써 동독에서는 베르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독과의 통일의 길을 위한 모든 정책에서 협력하게 된 것이다.

Ⅲ.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國際政治的 懸案問題

오늘날 東西獨의 統一은 우리 韓國國民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根本的인 이유에는 지금까지 獨逸의 再統一을 가장 심하게 反對하여 오던 蘇聯이 이번에는 東西獨의 統一에 제일 앞에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 蘇聯 내지는 다른 聯合國들이 東西獨의 統一을 형식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獨逸이 統一되면 구주에서는 제일 강한 국가가 된다는 政治的 不安 때문에 東西獨統一을 원치 않았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든다면 西方側聯合國 國民들의 輿論調査에서 東西獨의 統一을 지지하는 정도가 英國과 폴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소수였던 것이다.

물론 위의 統計에서는 蘇聯國民들이 東西獨統一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項目은 없다. 이 問題와 結付하여 獨逸은 제2차세계대전시 나찌독일에 의하여 2천만명의 蘇聯사람들이 生命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러나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이 1990년 2월부터 東西獨의 再統一을 公開的으로 지지하고 있어, 西方側 聯合國들은

〈통계 1〉 연합국 국민들은 동서독의 통일을 원하는가?

단위 : 퍼센트(%)

항 목	국 가			
	미 국	프 랑 스	영 국	폴 랜 드
지 지	61	61	45	41
반 대	13	15	35	44
미 정	26	24	25	15

자료 : Berliner Zeitung(East Berlin), 1990년 6월 13일

東西獨의 統一을 西獨의 友邦國이란 입장에서 反對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은 왜 東西獨의 統一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인데, 그것은 이미 政治的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고 있다. 실은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은 그의 정책인 「그라스노스트」정책에서 성공한 후 蘇聯을 現代的 國家로 改革하기 위한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을 성공시키기 위해 死力을 다하고 있는데, 더욱이 蘇聯의 改革政治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西獨과 같은 世界的 經濟的 大國의 協力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 蘇聯이 그간 共産國家로서 국가명령경제, 즉 무능한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고수하고 있다가 이번에 國民經濟를 市場經濟로 改革하려고 시도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蘇聯의 國民經濟에 대한 막대한 지원, 예를 든다면 西方式 市場經濟의 産業知識(know－how)과 産業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 등이 소요된다.

蘇聯의 「고르바쵸프」大統領은 이런 經濟的인 問題를 東西獨國民들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 다시 말해 분단된 東西獨의 통일을 協力하여 주는 댓가로 西獨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자는 것이다.

더욱이 蘇聯 「고르바쵸프」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東獨 「호네커」社會主義統一黨정권은 자신의 개혁정치도 반대하는, 다시 말해 反蘇聯的인 共產黨獨裁의 國家로서 특히 동독국민들의 지지도 못받고 있는 정부인 만큼 차라리 이 악질적인 동독의 「호네커」공산당정권을 실각시킴으로써 서독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對蘇聯友好政策이 蘇聯의 國內問題를 解決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우호적인 동서독통일정책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물론 西獨 「콜」首相은 蘇聯 「고르바쵸프」大統領의 對獨政策 목적을 곧 이해를 하고는 西獨과 蘇聯間의 많은 經濟協力에 합의를 보았다. 여기에 한 두가지의 예를 든다면,

1) 1990년 2월 12일 西獨 「콜」수상과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간에는 그동안 蘇聯이 東獨과의 國際貿易을 통하여 蘇聯이 보던 利益들, 예컨대 50내지 60억달러에 달하는 교역의 총액과 經濟的인 특혜, 즉 蘇聯이 東獨을 통하여 輸入하던 西方의 產業的인 知識등을 西獨이 보상해주기로 祕密會談에서 合意를 보았으며[9]

2) 1990년 5월 5일에는 西獨이 獨逸統一後 駐東獨 蘇聯軍 유지비 내지는 철수준비비로써 年間 3억마르크, 즉 1억 8천만 달라를 부담해 주기로 合意를 보았으며[10]

3) 1990년 7월 15일에는 서독 「콜」수상이 소련 「고르바쵸프」大統領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兩國 頂上會談을 開催하게 되었다. 그때 가장 重要한 案件은 蘇聯이 그때까지 反對를 하고 있던 통일된 獨逸

이 나토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도 蘇聯이 경제개혁, 즉 市場經濟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자금을 서독정부가 차관형식으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서 소련이 양보를 하게 되었으며, 소련이 서독으로부터 제공을 받게될 경제차관의 총액은 250억 내지는 300억마르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11]

이와같이 서독의 정치적 필요성과 소련의 경제적 요구성이 교환되는 동서분쟁속에 「절대적 협력」(Antagonistic Cooperation)이 21세기의 政治的 기적으로 알려진 東西獨의 統一을 가져왔는데[12], 그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 오늘날의 國際政治는 國內政治, 그중에서도 經濟政治가 支配를 하고 있다는 실리적인 世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하간 東西獨의 統一은 東西獨과 蘇聯間에 政治經濟的인 協力이 성공함으로써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國際政治的 條件下에서 서방측 연합국들은 물론 동서구제국들도 그들의 진심이 어떻든간에 공개적으로는 東西獨의 통일을 지지하여야만 하는 運命에 놓인것이다. 그럼으로써 東西獨은 美國과 蘇聯이라는 聯合國間의 東西紛爭때문에 領土가 分斷되었었지만, 이번에는 統一을 성취하게 되었다.

1. 統一獨逸의 國境問題

東西獨의 分割이라는 것이 1945년 「아돌프·히틀러」(A. Hitler)의 「나찌독일」(Nazi－Deutschland)이 제2차世界大戰을 일으켰다가 敗戰함으로써 領土分斷이 되었다는 점에서, 東西獨의 統一은 이런 軍事的인 그리고 政治的인 不安要素가 제거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西獨政府는 이번에 東西獨이 統一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들에게 統一獨逸의 政治的인 目的을 분명히 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1990년 8월 31일에 獨逸聯邦共和國(西獨)과 獨逸民主共和國(東獨) 政府間에 맺은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전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양독일 정부는 독일통일을 통해 구주통합에 공헌을 할 것이며 유럽의 평화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독일정부는 국경문제로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유럽 국민들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13]

그런가 하면 금년 1990년 9월 12일 모스코바에서 兩獨과 美·蘇·英·佛 4개국 聯合國間에 맺어진 「獨逸統一에 대한 최종조약」에 의하면 統一된 獨逸의 國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제1조 제1항은 통일독일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그리고 백림시를 영토로 한다. 또한 이 領土는 동조약이 발효되는 순간에 최종적인 決定으로 보며, 특히 統一된 獨逸의 國境問題는 유럽의 平和秩序에 根本的인 기반으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제2항 統一獨逸과 폴랜드는 국제법에 의해 양국간에 國境을 확인한다.

제3항 統一獨逸은 외국에 대하여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

제4항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는 統一獨逸憲法이 이러한 原則과 一致되지 않은 規定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보

장한다.

제5항 불란서공화국, 蘇聯聯邦共和國, 大英帝國 그리고 美合衆國의 政府는 東西獨政府의 이와같은 의무와 설명을 받아들이며, 이순간 獨逸國境의 최종적인 성격이 확인됐음을 선언한다.[14]

그런가 하면 西獨·蘇聯間에 이번에 締結한 「獨逸聯邦共和國과 蘇聯社會主義國家間의 善隣, 友好, 그리고 協力에 관한 條約」에서도 통일독일의 國境問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컨대 동조약 제2절에 의하면,

"獨逸聯邦共和國과 蘇聯은 유럽내 모든 國家들의 현재 國境에 대한 領土不可侵을 무조건 존중할 것을 책임지며, 또한 오늘은 물론이려니와 미래에도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領土要求를 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그리고 兩國은 동조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앞으로 그리고 장래에도 유럽에 있어 모든 국가들의 국경이 불가침인 것을 또한 선언한다."[15]

東西獨 統一의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는 西獨 「콜」수상의 政府가 왜 이렇게 수차에 걸쳐 獨逸統一의 國境에 대해서 선언을 하였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獨逸의 분단된 역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獨逸分斷은 게르만민족의 獨裁者에 의해 야기된 제2차세계대전 결과, 소련과 같은 나라는 2천만 국민이 희생당했는가 하면, 특히 영국은 경제적인 파탄이 극심한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東西獨이 만일 統一을 원한다면 어딘지 자기네들의 죄과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政策을 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聯合國들이라든지 동서구국가들이 합의를 본 統一獨逸의 國

境에 대해서 同意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의 초대수상인 「아데나워」 박사의 統一政策, 특히 獨逸의 統一은 1937년도 12월 31일 날짜 영토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통독정책도 같은 「기민당」(CDU)인 서독 「콜」수상에 의해서 정식으로 포기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東西獨은 獨逸統一을 위해서 옛날 領土의 1/4, 즉 현재 蘇聯의 領土가 된 「발틱」(Baltic)연안해지역과 폴랜드의 영토가 된 「오데르－나이세」(Oder－Neisse)선 동쪽의 영토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유럽에 있어서 領土問題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國際問題일 뿐만 아니라, 게르만민족이 제2차世界大戰을 일으켜 유럽의 모든 國民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입혔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聯合國의 決定에 呼應하는 政策을 취하게 된 것이다. 사실 동서독이 옛날 獨逸帝國의 領土를 統一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면 최소한 蘇聯과 폴랜드간에 國際的인 國境問題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蘇聯은 「나찌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시 무려 2천만이라는 국민이 희생당했으며, 또한 폴랜드국민들도 「나찌독일」이 제조한 「까스」에 의해 6백만이라는 生命이 죽어갔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東西獨은 당연히 戰後의 事後措置로서 빼앗긴 영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특히 統獨은 소련이 대독일우호정책에 呼應함으로써 비록 領土는 적어졌지만 동서구의 平和를 가져올 수 있다는 高次元的인 政策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西獨政府가 蘇聯의 독일정책에 대해서 신임을 갖고 呼應을 하게된 동기는 1989년 4월 19일 소련과학원에 있는 「사회주의제도 세계경제연구소」소장인 「부라췌스라프·다시취예프」(W. Daschitschew)교수가 「고르바쵸프」大統領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작성한 蘇聯의 독일정책에 대해 根本的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다시취에프」교수에 의해서 작성된 蘇聯의 「獨逸政策備忘錄」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스탈린이 취한 대동구정책은, 물론 영토확장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았으나 蘇聯政治에 있어서는 도리어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소련공산당 당수「후르시쵸프」라든지 「브레즈네프」의 정책은 소련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주권제한설」인 「브레즈네프톡트린」은 동구내 정치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소련의 독일정치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獨逸이 다시 統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原則的으로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든다면 1950년 3월 10일 스탈린이 보낸 「소련각서」에 의하면 西獨이 西方과 軍事的으로 團結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나토」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獨逸의 中立化統一案도 지지하겠다고 하는 政策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당시 西獨을 비롯한 西方側의 반대로 인해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政治的 結果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점은 獨逸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東獨執權者들의 努力이 대단히 미약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독의 집권자들은 근래에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改革政治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련과 동독의 관계는 대단히 비판적인 처지에 이르렀으나 이점에 대해서 蘇聯은 蘇聯國家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노골적인 반

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물론 東獨에서는 요즘에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수긍하고 있지는 않지만 東獨의 經濟問題를 硏究할 때, 특히 東獨이 市場經濟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東獨의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國際的인 條件에서 蘇聯外交의 중요한 課題라는 것은 앞으로 蘇聯이 西方國家에 대해서 對立的인 政策을 취할 것이 아니라 對立을 解決 내지 중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開發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東西獨의 문제도 우리가 간단히 중립화문제를 외치고 있지만 만일에 군사적인 동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對立의 관계가 사라지면 中立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인 것이다.

특히 蘇聯은 언젠가는 西方에 대해서 특히 西獨에 대해서 經濟的인 開放政策을 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동서구의 전형적인 組織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또한 經濟가 앞으로 全世界의 國家的인 關係를 左右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국민들의 분쟁해결문제가 꼭 東西獨間의 統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西獨대립에 있어서도 東西獨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蘇聯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蘇聯은 蘇聯의 國家的인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적인 유럽의 집」을 생각해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蘇聯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계속되던 동서구간의 힘들고 또한 이익이 없는 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유럽의 국가들,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協力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蘇聯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뜻이 없고 또한 危險한 동서구간의 대립보다는 건강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제안하는 바이다"[16]

이럼으로써 蘇聯은 서방과의 대립보다는 자기네들의 국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호 내지는 협력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獨逸에 대해서는 西獨과 友好的인 政策을 취하는 것이 蘇聯이나 獨逸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蘇聯의 「고르바쵸프」大統領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89년도에 蘇聯에서 發表한 「다시치예프」교수의 「獨逸政策備忘錄」은 蘇聯의 獨逸政策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안 西獨 「콜」정부는 蘇聯과 協力을 하기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국간의 協力政策이 이번에 東西獨이 統一되는데 있어서 根本的인 政策으로 擴大發展되었던 것이다. 특히 西獨은 蘇聯이 占領하고 있는 獨逸帝國의 옛領土를 포기하는 條件下에서 兩國이 友好的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蘇聯이 필요한 經濟的인 政策에 協力하기 위해서 經濟的 借款을 提案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아직까지는 4대聯合國에서도 獨逸의 問題를 가장 심하게 또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하던 蘇聯이 西獨과 協力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聯合國, 즉 美國, 英國, 그리고 불란서는 이렇다 할 불평도 못하고 東西獨의 統一을, —東西獨이 옛날 獨逸帝國의 領土를 포기하는 條件에서—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獨逸의 失地 回復問題

東西獨이 이번에 統一할 수 있게 된 前提條件이라는 것은 西獨의 「아데나워」基民黨 政府가 통독정책의 하나로써 主張하고 있던 獨逸帝國의 1937년 12월 31일자 領土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蘇聯 및 폴랜드 내지는 東西歐의 모든 國家들이 東西獨의 統一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東西獨이 통일되면서 獨逸의 失地 回復問題는 영원히 독일영토를 포기하는 政策으로 바뀌는 平和政策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뜻에서 동서독의 실지 회복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는 東獨의 동쪽국경, 즉 폴랜드의 서쪽 국경 「오데르-나이세」선을 중심으로 한 폴랜드와 독일간의 국경문제 해결인 것이다.

이 獨逸과 폴랜드간 국경문제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원래는 1941년 10월 聯合國 대표들이 獨逸의 동쪽국경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原則的으로 合意를 본 데에서 유래된다. 특히 1945년 6월 11일 蘇聯, 美國, 그리고 英國의 代表들이 「크림」(Krim)섬에서 만나서 合意를 보았는데, 이 합의서중에는 「폴랜드」라는 項目이 있다. 이 항목에 의하면 "3개 聯合國政府는 폴랜드國境중 5내지 8킬로 동쪽지역을 소련에게 양보를 하는 대신에, 폴랜드는 북쪽 내지 서쪽의 獨逸領土를 폴랜드 領土로 占領할 것이며, 폴랜드의 서쪽국경은 후에 개최될 平和會談에서 決定을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1945년 8월 2일 「포츠담회담」(Postsdam)시에 합의한 성명서에 의하면 「제9절 폴랜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폴랜드의 서쪽국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合意를 보고 있다.:

"美蘇英 연합국정부들은 얄타회담에서 합의본 것과 같이 폴랜드에게 북쪽과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점령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3개 연합국정부들은 이 폴랜드의 서쪽국경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에 개최될 평화협정까지 보류할 것에 합의를 본다"[17]

이 독일과 폴랜드의 국경문제는 동서독이 국가로서 창건된 1949년부터 다시 國際的 問題가 되었는데, 예로써 東獨은 폴랜드와 같이 1950년 7월 6일 「고리쯔」(Goritz)조약을 체결해서 「오데르-나이세」선을 중심으로 한 폴랜드의 서부국경을 승인하고 말았다. 한편, 西獨이 폴랜드와 맺은 1970년 12월 7일자 조약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서독과 폴랜드는 1945년 8월 2일자 포츠담회담에서 합의를 본 동조약 제9장에 規定되어 있는 「오데르-나이세」선을 獨逸과 폴랜드의 國境으로 인정한다.

2) 兩國은 現在 獨逸과 폴랜드國境의 불가침을 지금이나 장래에도 존중하며 또한 領土的 불가침을 相互 그리고 무조건 존중할 것을 책임진다.

3) 兩國은 相互 領土的 요구가 없다는 것을 영원히 선언한다.[18]

이렇게 獨逸과 폴랜드의 國境問題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東西獨이 統一을 함으로써 獨逸의 統一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던 폴랜드 政府가 다시 한번 國境에 대한 國際法的인 確認을 받기 위해 問題를 제기함으로써 다시 國際問題化 되었던 것이다. 특히 西獨 「콜」首相이 폴랜드의 西部國境, 즉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政策이 國際政治問題化 되었었다. 특히 西獨 社民黨이나 基民黨과 聯政을 하고 있는 「自民黨」(FDP)의 前黨首이자 현 외무부장관인

「겐셔」(H. Genscher)도 당장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콜」首相은 처음에는 國際法的으로 인정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統一된 獨逸政府만이 폴랜드 서부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폴란드와 소련은 물론 東歐諸國이 「콜」首相의 고자세적인 국제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하기에 이르자, 정치적 생명에도 불리하다고 느낀 「콜」首相은 드디어 1990년 3월 2일 서독이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하는 댓가로 폴랜드가 獨逸에 대하여 제2차대전 損害賠償 要求를 취소할 것과 또한 폴랜드내에 있는 獨逸少數民族의 法的 保護를 條件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콜」수상이 政治的 條件으로 내세웠던 폴랜드의 獨逸에 대한 2차대전 損害賠償取消는 1953년 8월 23일 폴랜드政府가 이미 自進하여 취소했던 것이며, 특히 폴랜드내의 독일소수민족보다는 독일내에 폴랜드 소수민족이 더 많이 살고 있다. 따라서 폴랜드의 「마조비에츠키」(Mazoubiecki)수상은 곧 서독 「콜」수상에 대하여 "나는 경악했다. 서독이 서부국경문제를 가지고 어떤 條件을 내세운다면 폴랜드도 얼마든지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예를 들어 폴랜드내의 獨逸 소수민족보다는 서독내의 폴랜드 소수민족이 더 많고 또한 문제도 더욱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시 나찌독일이 폴랜드국민을 강제로 잡아다가 重勞動을 시킨 것에 대한 損害賠償을 要求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警告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덴마크政府는 西獨의 「콜」首相에게 "한번 눈을 감고 반성을 해보라! 제2차세계대전은 獨逸이 일으켰었고, 또한 얼마나

非人間的인 行動을 하였는가?"라고 「콜」수상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였는가 하면, 불란서외상도 西獨은 즉시 폴랜드 西部國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警告를 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0년 3월 3일 美國의 「로스엔젤리스 타임즈」는 이런 西獨 「콜」수상의 "帝國主義的인 主張은 나찌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侵略政策과 比較"를 하는 기사를 실었던 것이다.[19] 이렇게 서독 「콜」수상의 폴랜드 國境問題 提案이 東西歐諸國들의 公開的이고 또한 심한 비판을 받게 되자, 서독 「콜」수상은 자기의 提案을 포기하고 폴랜드 국민들의 要求를 "만족히 충족시키는 西獨政府의 政策"을 분명히 밝혔는데, 예를 든다면 1990년 6월 19일 폴랜드 國境에 대한 西獨政府의 決定을 發表했던 것이다. 이 決定書에 의하면 통일된 독일과 폴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다. :

1) 통일된 독일은 폴랜드 국민들이 독일로부터 또는 독일민족의 이름으로 저지른 不法的인 犯罪行爲에 의해 非人間的인 受難을 받은 것을 명심하며,

2) 통일된 독일과 폴랜드는 독일국민과 폴랜드국민들간에 友好의 政治를, 또한 사죄의 政治를 계속 發展시킬 것이며,

3) 통일독일과 폴랜드는 1950년 7월 6일자 폴랜드와 독일간의 국경을 국제법적 조약으로서 영원한 불가침임을 증명하며,

4) 통일된 독일과 폴랜드 양국은 현재나 앞으로 어떠한 영토요구도 없을 것을 선언한다.[20]

이럼으로써 독일과 폴랜드간에 國境紛爭은 완전히 해결됐으며 또한 독일의 실지 회복문제도 아울러 해결되었다.

3. 統一獨逸의 國防問題

이번에 동서독이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國際的인 問題는 독일의 軍事的인 問題였다. 왜냐하면 동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獨逸帝國에 의해 戰爭이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受難을 받았기 때문에 동서독이 통일된다면 옛날과 같이 軍事的으로도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불안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을 무조건 반대하던 나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서독은 이런 국가들의 軍事的인 不安을 사라지게 하는 保證을 해줌으로써 동서독의 재통일이 가능케 되었다. 한 예로써 동서독이 합의를 본 1990년 8월 31일자 「독일통일의 최종조약」 제3조에 보게 되면 동서독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국방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동조약 제3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동서독정부는 합의를 보고 있다.:

1) 동서독정부는 核, 生物, 그리고 化學武器의 製造, 保有, 使用을 포기함을 보증한다. 東西獨政府는 통일독일도 이러한 의무에 따를 것임을 선언한다.

2)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와의 완전한 합의하에 1990년 8월 30일 오지리의 수도 빈(Wien)에서 열린 「유럽 在來式武器 減縮協商」(CFE)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즉 서독정부는 統一獨逸의 戰力을 3년 내지 4년내에 陸海空軍을 합해 37만명의 兵力으로까지 減縮할 것을 約束한다.

減縮은 제1차 유럽 在來式武器 減縮協定 發效와 함께 開始한다. 이 한도내에서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의 대상이 되는 陸上, 航空兵力은 34만5천명을 넘지 않는다. 東獨政府는 이같은 宣言에 따른 것임을 約束한다.

3) 프랑스, 蘇聯, 英國 그리고 美國의 각 정부는 동서독정부의 이와 같은 宣言을 承認한다.[21]

다시 말해서 동서독의 통일은 앞으로 통일독일이 얼마나 平和的인 國家가 될 것인가를 宣言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에 대한 東西歐諸國의 不安이 사라짐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사실 동서독 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안보문제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세계대전후 1947년 영국과 불란서는 독일의 再侵略에 대비하여 1950년도에 상호방위조약인 「탱케르크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 후 1년뒤인 1948년에 벨기에, 화란, 그리고 룩셈부르크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또한 「브뤼셀조약」에 의해 「서유럽동맹」이라는 共同防衛體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유럽동맹」은 存在하고 있으나, 1949년도 美國과 캐나다가 서구국가들과 함께 「나토」를 창설한 뒤 실제 업무는 「나토」로 이양되었다 하겠다. 당시 獨逸은 어느 기구에서도 배제됐으며 무장해제가 된 피점령국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위협이 심각해짐으로써 독일재무장문제가 擧論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델레스」(Dulles) 國務長官은 미국의 유럽방위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의 필요성을 逆說했으나 서유럽국들의 反應은 冷淡하였던 것이다.

특히, 유럽共同防衛體 設立案을 처음 提案했던 프랑스는 독일을 包含시키는데 끝까지 反對, 결국 1954년 프랑스의회는 이 案 自體를 폐기

해 버렸던 것이다. 이때 영국 외무장관 「이든」(Edun)은 「브뤼셀조약」을 擴大, 서독과 이태리등 敗戰國을 包含하는 「나토」설립안을 제안, 오늘의 「나토」가 성립된 것이다.[22] 결국 서독 초대수상 「아데나워」박사의 反共的이며 또한 대프랑스 友好的인 外交政策이 成功함으로써 서부유럽에서는 서독을 빼놓고는 모든 문제가 解決되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있어서 동구의 「바르샤바 軍事同盟」(WTO)의 회원국인 동독이 동서독의 통일로서 사라진다는 점에서 軍事的인 수세에 몰리게 된 소련이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서 脫退할 것인가에 대해서 國際的으로 강력히 要求하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 서독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會員國으로 남아 있는데 대해 합의, 國際政治的인 奇蹟을 낳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련정부 자체내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다.

한 예를 든다면 1990년 7월에 開催된 蘇聯共產黨 제28차 당대회시 「고르바쵸프」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保守主義 政治를 主張하던 「예고·리카쵸프」(J. Ligatschow)는 "서독이 동독을 삼켜버리는 政策에 소련이 呼應을 했다"고 猛攻擊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 소련의 外務長官 「셰바르드나제」(E. Schewardnase)는 "우리는 동독을 서독에 팔지 않았다"고 攻駁을 하였는데,[23] 요는 소련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서독에 友好的으로 변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南北韓 統一問題를 解決하고 있는 韓國政府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1990년 7월 15일에는 서독 「콜」수상이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의 招

請으로 모스코바를 방문하여 양국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案件은 소련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는 통일된 독일이 나토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소련은 자국의 國民經濟를 市場經濟로 改革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經濟的 資金을 서독이 借款形式으로 提供하는 條件에서 소련이 양보를 하였던 것이다. 그당시 서독은 소련에게 「고르바쵸프」대통령의 市場經濟改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뜻에서 250억 내지 300억 마르크를 借款形式으로 지원한다고 합의를 하였다. 이럼으로써 서독과 소련은 동서독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통일독일이 나토에 남을 것인가 안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다.[24] 이와같은 소련의 정책은 「나토」會員國들의 환영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동서구의 緊張緩和 政策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당시 兩國은 동독에 남아 있는 소련군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는데, 그 합의된 내용은 동서독이 발표한 「독일통일최종조약」 제5조에 다음과 같이 公開되어 있다.:

1) 이 條約 제4조에 따라 蘇聯軍이 현 동독 영토 및 베를린에서 撤收할 때까지 이지역에는 통일독일의 兵力으로서 領土防衛를 위해 獨逸軍部隊가 주둔한다.

2) 蘇聯軍의 撤收가 이루어지는 동안 불란서, 英國, 美國군대는 통일된 독일의 希望에 따라 통일독일과 3국정부와의 協定에 의거해 베를린 駐屯을 계속한다.

3) 소련이 현 동독영토로부터 撤收를 完了한 以後에는 이 지역의 독일군 부대는 그이외 지역에 獨逸軍과 마찬가지로 同盟機構에 軍事的으로 귀속된다.[25]

그런데 서독과 소련정부는 1990년 5월 5일에 벌써 駐東獨 蘇聯軍의 維持費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매년 3억마르크 즉 美貨로서는 1억 8천 2백만달러를 負擔해주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國際的인 軍事問題에서 통일된 독일이 완전히 平和的인 國防軍을 保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서구의 모든 국가들은 통일된 독일을 자기네들의 우호적인 國家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4. 統一獨逸과 歐洲統合

이번에 미·소·영·불 4개聯合國과 東西獨政府間에 締結된 「독일통일 최종조약」 제7조에 보게 되면:

1)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정부는 베를린과 독일전체에 대한 權利와 責任을 이제 終結시킨다. 그결과 그에 대한 4개국의 協定決定들은 終結되며, 4개국 전체의 關聯機關은 해체한다

2) 통일독일은 이에 따라 對內, 對外關係에서 완전한 主權을 보유한다.[26]

그런가 하면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조약」 제10조에 의하면 동서독이 통일된 후 통일독일이 「구주공동체」(EC)에 가입되는 즉시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을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27]

다시 말해서 동서독이 통일됨으로써 통일된 독일은 國際政治에 있어서도 완전한 主權國家가 되는데, 특히 통일된 독일의 經濟力은 世界的인 강국이 됨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經濟大國 독일의 탄생에 대해서 유럽에 대한 發言權 弱化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통일독일의 經濟的 衛星國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구주공동체」(EC)를 주도해 나갈 것도 분명한 것이다. 실제 유럽공동체에서는 1990년 12월초 동서독 통일을 위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동독을 유럽공동체에 흡수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法的 問題를 硏究하였다.

특히, 금년 8월 22일에는 통일된 독일의 유럽공동체내에서의 活動에 대해서 妥協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특히 그당시 영국의 수상 「데처」는 동독을 구주공동체 水準으로 올리는 費用을 모두 서독이 負擔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이에 대해 구주공동체 會員國中 比較的 經濟力이 약한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포루투갈 등은 同調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불란서는 독일의 분단을 前提로 政治的 主導權을 행사하여 구주통합을 도모하면서 미·소양대국에 대항하는 힘을 갖는다는 유럽의 戰略을 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란서의 戰略은 독일통일로 인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불란서는 어떻게든 독일을 구주공동체에 붙잡아두고 統合을 推進함으로써 계속적인 影響力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독이 동서독간에 통일이 되더라도 軍事的인 면에서는 구주공동체에게 독일의 國防을 專擔시키면서 經濟的인 면에서만 활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구주공동체 전회원국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럼으로써 독일이 통일된 후 구주공동체에 들어옴에 있어서 발생하는 財政이 약 20억마르크인데, 금년 7월 11일 구주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합의를 보았다.[28)]

이와같이 독일이 통일이 되더라도 구주통합에 있어서 絶對的으로 指導的인 위치를 맡지 않음으로써 통일된 독일의 經濟力 내지는 政治力

에 대해서 不安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불란서에게 根據없는 不安이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1992년도 구주통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동서독의 구주통합정책인 것이다.

Ⅳ.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政治的 懸案問題

동서독이 이번에 분단된 領土를 재통일하는 데에는 같은 分斷國家인 우리 韓民族에게 아주 좋은 經驗을 보여 주었다. 특히 서독정부가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동독정부와 동독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民族的인 그리고 政府損失的인 정책을 취했는가는 우리 남북한정부에게 분명한 教訓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서독 통일문제에 있어서 야기된 政治的 懸案問題로써 동서독이 어떤 方法으로 통일을 하였으며, 또한 통일국가를 위해 어떤 조직을, 그렇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國家理念 내지는 통일된 독일에서의 政黨들은 어떤 관계와 政策을 취하는가를 分析하기로 한다.

1. 東西獨의 統一方法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國際的인 情勢에 따라서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믿었던 關係로 이번 동서독의 통일을 「21세기의 政治的 奇蹟」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서독통일을 急推進하는데 있어서 특히 동서독정부가 보여준 게르만민족의 團結心과 友愛 내지는 信任度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이 통일을 하는 그 방법

에 대해서 不安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불란서에게 根據없는 不安이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1992년도 구주통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동서독의 구주통합정책인 것이다.

Ⅳ.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政治的 懸案問題

동서독이 이번에 분단된 領土를 재통일하는 데에는 같은 分斷國家인 우리 韓民族에게 아주 좋은 經驗을 보여 주었다. 특히 서독정부가 독일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동독정부와 동독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民族的인 그리고 政府損失的인 정책을 취했는가는 우리 남북한정부에게 분명한 教訓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서독 통일문제에 있어서 야기된 政治的 懸案問題로써 동서독이 어떤 方法으로 통일을 하였으며, 또한 통일국가를 위해 어떤 조직을, 그렇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國家理念 내지는 통일된 독일에서의 政黨들은 어떤 관계와 政策을 취하는가를 分析하기로 한다.

1. 東西獨의 統一方法

우리는 독일의 통일이 國際的인 情勢에 따라서 도저히 不可能하다고 믿었던 關係로 이번 동서독의 통일을 「21세기의 政治的 奇蹟」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서독통일을 急推進하는데 있어서 특히 동서독정부가 보여준 게르만민족의 團結心과 友愛 내지는 信任度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동서독이 통일을 하는 그 방법

에 있어서 정말 게르만민족적이라고 규정을 해야할 만큼 너무나 평화적이었다. 예를 든다면 동독의회가 1990년 8월 23일에 「東西獨統一決議案」을 가결했는데, 이 동독의회가 채택한 統獨決議案이라는 것은 서독, 즉 獨逸聯邦共和國의 憲法의 規定에 따라 統一節次를 밟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23조에 의해서 동서독이 통일을 한다는 것인데 동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基本法은 獨逸聯邦을 구성하는 12개 주에 즉각 適用되며, 독일영토를 구성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聯邦加入과 동시에 적용된다."[29]

또한 이번 8월 31일에 동서독정부가 合意 調印한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 제1장 제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990년 10월 3일에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 제23조에 의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加入됨으로써 브란덴부르크, 메키렌부르크 -포루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튜린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가 된다.

이런 주들의 構成과 國境은 1990년 7월 22일자 독일민주공화국의 주구성법의 決定에 의한다. 그리고 베를린 地域은 베를린주로 된다"[30]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 동서독정부간에 게르만민족적인 友愛와 協力으로써 모든 政策이 손조롭게 發展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90년 4월에는 동독내에서 행정규정상의 주가 부활되었는데, 이 5개주는 옛날의 경계대로 다시 復活이 되며 통일된 독일연방으로 編入되기 위한 措置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년 4월에는 베르린장벽이 완전 撤廢되고 7

월 1일에는 동서독간의 經濟 및 貨幣統合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 10월 3일에는 동서독 양정부로부터 독일의 통일이 宣布되었으며, 10월 14일에는 동독의 주의회선거가 實施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全獨逸의 總選擧가 실시됨으로써 통일독일의 새정부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써 동서독은 완전히 통일이 되는데 이번 동서독의 統一政策의 特徵이라는 것은 게르만민족간의 信任과 友愛인 것이다.[31]

2. 統一獨逸의 國家·政府組織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자로 豫定된 統合實施後 兩側의 政治 및 法律制度등 全般的인 體制를 單一化하기 위한 「독일통일 回復을 위한 條約」에 調印함으로써 통일독일의 마지막 障碍를 넘는, 사실상 독일통일 회복을 完了시켰다. 그런데 이번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條約」의 基本趣旨는 社會主義國家였던 동독의 各種制度를 서독체제에 맞도록 標準化 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동독과 서독은 지난 45년간 對立的인 體制를 각각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落胎法등 차이가 큰 부분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통일독일정부에 그 解決을 미루었던 것이다.

이번 동서독간의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條約에서 합의한 내용은 동독이 오는 10월 3일 서독 基本法 제23조에 의거해 서독으로 통합한다는 것과 통일독일의 수도 예정지는 베를린으로 指定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서독간의 異見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뚜렷한 解決方法을 찾지 못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통일독일정부로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서독에서는 落胎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동독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서독기민당정권은 落胎法問題에 관해서는 절대로 讓步할 수 없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에서는 일단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각자 제도를 유지키로 하며, 서독여성이 동독지역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아도 起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國家組織에 있어서 首都 豫定地로써 베를린을 指定하기는 했지만 의회와 行政府의 위치 결정은 통일후에 결정토록 함으로써 수도의 위치결정은 사실상 留保한 셈이다. 아울러 통일독일의 國家組織에 있어는 동독국회가 1990년 5월달에 동독의 憲法을 改正한 그 精神에 의해서 합의를 보았는데, 그 憲法改正의 중요한 骨子는 다음과 같다.

즉 동독은 自由, 民主, 聯邦 그리고 福祉國家 내지는 社會基本秩序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東獨憲法이 堅持해 왔던 社會主義國家와 法的 秩序가 이제서부터는 완전히 삭제가 된다. 즉 東獨社會가 自由主義的인 基本秩序를 인정하게 된 것이며, 이런 自由, 民主, 法治的 기본질서에 의해서 통일독일의 政府가 조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된 독일의 國家나 政府는 自由的, 民主的이며 또한 聯邦的인 法的 秩序를 尊重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동서독이 다시 통일되는데 있어서 서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동독의 5개주의 지위를 認定하는 가운데, 각 주의 상원의원의 수만은 서독의 주상원의원들의 수가 최대 8명까지 선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부 3명의 상원의원을 選出하도록 구정하였다. 이는 새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

게 될 동독의 5개주의 재정적인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서독의 각 주들이 동독에 대한 財政支援을 極小化함으로써 負擔을 줄여야 하겠다는 立場에서 취한 政策이다.

이번에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合流하는 形式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특히 10월 5일에는 동독의 政府 및 議會가 自進 解散을 하고는 10월 3일에는 서독정부로 통합이 됨으로써 통일독일의 國家 및 政府組織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이라고 하지만 서독이 모든 統一事業에 있어서 主導的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국가 및 政府組織의 중요한 위치는 당연히 서독의 政治家들로 任命이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통일독일의 初代大統領은 現在 서독의 대통령인 「바이제커」(R. Weizsaecker)박사가 선출될 것이며, 또한 통일독일의 초대 수상에는 현재 서독의 수상인 「헬무트 콜」(H. Kohl)이 맡게 될 것이다. 그와 반면에 현재 동독의 수상인 「드메지에르」(De Maiziere) 總理는 통일독일의 初代國會議長이 될 것으로 豫定되어 있다. 이와같이 동서독 정부는 통일독일의 국가 및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새로운 연합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서 서독식으로 改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통일독일국가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法的인 原則은 동서독간에 締結된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의 전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통일독일국가는 原則的으로 福祉國家的이며 또한 民主社會的인 聯邦國家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통일독일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양 정부간의 많은 法律的 差異가 있어 解決되지 못한 문제는 통일독일이후에 동서독의 法律들을 조화시키고 법률적 해결을 찾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3. 統一獨逸의 國家理念과 制度

동서독이 이번에 통일이 됨으로써 통일독일국가를 建設하는데 基準이 된 國家理念은 동서독간의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의 원칙에 따라, 동독의 國家制度가 서독의 국가제도를 표준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일독일의 국가이념은 서독의 國家理念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즉 통일독일국가의 국가이념은 첫째는 민주적이며, 둘째는 自由主義原則이며, 세째는 연방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독일의 국가기본틀은 15개의 주정부가 연합된 연방국가의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런 目的에서 동독의 人民議會는 1990년 5월에 동독의 憲法을 수정하면서 지금까지 동독정부가 국민이나 政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던 法規의 精神을, 다시 말해 社會主義的인 國家 및 法的 秩序,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社會主義的 合法性 내지 法意識이라는 法規律을 적용하던 것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지금으로부터는 自由, 民主, 그리고 聯邦的인 法治國家로 규정을 하였던 것이다.[32]

또한 東獨이 社會主義的 共産主義國家가 아니라 自由, 民主 그리고 聯邦的인 法治國家라는 뜻에서 동독의 국가상징인 망치, 콤파스 그리고 이삭의 모습들을 동독의 국기에서 금년 6월에 제거하고 말았던 것이다.[33] 특히 동서독의 통일이 유럽의 安定, 秩序를 어떠한 면에서도 해치지 않는다는 原則을 동독의회에서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통일독일의 國家理念은 오늘날까지도 서독이 실행하는 가장 평화스럽고 또한 가장 民主的인 聯邦國家라고 온세계로부터 尊敬을 받고 있는 國家理念을 전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이런 法的인 정신하에서 앞으로 조직될 통일독일의 국가가 구성될 것이다.

4. 獨逸統一과 兩獨 政黨間의 變化

동서독이 이번에 통일국가로 재편되는데 있어서 양독간 政黨의 문제는 原則的으로 동독정계에서 社會主義要素가 완전히 除去됨으로써 동독의 정당과 서독의 정당이 합당되는 형식으로써 해결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동독의 정당은 오늘날까지 동독의 永久執權黨이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이 政治的 勢力을 잃고 「민사당」(PDS)으로 변질되고는[34], 다른 동독의 모든 政黨은 政治的 活動을 獨立的으로 할 수 있는 自由가 賦與됨으로써 동독의 많은 정당은 서독내 같은 노선의 정당에 합당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든다면 서독의 執權黨인 「기민당」(CDU)과 동독의 집권당인 기민당은 금년 10월 1일에 서독의 함부르크시에서 合黨大會를 소집함으로써 「독일기민당」이 조직되었는데 당수로서는 현재 서독기민당의 당수인 수상 「헬무트. 콜」박사가 選出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合黨大會에서는 基民黨의 共同議長, 議長團, 黨幹部 그리고 黨政策을 합의하였으며, 또한 당대표들의 수가 지금의 750명에서 약 150명이 增員하였다고 한다. 동독기민당은 금년 9월 28일에 동베를린에 모여서 당의 合黨을 위한 特別黨大會를 소집하였으며, 또한 동서독의 기민당을 합당하여 「독일기민당」으로 확대할 것도 합의하였던 것이다.[35]

현재 동서독에서 모두 제1야당인 「사민당」(SPD)의 합당문제는 사민당내 정치이론상의 意見對立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호네커」 共産黨政權이 失脚한 後 동독에서 실시된 제1차 自由民主的인 議會選擧에서 제일먼저 조직정비에 착수한 동독 사민당이 동독의 기민당

과 같이 연정에 참여하였지만, 동서독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서독사민당의 수상후보자인 「오스카·라폰테네」(O. Lafontaine)가 동독기민당에게 最後通牒으로써 選擧法의 改定을 要求한 結果, 동독의 초대 연정이 깨어졌을 뿐만아니라, 동독사민당의 黨員들이 서독사민당의 수상후보자인 「오스카·라폰테네」가 통일독일의 사민당의 당수가 되면 자기네들의 政治的 運命이 분명치 않다는 不安感에서 금년 7월 1일 당대회에서 동독사민당의 名譽總裁로서는 「빌리·브란트」 서독사민당의 名譽總裁를 選出하면서도 동서독의 사민당 합당시 수상후보자로 「오스카·라폰테네」를 拒絶하였는가 하면, 독일사민당 總裁는 現在 서독사민당의 總裁이며 전 뮌헨 및 백림시장이었던 「포겔(Vogel)」이 當選되었던 것이다.[36]

독일정치에 있어서 제3당인 「자민당」(FDP)의 동서독합당은 아직까지 문제가 解決이 되지 못했는데, 서독의 자민당은 執權黨으로써 하등 문제가 없으나 동독의 자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정당이 동서독간의 합당문제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의 3개의 자민당이라는 것은 「독일자유민주동맹」, 「동독자민당」 그리고 「도이체 포름 파타이」, 즉 「독일광장당」인데 이 3당이 합당하는 경우에 서독의 자민당과 어떤 정책으로서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合意를 못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合黨이 된 「독일자민당」의 총재가 되려고 하는 서독자민당의 당수인 「오토·그라프·람스도로프」(O. Lamsdorff)에 대해서도 동독 자민당들이 合意를 못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로 宣布되는 10월 3일에 이르러 동서독의 자민당도 합당되어야만 할 政治的 그리고 道義的 責任이 있기 때문에 동독내의 자민당 정당들간의 합의는 중요하다고 하겠다.[37]

이럼으로써 동서독의 政黨들은 合黨形式에 의해 모든 政黨이 앞으로의 발전할 政治的 方法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를 보고 있는데 동독의 제4당이면서 옛날 동독의 영원한 집권당이었던 「社會主義統一黨」의 후신인 「민사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가 않은 것이다. 특히 민사당은 동독에서 호네커 共產黨政權이 몰락한 후 실시한 人民議會議員選擧에서 겨우 동독국민의 16.3%의 지지를 받은 소수정당이 되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이후 금년 12월초에 聯邦議會選擧時 議會議員選擧法에 선거유권자들의 5%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規定에 의해서 동독민사당이 통일독일국회에 進出할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의하면 동독정당들에게 서독선거법상 5%이상의 有權者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는 선거법 자체가 동독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解釋 때문에 「違憲」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수상 「헬무트·콜」은 통일독일의 초대수상으로서 지금 서독이 시행하고 있는 選擧法을 수정없이 이번에 실시되는 통일독일 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하겠다고 發表함으로써 동독의 제4당인 민사당의 政治的 運命은 예측할 수 없다. 옛 동독 共產黨의 후신인 「민사당」이 통일독일의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V.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經濟的 懸案問題

동서독간에는 금년 5월 18일 제1단계 統一過程으로써 7월 1일을 기

이럼으로써 동서독의 政黨들은 合黨形式에 의해 모든 政黨이 앞으로의 발전할 政治的 方法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를 보고 있는데 동독의 제4당이면서 옛날 동독의 영원한 집권당이었던 「社會主義統一黨」의 후신인 「민사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가 않은 것이다. 특히 민사당은 동독에서 호네커 共產黨政權이 몰락한 후 실시한 人民議會議員選擧에서 겨우 동독국민의 16.3%의 지지를 받은 소수정당이 되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이후 금년 12월초에 聯邦議會選擧時 議會議員選擧法에 선거유권자들의 5%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規定에 의해서 동독민사당이 통일독일국회에 進出할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의하면 동독정당들에게 서독선거법상 5%이상의 有權者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는 선거법 자체가 동독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解釋 때문에 「違憲」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수상 「헬무트·콜」은 통일독일의 초대수상으로서 지금 서독이 시행하고 있는 選擧法을 수정없이 이번에 실시되는 통일독일 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하겠다고 發表함으로써 동독의 제4당인 민사당의 政治的 運命은 예측할 수 없다. 옛 동독 共產黨의 후신인 「민사당」이 통일독일의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V.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經濟的 懸案問題

동서독간에는 금년 5월 18일 제1단계 統一過程으로써 7월 1일을 기

해 貨幣, 經濟 및 社會統合을 실현시키는 歷史的인 國家契約이 서독 「티오 바이겔」(T. Waigel)財務長官과 동독정부의 「월터 론버그」(W. Rombeg) 財務長官間에 조인되었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 양독정부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실시했는데, 이 協定文에 대해서 서독 「콜」 수상은 "이번 양독정부가 조인을 한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은 독일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날로써 祖國統一을 향한 거대한 일보를 내딛게 된다"고 聲明을 發表했는가 하면, 동독의 「드·마이지이」수상은 "이번 양독정부가 調印을 한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은 獨逸統一을 위한 다리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서 금년 7월 1일은 동서독이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동서유럽에 대해 독일 마르크經濟圈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새로 탄생한 大마르크圈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의 기대와 함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독의 국민총생산(GNP)은 1989년 기준으로 1조 2,000억달러 인데다, 동독도 서독의 10%수준인 1천 300억달러 수준이다. 그러므로 동서독이 經濟統合을 하면 단순히 수치상으로 國民總生産이 1조3천3백억달러로 프랑스의 1.5배, 영국의 1.8배가 될 것이다.

여기에 8백만이라는 동독의 노동력을 감안한다면 실로 유럽의 경제를 좌우하는 독일의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38]

1. 兩獨間의 貨幣 및 財産整理

동서독 양정부는 통일되기 전에 貨幣統合을 통해서 동독의 경제를

서독경제와 같이 활발하게 운영 내지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이번에 동서독정부가 합의를 본 貨幣統合의 原則은 1990년 5월 18일 서독 및 동독정부가 合意를 본 「貨幣, 經濟 및 社會統合을 위한 條約」 제2장 제10절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동서독이 합의를 본 貨幣統合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화폐통합을 통해 서독의 독일마르크가 지불, 계산 그리고 모든 가치 및 보장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 貨幣統合 目的을 위해 獨逸聯邦銀行이 貨幣發行銀行으로서의 責任을 진다.

2) 貨幣統合 동독의 經濟를 위한 안전한 貨幣價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서독정부는 貨幣統合 전지역내에 인플레자극이 일어나지 않게 또한 동독내 企業經濟能力을 強化시키는데 모든 방법을 노력한다.

3) 독일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 제12조에 의하여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全 貨幣統合地域內에서 貨幣를 보호하기 위한 貨幣流通과 공급을 철저하게 지킨다.

4) 貨幣的인 稅金의 前提條件은 동독이 시장경제적인 면에서 대부제도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은 個人的, 綜合的 그리고 公共的인 은행, 자유스러운 貨幣 및 資本市場 그리고 資本市場에서의 이자형성경쟁에서 個人企業的 基本原則下에 運營되는 實務的인 制度를 設立한다.

5) 제1항에서 4항까지의 規則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독정부는 다음 사항을 합의하는데

첫째, 1990년 7월 1일 날짜로 독일마르크를 동독의 貨幣로 정

하며, 통일독일에서는 서독에서 發行한 貨幣를 유일한 法的 지불수단으로서 인정을 하며,

두번째, 賃金, 月給, 奬學金, 年金, 집세 그리고 임대료 및 다른 지불은 1대1의 비율로 계산을 하며,

세번째, 동독인들에 대한 모든 經濟的인 관계는 原則的으로 2대1의 비율로 交換하며,

네번째, 동독내의 독일마르크 교환은 동독의 사람이나 기관이 동독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구좌로써만 가능하다.

다섯번째, 자연인들의 화폐기관에 있는 재산은 이번 한번까지는 신청에 의하여 2대1 比率로 교환해 주며 그 差額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른 비율로 한다.

여섯번째, 동독밖에 사는 사람들의 자산에 대한 규정은 특별규정법에 의한다.

일곱번째, 이 화폐통합의 비율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

6) 동독국민들의 財産과 그들의 收益 내지는 國家豫算의 淸算을 위해서 동독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대로 절감한 액수를 지급한다.

7) 독일연방은행은 이번 貨幣統合을 위한 모든 權能을 독일연방은행법에 따라 동독내에서 합의를 한다. 동독은 이를 위해 베를린과 15개의 지점을 설치한다.[39]

이렇게 동서독 양정부는 통일된 독일에 있어서의 貨幣統合에 대한 모든 原則을 자세히 합의하였는데, 實際的인 면에서도 1990년 6월 30

일까지의 동독인들의 예금은 1,700억 독일마르크였으며, 동독국민들의 재산은 동독마르크 2대 서독마르크 1의 비율로 청산되었다. 그런가 하면 동독국민들이 經濟生活을 서독마르크로 시작할 수 있도록 基本貨幣를 교환해 준 그 비율을 보게 되면 「貨幣統合 및 貨幣轉換을 위한 措置」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는 2,000마르크씩,

2) 15살이상 59살까지 동독주민들에게는 4,000마르크,

3) 만 60세가 넘는 동독인에게는 6,000마르크를 교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40]

그럼으로써 동독주민들이 서독마르크로서의 經濟的 生活을 시작할 수 있으며, 통독은 동독의 經濟를 서독과 같은 水準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2. 獨逸統一 後의 內獨交易 및 經濟協力問題

동서독이 이번에 평화스럽게 통일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1945년 聯合國에 의해서 분단이 되는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양독간의 「내독교역(Innerdeutsche Handel)」이라는, 다시 말해서 독일국민들간의 經濟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41] 그러나 이번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내독교역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독이 이번에 합의한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을 위한 條約」 제3장 제12절에 의하게 되면 내독교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1951년 9월 20일의 내독교역을 위한 베르린조약에서 합의를 본 사항은 이 貨幣統合 및 經濟統合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내독교역 계산은 끝이 났고, 「스윙(Swing)」정책의 최종 계산도 한다. 이 모든 채무는 독일마르크로써 계산을 한다.

2) 동서독의 원산지가 아닌 상품은 독일경제지역내에선 독일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3) 내독교역에 있어서 독일국경에 대한 감독은 완전히 철폐한다.[42]

그런가 하면 동서독은 동조약 제13조에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1) 자유스러운 國際通商을 형성하는데 있어 동독은 자유로운 세계교역, 특히 「가트」(GATT)에서 행하는 경제적 계산과 같은 것을 원칙으로 채택한다.

2) 동독의 經濟가 世界經濟에서도 發展할 수 있도록 서독은 자신들의 經驗을 提供한다.

3) 동독이 현재 國際貿易關係, 특히 「코메콘(COMECON)」국가들에 관한 조약상 의무에 대해서 신임 보호를 받도록, 화폐 및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독은 조약에 의한 책임을 완수한다

4) 외국무역을 대표하기 위해 동서독은 구주공동체의 관할권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책임완수를 한다.

또한 동서독간에 발전해오던 내독교역의 방식을 독일내의 지역경제로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東獨經濟政策의 基本原則을 동조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동독은 그의 經濟 내지는 財政政策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社會主義 計劃經濟原則을 撤廢한다.

2) 동독은 시장능력과 개인주도력을 확대, 새로운 노동장소를 개발하며 중소기업내지는 자유직업을 강화한다.

3) 동독은 그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코메콘」국가 및 「구주공동체」의 경제정책을 동화·발전시킨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經濟는 내독교역이라는 일종의 國家間의 通商關係가 아니라 앞으로는 독일내의 地域經濟로서 發展될 것이며, 구주통합을 위한 구주통합체의 법을 준수하고 또한 동독이 동구국가들에 대한 조약적인 책임과 의무를 통일된 독일이 계속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3. 分斷以前의 東獨 재산권의 분규실태

동서독이 이번에 平和的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동독은 원래 共產黨政權으로써 國民들의 自由와 財產을 인정하지 않는 不法的인 政策을 취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된 독일정부가 법적으로 동독국민들의 財產權을 보상, 원상복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합의를 보았는데, 그 중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1945년 5월 8일, 다시 말해서 히틀러 독일이 敗戰한 날부터 1949년 10월 7일, 즉 東獨共產黨政權이 樹立된 사이에 증여한 동독국민들의 財產은 蘇聯 占領軍에 의하여 행하여진 押

收이기 때문에 동독이나 서독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2) 동독이 수립된 1949년에서부터 1972년 사이에 押收된 동독 국민들의 財産과 土地 그리고 모든 損失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損害賠償을 하여 준다. 그러나 동독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전세방은 押收나 徵發을 당했어도 지금 당장 주택이나 전세방을 원주인에게 내줄 의무가 없다.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50년내에 원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3) 1972년 이후 동독정부에 의해서 압수된 독일주민들의 중소기업은 원주인에게 반환한다.[43]

다시 말해서 이번에 동독정부에 의해 徵用이나 押收가 되었던 모든 財産은 가능한 범위에서 원주인에게 返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에 不可能한 경우 정부가 이를 損害賠償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써 동독으로부터 強制追放을 당하거나 자유롭게 이주를 하였던 동독 원주인들의 財産權을 保護하여 주는 法的인 國家統一이 된 셈이다.[44]

4. 東獨의 金融과 企業의 再編成

이번에 동서독이 빠르게 통합된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의 國民經濟가 혼란에 빠지게 되거나, 동독국민들이 가능한 한 서독과 통합이 됨으로 하여 서독국민들과 같이 幸福한 經濟生活을 할 수 있기를 바랬던 소박한 希望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정부도 이러

한 東獨住民의 希望에 呼應하는 뜻에서 많은 정책적 努力을 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서독에서는 동독의 經濟改革을 위해서

1) 友好的인 稅金制度를 確立하였으며,

2) 동독의 市場經濟 建設에 협력을 하였으며,

3) 世界經濟 立場에서 產業制度를 強化시켰으며,

4) 東獨내 地方經濟를 強化시켰던 것이다.[45]

그런가 하면 1990년 5월에 동독 地方自治法을 改正하였는데, 그 地方自治法에는 동독도 所有權을 認定하고, 또한 토지 및 生產手段을 擴張하는 權利를 보장하고 勞動力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정의라는 입장에서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46] 그뿐만 아니라 서독은 동독의 企業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5년동안에 1,150억 마르크라는 통일기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서독정부는 서독기업가들이 동독에 투자하는 것을 強化시키기 위해서 1990년부터 1991년 6월까지는 12%, 그리고 1991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는 8%의 特別補助費를 支出하기로 되어 있다. 이 對東獨投資를 위한 特別構造 補助費의 총액은 70억마르크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47]

또한 서독정부는 서독기업이 동독기업에 100만마르크까지 投資하여 會社를 設立할 수 있는 自由를 보장하고 있다.[48] 그러므로써 동독에는 벌써 個人企業이 7만개가 건설되었다. 동서독정부는 合法投資를 委任하는 政策을 發表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1990년 1월 25일자로 발표한 「동독내 外國人과 같이 企業을 建設하고, 運用하는 事業의 規程」에 의하면,

1) 동독의 企業에 投資하기 위해서 20% 내지 49%의 資本投

資를 許可하며,

2) 동독에는 유한회사(GMBH)를 15만마르크 자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AG)도 75만마르크의 자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합병회사(OHG) 및 합자회사(KG)도 조직할 수 있다.

3) 동독내의 회사를 設立하기 위해서는 첫째 企業의 法的 形態를 증명하는 書類, 그다음은 同業者들의 인적사항, 세번째는 企業의 위치 및 종류, 네번째는 會社資本의 총액만을 밝히는 서류에다가 기업의 經濟的 活動相, 技術狀 및 經濟的 靑寫眞,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協定文, 다섯번째는 동독측 노동조합의 의사표명 등의 書類를 提出하게 되면 統一獨逸政府는 3개월내에 設立을 許可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49]

이럼으로써 현재 동독에는 서독이 600개의 合作會社를 設立하였으며, 그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소련, 미국, 덴마크등 많은 先進國家들이 서로 다투어 合作會社, 즉 「조인트 벤츄어(Joint－Ventre)」를 設立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독내의 金融 및 企業再編成은 통일독일정부가 희망하고 있는대로 잘 조직되고 있는데, 한가지 예만 든다면 현재 동독내에 있는 外國企業들의 자산이 150억마르크이며 이중 동독재산은 39%라는 것이다.[50]

Ⅵ. 東西獨 統一過程에서 露呈된 社會的 懸案問題

1. 東獨 避難民 및 失業者 救濟問題

독일민주공화국, 즉 동독은 물론 독일의 한 국가이지만 社會主義國家 진영에 있어서는 國民經濟가 가장 우수하다고 定評이 있던 나라이다. 사실 동독의 1인당 國民總生產은 13,000달러라는 점에서 우리가 中進國으로 알고 있는 우리 韓國의 國民總生產보다도 3배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은 이번에 經濟的 問題를 解決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게르만민족國家인 서독이 解決해 주기를 바라는 奇蹟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동독의 憲法 제24조에 의하면 「독일민주공화국의 國民들은 勞動을 할 權利가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동독의 國民들에게는 勞動을 할 수 있는 自由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독의 勞動者들이 연금을 타는 때가 되면 問題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에서는 모든 勤勞者에게는 形式的인 연금을 지불하는 반면에, 특별한 특권층에 있는 90만명의 동독국민들에게만은 정말 서방에서 말하고 있는 연금을 지불했다. 이 90만명이라는 동독의 국민들은 인테리, 技術者, 醫師, 教育家, 藝術家 및 國家公務員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의 年金計算法에 있어서는 階層賃金에 따라 決定하는 不法的인,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인 동독정부에게 忠誠을 맹세하는 特權層에게 年金을 지불하는 非民主的인 體制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동독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치에 반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네커」의 共產政權에 반대를 해서 서독으로 피난오는 사람이라든지 集團移住를 한 동독국민들이 서독국경을 넘은 즉시 서독정부는 이 피난민을

서독의 국민으로서 法的 保護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동독 피난민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좋자, 동독국민들 중에서는 經濟的 利益만을 바라고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集團離脫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서독정부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서독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동서독의 문제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된다고 結論을 내리고 피난민들에게 주던 法的인 保護를 중지하게 되었다. 물론 이같은 法的 保護 中止措置로 인해 진짜 政治的인 이유 때문에 동독을 不可不 떠나야만 하던 동독국민들에게는 많은 法的인 문제가 發生하였지만 이런 문제는 동서독이 통일됨으로써 자연히 解決되고 말았다.

이번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社會的인 問題가 된 동독의 失業者에 대해서는 서독정부가 解決해주어야 할 立場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독이 그간 社會主義計劃經濟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동독의 經濟가 正常的인 發展을 못함으로써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社會主義計劃經濟의 특징인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能力을 발휘하는 일터가 아니라 勞動時間만 채우는 勞動을 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原則的으로 게으른데다, 국가정책에 의해서만 집중적인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동독의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發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럼으로써 동독에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는데, 예를 든다면 금년 5월말에 벌써 10만명이라는 실업자가 생긴 것이다.[51]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정부는 통일이 되기전에 화폐 및 經濟統合을 斷行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날로써 발효된 동서독간의 「貨幣, 經濟 그리고 사회통합의 조약」, 제3장 經濟統合規定과 제4장 社會統合規定에 의하면 東獨勞

動者들이 失業者가 될 可能性이 있으면 우선은 다른 직업을 가르치고 또한 再教育을 시켜 다시 노동을 시킨다는 政策을 確定시켜 놓았다.[52] 특히 7월 2일날자로써 발효된 「노동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적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

1) 동독의 失業者들은 다른 技術을 習得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을 통하여 生活費를 支拂받으며

2) 어느 기업에서 이런 技術習得教育을 시키는 事業에 加擔하면 서독정부로부터 1991년까지 補助費를 支拂한다.

3) 동독정부도 勞動者들에게 再教育을 시키며, 또한 어느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短縮勞動賃金을 1991년 6월 30일까지 支給함으로써 해직을 중지시킬 것이며,

4) 새로운 職場을 창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專門委員을 서독정부가 100%의 賃金을 支拂하면서 組織한다.[53]

그런가 하면 통일독일의 「해직금지법」이 있는데, 이 해직금지법에서는 1) 임신한 여자, 2) 3살이하의 아이가 있고 남편이 없는 여자노동자, 3) 어머니나 여자노동자들의 주말휴가, 4) 아이가 병이나고 보호자가 없는 여자노동자들에게 임시휴가를 주는 특별한 조치의 법도 있는 것이다.[54]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독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노동자가 어느 기업에서 실직이 되거나 다른 직업이 생겨서 직장을 옮길 때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화 시키는가 하면, 기업대표가 不法的으로 임금지불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도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55]

이렇게 여러가지 法을 통해서 동독의 失業者를 救濟하기 위하여 노

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10만의 失業者중에서 현재 7만명이 社會保障費로써 495마르크씩 받는가 하면 동서독간의 合意에 의해 獨逸勞動組合에서도 社會保障費를 支拂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해서 동독의 「실업자」들은 短縮勞動을 통해서 한 企業 또는 공장에서 아직까지 재직하고 있는가 하면 서독정부가 주는 失業者 補助費로써 生計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水準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 失業者問題도 서독에 있는 失業者와 똑같은 法的 保護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東獨人에 대한 社會保障 認定問題

동서독이 이번에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동독국민들에 대한 社會保障問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에서는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에 관한 條約」에서 분명하게 동독국민들에 대한 社會保障問題를 규정하고 있는데,[56] 예를 들어서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에 관한 조약」 제17조에 의하면 "동독정부도 勤勞者들의 團結權, 賃金率自治, 勞動鬪爭權, 經營權, 企業自決權 및 解任保護權을 서독기업 및 근로자들과 같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약 제18조를 보게 되면 동독도 서독과 같은 社會保障制度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8조 제1항을 보면 "年金, 健康保險, 事故保險, 失業者保險은 통일된 독일국가의 감시하에도 公共적인 自治機關을 통하여 運營이 되며, 이런 保險은 會費에 의한 財政으로 運營이 되는데, 이 會費는 加入者가 1/2 그리고 企業主가 1/2을 出資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양독간이 체결한 「貨幣, 經濟 그리고 社會統合에 관한 조약」 제20조에 의하게 되면 동독국가도 年金保險을 支拂을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든다면,

1) 동독은 서독의 年金保險法과 같은 法的 措置를 취한다.

2) 동독노동자가 45년 노동을 하였을 경우에, 그 노동자의 평균월급의 70%를 연금으로 한다.

3) 年金은 勤勞勞動者들의 순수임금과 월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4) 동독국민들은 자유스럽게 추가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

5) 1950년 5월 18일 이후 주거지를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긴 동독국민들은 아직까지 연금보험이 있는 곳에서 연금을 타게 된다.[57]

더욱이 이번 서독정부는 동독의 늙은이들과 勤務不可能者에 대해서 年金을 많이 올렸는데, 이런 特別年金을 위해서 서독정부는 290만마르크를 支拂한다는 것이다. 서독정부는 동독국민들의 年金을 위해서 매년 45억마르크를 支拂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260만 동독국민들에게 年金通知書가 갔다. 이와같이 동서독의 통일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정부가 동독국민들을 위해서 民族的인 犧牲 내지는 民族的인 協力政策을 취해왔고, 그에 따라 동독국민들이 동서독의 통일을 열렬히 환영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3. 各種 社會團體의 統廢合에 따른 問題

이번 동서독의 통일이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합이었기 때문에 모든 社會團體는 서독의 基本法에 따라서 조직이 되고 解散이 되는 것이다.[58] 그런데 서독기본법 제8조에 의하게 되면 독일에서는 결사(結社)의 자유가 보장이 되나, 基本法 제1조에 의해 「人權」과 「평화와 정의」를 尊重하는 團體여야만 한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며 연방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社會團體는 民主的인 社會團體만이 조직을 허가받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서독에 있는 「독일공산당」(KPD)이 한때는 서독연방정부로부터 조직을 불허받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공산당이 革命을 主張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앞으로 독일내에 있어서 모든 社會團體는 民主的인 目的을 위해서 民主的인 方法으로 組織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 동서독통일에 있어서 동독기관중에서 共產革命을 主張하는 어떠한 團體도 계속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동독의 「청년공산당」 또는 대학교의 「사회주의학생동맹」은 자연히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4. 東獨人의 西獨 就業과 東獨大學生의 西獨 留學問題

이번에 동서독의 통일이 그렇게 빨리 된 이유중에는 동독의 경제가 파탄에 빠짐으로써 동독국민들이 不安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동독의 住民中에서는 經濟的 可能性이 동독보다 많은 서독으로 集團移住한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이런 經濟的 利益만을 위해서 서독을 찾아온 동독국민들에게는 法的인 措置로써 아무런 惠澤도 주지 않는 政策을 취했는데, 이는 동서독이 통일되어서 잘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經濟發展에 參與할 때 獨逸經濟가 전지역에서 平均的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국민들중에서 經濟的 惠澤만을 위해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중에서 다시금 동독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와같이 동독국민들의 서독에서의 就業問題는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동독이나 서독정부에서는 이것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장려하는 政策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이 이번에 민주주의국가로써 통일됨으로써 동독내 교육에는 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의 동독교육이 「호네커」共產政策의 지지나 社會主義 槪念을 강조하는, 즉 學問的인 大學이나 敎育이 아니라 政治的인 대학과 교육이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겠다.[59]

그럼으로써 동독의 교수들은 통일이 됨에 따라 양심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國家學이나 法學을 강의하던 교수들은 자신의 專功科目을 강의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생긴 것이다. 또한 동독대학에서 法學, 經濟學, 歷史學, 哲學, 政治學을 맡은 學者들은 계속 동독의 共產主義式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60]

그래서 「西獨總長會議」에서는 동독대학들을 다시 새로운 學問의 전당으로 개발시킴으로써 서구적인 대학으로 再組織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으며, 특히 「뮌헨대학교 정치학연구소」에서는 모든 동독교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던 것이다.[61]

그런가 하면 서독정부는 서독대학교에서 은퇴한 교수들에게 동독대학

교에 가서 經營學, 經濟學, 法學 그리고 醫學등의 學科에 대해서 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대아대(DAAD)」 서독장학회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것은 동독의 학자들에게 奬學金을 지불함으로써 서독대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되었는데, 금년만 해도 330명이라는 동독학자가 서독대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62]

그런가 하면 동독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서독대학교에 유학하기를 希望하는데, 서독정부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入學을 원하는 학생중에 입학에 制限이 없는 학과를 申請하는 경우에 동독의 고등학교성적표 내지 卒業證書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法措置를 취해준 것이다.[63]

그뿐만 아니라 동독학생들의 서독유학을 재정적으로 원조를 해주기 위해서 서독연방정부는 1,800만마르크, 그리고 서독의 주정부들은 1,700만 마르크를 장학금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989년에만 하더라도 서독대학교에 유학을 온 동독의 학생수가 60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5,000~1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64] 이런 뜻에서 「서독교육장려장학금」은 동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서독대학교로 유학오기를 원하는 학생들, 약4만 5천명까지 장학금을 支拂하기로 하였던 것이다.[65] 이렇게 서독이 동독대학교나 동독의 학생들이 서독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유는 하루속히 동독의 교육제도도 완전히 독일의 전통적인 「아카데미적인 자유(Akademisch Freiheit)」, 즉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는 독일식 고등교육기관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동서독의 대학교가 평준화되는 것은 불과 1~2년내의 문제라 하겠다.

Ⅶ. 結論：獨逸統一問題와 韓半島統一問題와의 比較

이번에 동서독은 통일이 되었다. 그런데 동서독의 통일은 國際政治的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게르만민족의 過去때문에 再統一이라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하다고 믿고 또한 자위를 하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에게 다시 한번 우리강토의 분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왜냐하면 한반도문제는 동서독문제와 비교해 볼 때, 解決可能性이 많다고 믿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7천만 韓民族은 韓半島 問題解決이 不可能한 것인가를 반성하고, 또한 硏究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良心的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오직 韓民族間의 政治經濟的인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南北韓政府의 軍事的인 對立이 韓民族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核戰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核戰爭이라는 것은 우리 韓民族과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問題를 軍事的 問題로 보는 이유는 南北韓이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政策에서 기인하고 있다. 실은 양쪽이 자기네들은 平和政策을 推進하고 있는데 상대쪽에서는 軍事的인 威脅을 가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支配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欺瞞하기 위한 政策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이번에 北韓訪問을 통해서 北韓이 南侵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한 예로서 김일성 자신도 국방비가 하도

과중하여 經濟政策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고백을 재미교포 교수에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인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 金日成政權의 改革 내지는 開放政治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 「고르바쵸프」대통령은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壓力을 가하고 있는데 그 압력중에는 김일성의 과거사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人身攻擊도 있으며, 특히 북한에게 소련은 6.25動亂 당시 協調를 해준 軍事援助에 대한 댓가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國民經濟가 파탄에 빠지고 있는 북한정부로써는 할 수 없어서 북한 청장년 20만명을 勞動者로 소련 시베리아밀림으로 보내어 木材採伐을 하는 노예와 같은 重勞動을 시킴으로써 소련이 원하고 있는 戰爭損害賠償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軍事的인 對立關係로 70만이라는 막대한 현역군인을 유지하려는 政策때문에 남자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다시 말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軍에 입대함으로써 국방의무가 시작되는데, 이 軍服務는 만 28세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후에 國土防衛라는 의무때문에 대학교육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北韓의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대학교육을 받게 되어 24세때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신혼가족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知的 能力이 남성들보다 대학교육을 통하여 우수하여 졌기 때문에 北韓社會는 韓民族의 傳統的인 父系社會가 아니라 母系社會가 됨으로써 發生되는 問題가 현재 北韓政府가 解決해야만 할 가장 급한 社會的 問題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北韓의 南侵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韓半島問題는 모든 면에서 政治, 經濟的인 問題인데 이 問題

를 解決하는 政策에 있어서 우리 韓國政府가 북한에 대해서 高姿勢를 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南北對話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政府가 어떤 理由에서 高姿勢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經濟的인 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 달함으로써 1,000여불의 소득수준에 불과한 北韓經濟보다 발전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經濟發展을 우리가 5.16軍事革命 당시의 經濟水準에 比較하게 되면, 눈부시게 發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韓國經濟는 輸出主導型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오일쇼크(oil-shock)」와 같은 國際的인 經濟與件에 따라서 우리 韓國經濟는 지금도 安定을 취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北韓住民들에게 經濟的인 이유에서 고자세를 취할 必要性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가 하면 韓國의 政治的 問題를 分解한다면 韓國의 政治는 지금 이 순간도 地域感情問題 등으로 인해 아주 不安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런 政治·經濟的인 이유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고자세를 취할 資格이 없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國際的인 壓力과 國內政治的인 不安要素 때문에 南北韓政府는 韓半島問題를 解決하여야만 할 처지에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南北韓政府는 韓半島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政策에 몰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韓半島가 分斷이 된지도 半世紀가 됨으로써 南北韓 政府는 政治·經濟·社會的인 問題에 있어서 너무나 固着化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北韓에서 開催된 汎民族大會 당시 北韓側의 準備委員長이었던 「윤기복」선생이 基調演說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南北韓政府는 暫定的으로 지금의 現實대로 南北韓政府가 共存을

하면서 國際的으로 協力할 수 있는 길을 擴大해 나가는 것이 韓半島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最適의 方法"이라고 하겠다.[66]

다시 말해서 韓國이나 北韓의 立場에서 요즘의 國際情勢라든지 國內政治的 狀況을 보아서는 全體國民들의 지지를 받는 어떠한 통일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남북한 정부는 남북한간에 현존하고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며 또한 가능하다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또한 상호 신뢰을 두텁게 한다면 어느 땐가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동서독통일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를 하였는가를 우리 한국정부나 북한정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솔직히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호네커」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 「코르바쵸프」대통령의 내정간섭에 의해 「호네커」 당서기장이 실각하게 됨에 따라 「고르바쵸프」대통령의 대독일우호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호네커」 정권이 몰락한 후 동독의 국민경제가 파탄을 맞음으로써 동독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도 불안하게 되었을때 서독이 동독에게 경제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주요 動因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가능하다면 대북한 경제원조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한국정부를 신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때 한반도문제는 해결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소련산 석유가스를 북한을 통해 파이프로써 한국까지 가져온다는 그 정

책을 북한이 지지한 것과 같이 한국은 대북한 경제협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이나 북한정부는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협력을 하였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위한 협정이나 조약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동서독정부간의 분쟁문제로 남겨두지를 않고 통일된 후에 해결하도록 연기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는 게르만민족적인 지식과 지혜를 우리 남북한정부는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나 북한정부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서로 회담을 중지하는 것은 외교적인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통일정책에 있어 보여준 장점을 우리 한국이나 북한정부도 그대로 모방을 하는 태도로써 회담에 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에 남북한 정부간의 유엔가입문제로써 다투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에서는 주어진 국제조건이 유리한 것으로써 오해를 하고는 단독유엔가입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끝난 직후 강영훈총리가 문화방송(MBC)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유엔가입을 하는 것을 45년을 기다렸는데 1년 빨리 하거나 1년 늦게 가입하는 것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문제를 북한과 타협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단독가입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정치적인 고자세같지만, 동서독의 정치가들이 볼 때는 불성실한 태도로 보일 것이다.

물론 북한이 종래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한국만이라도 유엔에 단독가입할 수가 있지만, 남북대화에 있어서 어떤 분쟁문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가 통일한 후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고차원적인 외교의 방법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정치가들은 동서독이 통일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동서독 정치가들이 보여준 고차원적인 방법도 습득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동서독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분단국가의 문제는 분단국가 자신이 해결하여야만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런 분단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나라의 정치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족적인 양심과 충실한 지식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재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전세계가 믿고 있던 동서독을 통일하기 위해서 보여준 동서독 정치가들의 현명한 정치방법이 우리 한국 내지는 북한의 현 집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자신의 집권연장을 생각하지 말고 민족적·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실행하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Menzel, E. : Potsdam und die deutsche Frage, Kőln 1970. pp. 123~146
2.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ast Berlin 1975 참조
3. Kim Youn-Soo : Korea and Germany-The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Divided Nations, Kiel 1978, pp. 104~123
4. Sontheimer, K. : Grundzűge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űnchen 1971, p. 212
5. Brandt, W. : Friedenpolitik in Europa, Frankrurt/M, 1968과 Brandt, W. : Der Welle zum Frieden, Hamburg 1971 참조.
6. Die Welt(Bonn), 1990년 2월 12일
7. Berliner Zeitung(East Berlin), 1990년 2월 13일
8. 도이췌 벨레(Deutsche Welle)는 독일말로 독일사람들의 파도란 뜻인데 그 의미는 게르만민족의 특성으로서 독일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파도처럼 다같이 일어난다는 행위를 표현하는 어휘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후레센 벨레」(Fressen Welle), 즉 전후 독일의 배가 고프던 사람들이 「처먹는다」는 단어였고, 요즘에는 성적 향락을 비판하는 「섹스 벨레」(Sex Welle)란 말이 유행중이다.
9. Der Spiegel(Hamburg), 1990년 2월 19일
10. 상동, 1990년 5월 21일
11. 상동, 1990년 6월 25일과 Die Welt(Bonn), 1990년 7월 16일

12. Kim Youn-Soo(Ed.) : Peace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both Korean Government, Kiel-Seoul 1987, pp 110~112 참조

13. 동서독정부간의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조약」(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의 전문은 Presse-und Informa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 Bulletin(Bonn), Nr, 104/ S.877(1990년 9월 6일자) 참조

14. 동서독정부와 4대 연합국간에 체결된 「독일통일의 최종조약」(Vertrag über die abschliess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2+4 Vertrag)의 전문은 Frankfurter Rundschau(Frankfurt/M), 1990년 9월 13일, p.16 참조

15. 서독과 소련이 체결한 「선린, 우호 그리고 협력에 관한 조약」(Der Vertrag über gute Nachbarschaft, Partnerschaft und Zusammenarbeit)의 전문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9월 14일, p.7 참조

16. 이 부라췌스라프·다시취에프(W. Daschitschew)교수의 「소련의 독일정책비망록」은 Der Spiegel(Hamburg), No 6/1990, pp.142~158에 원문이 발표되었으니 참조

17. 폴랜드의 「오데르·나이세」선 국경에 대하여서는 Das Parliament (Bonn), 1990년 6월 22일, p.17 참조

18. 상동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2월 21일

19. Los Angeles Times(Los Angeles), 1990년 3월 2일과 Das Bild (Bonn), 1990년 3월 3일

2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19일

21. 독일통일의 최종조약문(주14 참조) 제3조 국방력 참조

22. 월리엄·파프 : 통독군사지위 「쿡안」이 현실적, 中央日報(서울), 1990년 5월 8일 참조

23.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25일과 27일

24. Kieler Nachrichten(Kiel), 1990년 6월 25일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0년 7월 17일

25. 독일통일의 최종조약문(주14 참조) 제5조 동독지역의 군사력 참조

26. 상동, 제7조 전승국 권리와 책임의 종결 참조

27. 동서독정부간의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조약」(주13 참조), 제10조 구주공동체의 권리 참조

2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7월 12일

29.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őln 1986, 참조

30.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조약」(주 13참조), 제1장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31. Die Welt(Bonn), 1990년 4월 15일

32.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5월 19일

33. Die Welt(Bonn), 1990년 6월 1일

34.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7일

35.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2일자와 1990년 10월 2일

36. 상동, 1990년 6월 19일과 7월 2일

37. Die Welt(Bonn), 1990년 6월 7일

38. Die Welt(Bonn), 1990년 4월 24일과 7월 1일

39. 동서독의 「화폐,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Vertrag űber die Schaffung einer Wǎhrungs-, Wirtschafts-und Sozialunion)원문은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 Bulletin (Bonn), No.63/S, 517, 1990년 5월 18일 참조

40. 동서독의 「화폐,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주39 참조) 부록 2호, 제6조 참조.

41. Bundesministerium fűr innerdeutsche Beziehungen(Ed.) : Zahlenspiegel-Bundesrepublik Deutschland/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Ein Vergleich, Bonn 1985, pp.112~125

42. 동서독의 「화폐,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 (주39 참조) 제3장 제12조 내독교역 참조

43.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19일

44. Die Welt(Bonn), 1990년 5월 31일

45. Die Welt(Bonn), 1990년 5월 18일

46. 동독의 지방자치법에 대하여서는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5월 19일을 참조

47. 상동, 1990년 5월 17일

48. The Financial Times(London), 1990년 2월 28일

49. 동독의 「외국인과 같이 기업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사업의 규정」 (Verordnung űber die Grűndung und Tǎ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ǎ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전문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2월 2일 참조

50. Presseschau－Ost(Wien), 1990년 4월 4일

51. Frankfurter Rundschau(Frankfurt/M), 1990년 5월 17일

52.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6월 11일

53. 동독노동법(Arbeiterecht der DDR)의 전문은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4월 18일을 참조

54. Frankfurter Allgem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5월 29일

55.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6월 11일

56. 동서독의 「화폐,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주39 참조)의 원문 참조

57. 상동, 제4장 제 20조 연금을 참조

58. Beck－Texte :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űnchen 1972, pp.29～31

59.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4월 2일

60. Die Welt(Bonn), 1990년 5월 28일

6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rankfurt/M), 1990년 6월 27일

62. Die Welt(Bonn), 1990년 6월 5일

63. Frankfurter Rundschau(Frankfurt/M), 1990년 4월 28일

64. Handelsblatt(Dűsseldorf), 1990년 5월 11～12일

65. Die Welt(Bonn), 1990년 3월 27일

66. 노동신문(평양), 1990년 8월 16일

附　　録

1. 東西獨關係　主要日誌 *153*

2. 東西獨　統一方案 *157*

3. 東西獨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創設에　관한　條約 *163*

4. 獨逸統合條約 *193*

5. 獨逸問題에　관한　國際的　協議內容 *236*

6. 獨・蘇　善隣友好協力　條約 *245*

7. 全유럽安保協力會議　頂上會談　結果 *254*

1. 東・西獨關係 主要日誌

○ 70. 3. 19 브란트・슈토프 첫 頂上會談 開催

○ 70. 4. 29 東・西獨, 郵便協定 合意(電話 및 테렉스線 擴大 架設)

○ 70. 5. 21 브란트・슈토프 2次 頂上會談 開催

○ 70. 8. 12 獨・蘇關係 正常化條約 締結

○ 70. 12. 7 西獨・폴란드條約 締結

○ 70. 1. 31 東・西 베를린市, 地域間의 電話通話 開始

○ 70. 9. 3 美・英・佛・蘇, 베를린에 관한 4大國 協定

○ 70. 12. 17 東・西獨, 通行協定 署名

○ 70. 5. 26 東・西獨, 交通條約 締結

○ 70. 12. 21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

○ 70. 1. 31 東・西獨間, 國境線委員會 設置

○ 70. 9. 18 東・西獨, UN 同時加入

○ 74. 3. 14 東・西獨, 常駐代表部 設置 議定書 署名

○ 74. 4. 25 東・西獨, 保健協定 締結

○ 74. 5. 8 東・西獨, 定期的 體育交流 合意

○ 74. 10. 7 東獨, 新憲法에서 「獨逸民族」槪念 削除

○ 75. 7. 30－8.1 슈미트・호네커 頂上會談 開催(헬싱키)

○ 76. 3. 30 兩獨間 郵便・通信協定 體系

○ 81. 12. 11－13 슈미트・호네커 頂上會談 開催(동베를린)

○ 84. 2. 13 콜・호네커 頂上會談 開催(안드로포프 장례식)

○ 84. 9. 4 호네커, 西獨訪問 延期

○ 85. 3. 12 콜·호네커 頂上會談 開催(체르넨코 장례식)

○ 86. 5. 6 東·西獨, 文化協定 締結

○ 87. 9. 7－11 콜·호네커 頂上會談 開催(호네커 西獨訪問)
(環境保護, 科學技術, 原子力 協定 締結)

○ 89. 8. 8 東베를린의 西獨代表部에 移住希望者 몰려 閉鎖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西獨大使館도 閉鎖)

○ 89. 9. 19 反政府團體 노이에스 포름(「新廣場」)發足

○ 89. 10. 18 호네커 公職辭退, 크렌츠 書記長 就任

○ 89. 11. 7 東獨 內閣 總辭退

○ 89. 11. 8 東獨共產黨 政治局員 總辭退, 改革派 모드로브總理 指名

○ 89. 11. 9 베를린障壁등 國境開放 및 海外旅行 全面自由化 發表

○ 89. 11. 16 東西聯政, 非共產黨 대거 參與
(4개 群小政黨, 27개 閣僚職中 11個職 入閣)

○ 89. 11. 28 콜總理, 3段階 10個項 統獨案 提示

○ 89. 12. 3 東獨共產黨, 크렌츠書記長 포함한 政治局員·中央委員 集團辭退

○ 89. 12. 18 東獨共產黨, 民主社會主義黨으로 黨名 變更·臨時 黨綱領 採擇

○ 89. 12. 19 콜·모드로브 頂上會談 開催(드레스덴)

○ 89. 12. 22 東獨政府, 브란덴부르그문 開放

○ 90. 2. 1 모드로브總理, 4段階 中立化 聯邦制 統一方案 提案

○ 90. 2. 3 콜·모드로브總理, 非公式 頂上會談 開催

(東獨人 移住 防止위한 經濟援助 合意)

○ 90. 2. 13－14 콜・모드로브, 頂上會談 開催(본)

○ 90. 2. 20 모드로브總理, 「2+4會談」 및 유럽의 安全・協力에 관한 35個國 會談 保求

○ 90. 2. 20 東・西獨 通貨單一化 會談(본)

○ 90. 3. 9 1차 東・西獨 統合 實務會談(동베를린)

○ 90. 3. 14 「2+4 實務會談」 始作(본)

○ 90. 3. 18 東獨 總選

○ 90. 4. 5 西獨政府, 東・西獨 經濟・貨幣統合 方案 마련

○ 90. 4. 12 東獨政府, 聯立政權 合意書 채택 및 迅速한 統一(西獨에의 合併)合意

○ 90. 4. 18 東・西獨 聯合위한 兩國의 각 部處 長官들간 會談 개시

○ 90. 4. 23 콜總理, 兩獨貨幣統合 比率 1：1原則 決定

○ 90. 4. 24 東・西獨 頂上會談(본)

○ 90. 5. 5 「2+4會談」① (본)

○ 90. 5. 14 東・西獨 頂上會談 (동베를린)

○ 90. 5. 16 西獨, 1천백 150억마르크 규모의 統一基金 造成着手

○ 90. 5. 18 兩獨 財務長官, 「東・西獨 通貨・經濟・社會統合條約」調印 (본)

○ 90. 6. 3 美・蘇 頂上會談 (워싱턴)

○ 90. 6. 22 「2+4會談」② (동베를린)

○ 90. 7. 1 「東・西獨 通貨・經濟・社會統合條約」 發效

○	90. 7. 6	東・西獨 대표단 40명 會談 (동베를린)
○	90. 7. 17	「2+4會談」 ③ (파리)
○	90. 8. 11	東・西獨 自民黨 合黨
○	90. 8. 25	東獨駐屯 蘇聯軍 撤收開始
○	90. 8. 31	兩獨 統一條約 調印
○	90. 9. 12	「2+4會談」④ (모스크바)
○	90. 9. 13	獨・蘇外相, 兩國間 相互不可侵, 經濟協力 擴大등을 골자로 한 「善隣友好協力協定」假調印
○	90. 9. 24	東獨, 바르샤바조약기구(WTO)탈퇴
○	90. 9. 27	東・西獨 社民黨 合黨
○	90. 10. 1	東・西獨 基民黨 및 基社黨 合黨
○	90. 10. 3	東獨 5個州, 西獨 編入(西獨基本法23條)
○	90. 10. 4	全獨議會 開院, 콜總理 對內外 施政方針 演說
○	90. 10. 5	콜總理의 過渡 統一政府(閣僚 : 西獨 18, 東獨 5)出帆
○	90. 10. 12	獨・蘇間 「東獨地域 駐屯 蘇聯軍 地位變更에 관한 協定」締結(94년말까지 東獨駐屯 蘇聯軍 撤收 完了)
○	90. 10. 14	東獨地域 5個州 議會選擧
○	90. 10. 17	佛・獨, 合同旅團(4,200명)創設
○	90. 11. 19	CSCE 34개국 頂上會談
○	90. 12. 2	全獨總選

2. 東・西獨 統一方案

가. 西獨 콜總理, 「3段階 10個項」 統獨案 提示

〈內 容〉

○ 西獨 콜總理는 1989년 11월 28일 東・西獨 再統一을 위한 國家聯合 方式의 「3段階 10個項」의 統獨案을 發表하였음. 이 方案의 主要內容은,

- 제1段階 : 東獨에서 自由選擧 實施
- 제2段階 : 東西獨間에 經濟, 環境, 기타문제에 관한 協力 緊密化, 常設的인 「政府委員會」 「專門委員會」 및 「議員聯盟」등을 設置 (國家聯合)
- 제3段階 : 國家聯合을 發展시켜 聯邦制로 統一

10個項의 主要內容

① 醫療 및 財政部門을 포함한 多角的 支援을 提供

② 通信網 擴充 및 高速電鐵・車等 環境改善을 위한 支援을 提供

③ 東獨共產黨은 政治犯 釋放 및 市場經濟 導入에 박차를 가할 것

④ 最近 모토로브總理의 「條約共同體」 提議를 受諾

⑤ 聯合構造를 形成, 이를 발판으로 議會共同體를 包含하는 兩獨諮問委를 構成해 政治問題 등도 論議

⑥ 統獨問題는 유럽統合 및 東西關係 改善과 連繫시켜 實現

⑦ EC는 東獨을 포함한 東유럽國家에 대한 門戶를 開放하고 東獨과 貿易協力協定을 締結

⑧ 유럽安保 協力會議(CSCE)를 環境保存 또는 東·西貿易協力 促進機構 등으로 性格을 轉換

⑨ 軍縮에 박차를 가할 것

⑩ 東獨 및 유럽安定 現實을 위한 持續的 努力

〈關聯國 反應〉

① 東獨

○ 나토와 바르샤바가 수년안에 해체된다면 동서독이 궁극적으로 연방형태의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에콘 크렌츠 書記長, 11, 25)

○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독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東獨政府 代辯人, 11. 28)

② 美國

○ 콜수상의 제안은 통일을 바라는 서독인들의 깊은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콜총리가 자신의 구상을 제안한 것은 우려될 만한 일이나 통일을 위한 청사진은 아니며, 일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일괄적 접근이다.

(마거릿 터트와일러 國務省 代辯人, 11. 28)

③ 蘇聯

○ 우리는 최근에 진행중인 동독의 개혁을 민족주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규정하려는 일련의 시도로 알고 있으며, 콜총리는 동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다.

(유리 그레미츠키크 外務省 代辯人, 11. 29)

④ NATO

○ 독일을 궁극적으로 통일하자는 콜총리는 제안은 유럽 장래에 대한 나토측의 전망과 부합하는 것이다.

(만프레드 뵈르너 나토 事務總長, 11. 28)

〈評 價〉

○ 今番 콜總理의 統一方案은 時期的으로 베를린障壁 開放以後 周邊強大國에게 公式的으로 統獨問題를 呼訴한다는 점에서 注目을 끌고 있음. 즉,

- 미테랑 大統領의 콜總理를 앞지른 東獨訪問(12월중) 및 EC 頂上會談 召集 등 強大國의 獨逸 分斷固着化를 豫防하기 위한 先制提議
- 12월 2-3일간 開催되는 美·蘇頂上會談에서 論議될 獨逸問題의 解決方案을 提供하고 西獨總理의 統獨意志를 內外에 闡明
- 12월 14-15일로 내정된 東獨共產黨 特別全黨大會에서 懸案으로 부각될 統獨問題에 대해 西獨當局의 公式方案 提示.

○ 결국 「獨逸國家聯合」을 통한 「獨逸聯邦」 統一을 推進하겠다는 금번 方案 發表는 90년 12월 西獨總選을 겨냥한 콜總理의 對內用 政治

戰略도 內包되어 있는데, 어쨌든 東獨과 이미 「合意」했을 可能性도 엿보여, 향후 周邊國들의 拒否感과 어떻게 調和를 이루어 나갈지 注目됨.

나. 모드로브東獨總理, 「聯邦制 中立化 統獨4段階 方案」發表

〈概要〉

○ 最近 獨逸統一의 不可避性과 時流의 大勢를 간파한 蘇聯 및 東獨의 指導部에서 東·西獨 統一의 可能性을 公式 認定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침 蘇聯을 訪問하고 돌아온 한스·모드로브 東獨總理는 1990년 2월 1일 記者會見을 통해 획기적인 「聯邦制 統獨 4段階 方案」을 發表하였음.

○ 今番 「4段階 統獨方案」은 1989년 11월 28일 발표한 콜 西獨總理의 「3段階 10個項」 統獨案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듯한 내용인데 고르바쵸프·모드로브 會談(1월 30일)을 통해 이미 蘇側의 同意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르바쵸프의 「統獨 不可避性」 公式認定과 東獨總理의 구체적 統獨方案 提案에 따라 바야흐로 統獨論議는 종래의 「타부」를 깨고, 급속히 進行될 전망임.

※ 고르바쵸프의 「統獨 不可避性」 受容要旨(90. 1. 30)

○ "이제 시간자체가 통독의 과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통독이라는 중대사가 거리에서 결정돼서는 안되며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4段階 統獨方案」 要旨〉

①段階 : 양독은 통일연방국가 결성을 위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각각 탈퇴, 군사적 중립을 취한다.

②段階 : 양독은 경제·화폐·교통망 및 법률제도의 연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③段階 : 의회 위원회와 지역의회, 특정 정책분야의 실행을 위한 집행기구 등 공동기구들을 설치한다.

④段階 : 설립된 공동기구에 양국의 주권을 이양한다. 양측은 동시 선거를 통해 단일의회를 구성, 여기서 단일헌법을 제정하며 베를린 단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연방형태의 독일 통일국가를 창출한다.

〈西獨側의 反應〉

○ 統獨論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유럽중심부에 위치할 統一獨逸이 特別한 地位를 갖거나 孤立돼서는 안될 것이다.

(콜 總理, 2. 3)

○ 西獨은 獨逸再統一을 위한 支持勢力을 구하고 있으나 모드로브 東獨總理의 中立化 統一案 提議는 西方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겐셔 外相, 2. 2)

〈評價〉

○ 今番 「4段階 聯邦制 統一方案」 발표는,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겨진 東獨總選을 겨냥한 東獨 社會主義統一黨(SED)側의 選擧 戰略이라는 단순한 評價도 있으나, 그보다는 1989年 모드로브總理의 「條約共同體」提議, 이를 수용한 콜總理의 「3段階 10個項」發表, 東獨內 統一熱氣 분출과 過渡政局의 혼미, 고르바쵸프의 統獨 不可避性 受容宣言, 今番 「4段階 方案」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發展的 趨勢가

정확한 手順에 따라 進行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今番 提案을 콜總理의 「3段階 10個項」統獨方案과 比較해 볼 때, 段階的 統一方法이라는 점과 「條約共同體와 國家聯合을 통한 聯邦制 統一」이라는 基本骨格은 대동소이함.

그러나 「兩獨의 軍事的 中立」이라는 東獨側의 전제조건이 西獨側의 입장과 아직 다르고, 또한 지난번 콜 總理의 統獨案이 「條約共同體」에 기초한 國家聯合 이후의 聯邦制 實現方法이 모호했던데 비해, 금번 提案은 聯邦制 統一具現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明示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獨逸의 「中立化 統一方案」은 이미 지난 1952년 스탈린에 의해 提示되어, 당시 아데나워 西獨總理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中立化」槪念은 「軍事的 中立」일뿐 統一獨逸의 政治的·經濟的 성격을 規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專門家들은 分析하고 있음. 東·西獨 統一問題는 앞으로 「外交軍事的 路線」과 「統一國家의 政治·經濟的 體制」라는 두가지 문제가 統一의 主要 關鍵이 될 것으로 보임.

3. 東西獨間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創設에 관한 條約

前 文

高位條約締結 兩側(이하 쌍방)은 1989年 가을 獨逸民主共和國(東獨·DDR)에서 平和的·民主的 革命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힘입어, 유럽平和秩序속에서 獨逸의 統一을 自由로이 조속히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環境에 대한 社會的 調整과 社會的 保障 그리고 사회적 責任을 遂件한 계속적인 經濟·社會發展의 基礎로서 社會的 市場經濟를 東獨에서도 導入하여 이를 통해 그들 住民의 삶의 條件·雇傭條件을 꾸준히 向上시키려는 共同의 念願에서,

統獨의 外的 側面은 佛蘭西·蘇聯·英國·美國 4大國과의 協議事項이라는 사실의 考慮下에 유럽統合에 대한 기여로서 西獨基本法 第23條에 의한 國家的 統一創出을 위한 最初의 중요한 巨步를 단행하려는 양측의 갈망에서 출발하여,

國家的 統一의 創出과 더불어, 東獨에 聯邦的 構造의 發展이 導入된다는 인식에서,

本條約의 規定들은 國家的 統一後에 유럽共同體法의 適用을 保障한다는 認識에서,

다음과 같은 規定으로서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創設에 대한 條約을 締結하는데 合意하였다.

第1章 總 則

第1條 條約의 客體

① 쌍방은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을 설립한다.

② 쌍방은 1990年 7月 1日부터 統一된 通貨領域을 지닌 通貨同盟, 다시말해 西獨마르크를 共同通貨로 하는 地域을 形成한다.

西獨聯邦銀行은 이 通貨領域의 發券銀行이자 紙幣發行銀行이 된다. 東獨마르크에 기초한 債權·債務는 이 條約의 기준에 따라 西獨마르크로 代替된다.

③ 經濟同盟의 기초는 쌍방에서 共通市場經濟秩序로서 社會的 市場經濟를 수용한다. 社會的 市場經濟秩序는 특히 私有財産制·競爭原理·자유로운 價格形成 그리고 원칙적으로 勞動·資本·財貨 및 用役의 완전한 自由移動을 통하여 決定되어진다. 이를 통해 私的權利者가 差別받지 않는 한, 經濟法來에서 公共機關 또는 他權利者의 참가를 위해 特別 私有財産形態가 法的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는 環境保護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④ 社會保障同盟은 通貨同盟 및 經濟同盟과 더불어 하나의 共同體를 형성한다. 이는 특히 社會的 市場經濟에 相應하는 勞動法秩序와 능력에 相應하는 公正性과 社會的 均衡原則에 의한 포괄적인 社會保障體制를 통해 결정되어진다.

第2條 基本原則

① 쌍방은 平和스럽고, 民主的이고, 聯邦主義的·法治國家的인 社會的

基本秩序를 승인한다. 이 條約上 또는 이 條約의 執行時에 발생하는 權利의 保障을 위해서 쌍방은 全通貨領域에서 특히 獨逸人의 契約의 自由·生業의 自由·居住의 自由·職業選擇의 自由·通行의 自由, 또한 勞動條件과 經濟條件의 保護와 增進을 위한 結社의 自由 그리고 附屬文書 Ⅸ(企業의 雇傭創出促進을 위한 民間投資家의 土地 및 生產手段의 取得方法)의 기준에 따라 不動產 및 生產手段에 있어서 私的 投資家의 所有權을 보장한다.

② 종래의 社會主義的인 社會國家秩序의 基礎에 관한 東獨憲法가운데 이에 抵觸되는 規定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第 3 條 法的 基礎

通貨同盟 設立과 財貨交換을 위해 附屬文書 Ⅰ(通貨同盟과 通貨交換에 대한 規則)에 合意된 規定이 적용된다. 通貨同盟 設立때까지 附屬文書 Ⅱ(東獨에서 適用되는 西獨의 法規)에 규정된 西獨의 法令이 東獨의 經濟同盟 및 社會保障同盟처럼 通貨·信用·貨幣制度의 領域에 發效되게 된다; 이에 의하면 本條約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은 附屬文書 Ⅱ의 基準에 따라 全通貨地域에서 그때마다의 意味로 해석된다.

獨逸聯邦銀行·信用制度에 대한 聯邦監督廳·保險制度에 대한 聯邦監督廳은 本條約과 이 法令에 따라 그들에게 속한 權能을 本條約과 이 法令에 따라 그들에게 속한 權能을 本條約의 全體效力範圍內에서 行使한다.

第 4 條 法的 調整

①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設立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東獨의 法調整을 위하여서는 本條約 第2條 1項에 明示된 基本原則과 共同議定書에서 合意된 指導原則이 적용된다. 여타 存續되는 法은 이 基本原則과 指導原則에 따라 解釋되고 適用되어 질 수 있다.

東獨은 通貨同盟 設立時까지 附屬文書 Ⅲ(東獨이 廢止 또는 改正할 法規)에 明示된 法規定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改正하고—條約 또는 附屬文書에 다른 時點이 確定되어지지 않는 한—附屬文書 Ⅳ(東獨이 새로이 公布할 法規)에 明示된 새로운 法規定을 公布한다.

② 西獨이 변경할 法規는 附屬文書 Ⅴ(西獨이 變更할 法規)에 모두 담겨져 있다. 東獨이 앞으로 노력하여야 할 규칙은 附屬文書 Ⅵ(東獨이 앞으로 努力하여야 할 法規)에 담겨져 있다.

③ 人事와 관련된 情報를 전달할시는 附屬文書 Ⅶ(本條約 實施를 위한 個人情報 傳達에 관한 原則)에 포함된 基本原則이 유효하다.

第5條 官廳間의 努力

쌍방 官廳은 本條約의 實施에 있어서 國內法에 준하여 官廳間에 共助를 한다. 第32條는 변함없다.

第6條 法的 保護

① 本條約 또는 本條約의 시행에 의해 保障된 權利가 公權力에 의해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의 길이 열려 있다. 다른 管轄權이 立證되어지지 않는 한 正常的인 法的 救濟方法이 주어진다.

② 東獨은 實効的·暫定的인 法保護를 포함하여 法院에서 法的 保護

를 보장한다. 公法的인 紛爭을 위해 어떤 特別法院에서 特別裁判部가 설치되어진다. 이러한 紛爭에 대한 管轄權은 특정의 地方法院과 地方法院支院에 집중된다.

③ 特別勞動法院 裁判管轄區域의 설치때까지 勞使關係에서 생긴 使用者와 근로자간의 法的 紛爭은 中立的인 仲裁法院에 의해 해결되며, 이 仲裁法院은 勞使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仲裁法院長은 중립적인 人士로 한다. 仲裁決定에 대항하여 國內法院이 授用되어질 수 있다.

④ 東獨은 自由 仲裁裁判을 私法分野에 허용한다.

第 7 條 仲裁法院

① 共同議定書와 附屬文書를 포함한 本條約의 解釋과 適用에 대한 紛爭은 쌍방 政府를 통해 協商方法으로 解決이 된다.

② 이 方式으로 紛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방은 이 紛爭을 仲裁法院의 決定에 부탁할 수 있다. 이 부탁은 本條約 第6條에 의거, 이 事件에 國內法院이 管轄權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허용된다.

③ 仲裁法院은 1명의 裁判長과 4명의 裁判官으로서 構成된다. 本條約 發效後 1個月內에 쌍방 各政府는 2사람의 正式裁判官과 2명의 代理裁判官을 各各 任命한다. 同期間內에 法院長과 法院長代理가 쌍방 政府간 合意로 임명된다. 上記 기간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任命은 EC法院의 裁判所長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仲裁法院 法官의 任期는 2年이다.

⑤ 仲裁法院의 裁判長과 裁判官은 그들의 職務를 外部指示를 받지 않고 獨立的이고 自由롭게 使用한다. 그들의 職務 開始前에 그들은 獨立的이고, 良心에 따라 그들 職務를 履行하고 諮問上의 祕密을 지켜야할 義務를 진다.

⑥ 仲裁法院의 소집과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은 附屬文書 Ⅷ(仲裁法院의 一般的 節次規定)에서 규정되고 있다.

第 8 條 合同政府委員會

쌍방은 合同政府委員會를 구성한다. 그들은 이 委員會에서 條約履行의 問題를 討論하고－필요한 範委內에서－필요한 意見一致를 導出한다. 第7條 1項의 紛爭의 解決도 이 委員會의 課題에 속한다.

第 9 條 條約改正

本條約 目的을 실현하기 위해 本條約의 改正 또는 補充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경우, 쌍방 政府간에 協議한다.

第 2 章 通貨同盟에 관한 規定

第 10 條 前提條件과 原則

① 쌍방은 通貨同盟의 설립에 의해 西獨마르크는 全通貨地域內에서 支給手段・淸算手段・價値保障手段이 된다.

이 目的을 위해 이 通貨의 유일한 發券銀行으로서 西獨聯邦銀行의 金融政策的인 責任은 오로지 西獨聯邦의 책임하에 있다.

② 通貨同盟의 長點이 有益하려면 東獨經濟를 위한 貨幣價値의 安定이 前提되며, 마찬가지로 西獨에서의 通貨安定性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쌍방은 通貨同盟의 全領域에서 어떠한 인플레이션 충격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동시에 東獨에서의 企業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는 通貨交換方式을 선택한다.

③ 西獨聯邦銀行은 通貨安定目的을 위해 그 自身의 責任下에－聯邦銀行法 第12條에 따라 쌍방 政府의 指示에 상관없이－全通貨地域에서 通貨流通과 信用調達을 聯邦銀行의 制度의 도입을 통해 規律한다.

④ 金融政策의 前提가 되는 것은 東獨이 市場經濟的 金融制度를 수립하는 것이다. 私經濟原則에 따라 自由競爭下의 銀行의 營業시스템, 자유로운 金融市場 및 資本市場 그리고 金融市場에서의 자유로운 金利形成 등이 이에 속한다.

⑤ 上記 ①~④항에서 나타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은 附屬文書 Ⅰ에 明示된 規定들의 상세한 基準에 따라 通貨同盟에 관한 다음과 같은 原則에 合意했다.

- 1990年 7月 1日부터 西獨마르크는 東獨에서 通貨로서 導入된다. 西獨聯邦銀行이 發行한 西獨마르크 紙幣와 西獨이 발행한 마르크(DM) 또는 페니(Pfennig)鑄貨가 1990年 7月 1日부터 유일한 法的 支拂手段이 된다.
- 賃金・給與・奬學金・年金・집세・地貸 그리고 기타 定期的 支拂은 1：1 比率로 交換한다.
- 東獨마르크로 된 다른 債權과 債務는 원칙적으로 1西獨마르크 對 2東獨마르크의 比率로 交換된다.
- 東獨의 紙幣와 鑄貨의 交換은 東獨에 거주하는 住民이나 東

獨에 本部를 둔 機關들에만 적용되며 東獨의 銀行口座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東獨에 居住하는 個人의 金融機關 預金은 신청을 받아서 一定限度額까지를 1:1比率로 交換하고 年齡別로 限度額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東獨에 居住하고 있지 않은 個人의 預金에 대해서는 特別規定이 適用된다.
- 濫用은 禁止된다.

⑥ 東獨은 國有財產의 狀況, 收益率을 調査하고 또한 經濟構造의 變革과 國家財政의 再建에 國有財產을 우선적으로 活用한 후에 2대1의 交換時에 預金者의 損害額에 대해 追後 文書에 의한 配當可能性을 檢討한다.

⑦ 西獨聯邦銀行은 本條約과 聯邦銀行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權限을 全通貨地域에 行使한다. 이 目的을 위해 同銀行은 東獨內에 15個까지의 支店開設과 더불어 베를린에 臨時行政機關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東獨 國立銀行의 企業擔當部署가 利用될 수 있다.

第3章 經濟同盟에 관한 規定

第11條 經濟政策의 基礎

① 東獨은 經濟·財政政策的 措置들이 社會的 市場經濟와 調和되는 것을 保障한다. 이러한 措置들은 市場經濟秩序의 테두리내에서 적

절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함에 있어서 價格水準의 決定, 높은 雇傭水準, 對外經濟均衡에 寄與토록 한다.

② 東獨은 構造變化, 현대적인 職場의 創出, 中小企業의 底邊擴大, 또 自由職業 및 環境保護를 위하여 市場의 힘과 私的 이니셔티브의 發展을 위한 基本的 條件을 창출한다. 이에 따라 企業定款은 生產品, 數量, 生產節次, 投資, 勞使關係, 價格, 利潤使用에 관하여 企業의 자유로운 決定을 하는 本條約 第1條에 明示된 社會的 市場經濟原則에 기초하여 形成된다.

③ 東獨은 그 政策을 COMECON諸國과 이미 실행하고 있는 對外經濟關係를 존중하면서 EC(유럽共同體)의 法과 經濟政策目標에 一致되도록 段階的으로 調整해 나가야 한다.

④ 東獨政府는 上記 第1項과 第2項의 經濟政策上의 原則에 저촉될 만한 決定을 내릴 경우 第8條에 의한 合同政府委員會의 範圍내에서 西獨政府와 合意토록 한다.

第 12 條 內獨交易

① 쌍방이 1951年 9月 20日 合意한 「Berlin協定」은 通貨·經濟同盟에 맞게 調整된다. 「Berlin協定」에서 규정된 決濟去來는 廢止되고 借款의 決算殘高도 조정되어진다. 現在 債務는 西獨마르크로 淸算된다.

② 쌍방은 西獨·東獨이 原產地가 아닌 商品에 관하여는 兩獨國境에서 通關手續을 밟는다는데 同意한다.

③ 쌍방은 가능한 조속히 兩獨境界線에서 완전한 統制廢止를 위한 前提條件들을 充足시키도록 노력한다.

第 13 條　對外經濟

① 東獨은 자유로운 對外經濟交流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自由貿易의 基本原則, 특히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을 考慮한다. 西獨은 東獨經濟를 世界經濟에 지속적으로 적절히 編入시키기 위해 西獨의 經驗을 廣範圍하게 사용한다.

② 東獨의 旣存 對外經濟關係, 특히 COMECON諸國에 대한 現存 條約上의 義務는 信用保護를 받는다. 이러한 것은 市場經濟的 原則의 尊重下에 모든 參加者들의 利益과 通貨經濟同盟의 現存性을 考慮하여, 계속 發展되어 나갈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東獨의 現行 條約上의 義務는 그들의 條約當事者와의 意見一致下에 現狀態에 適合하도록 한다.

③ 對外經濟的 利害關係에 있어서 쌍방은 EC의 管轄權을 준수하면서 긴밀하게 協力한다.

第 14 條　企業의 構造調整

東獨에서의 企業의 필요한 構造調整을 촉진하기 위해, 東獨政府는 過渡期中 國家財政政策의 範疇內에서 새로운 市場條件에 맞게 企業의 急激한 構造的 調整을 容易하게 만드는 諸般措置를 취한다. 쌍방은 이러한 措置의 具體的 樣態에 대해 妥協을 한다. 이것의 目的은 社會的 市場經濟基礎에 입각하여 企業의 生産性을 強化시키고, 私的 自治의 발전을 통해 東獨內에 가능한 많은 中小企業을 가진 現代的 經濟構造를 달성시키는데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經濟成長과 未來의 職場確保를 위한 土臺를 마련시켜 줄 것이다.

第 15 條　農業經濟와　食糧經濟

① 農業・食糧經濟에　대한　EC規定의　중요한　意味때문에　東獨은　EC市場秩序體制에　副應해　價格維持制度와　對外保護制度를　導入,　農產物價格을　西獨　農產物價格에　附合시킨다.　東獨은　이에　따라　EC에　대해　經費를　支拂하는　일은　없다.

② 本條約　發效　즉시　완전한　價格維持制度　導入이　不可能한　商品에　대해서는　過渡的　措置를　강구한다.　EC市場에　東獨의　農業經濟,　食糧經濟가　法的으로　統合될　때까지는　兩獨間　去來時　일부　민감한　農產品에　대해서는　특별한　量的　規制措置를　취할　수　있다.

③ 東獨은　第14條의　措置에　抵觸되지　않으면서　農業企業體의　競爭力提高,　環境保護와　品質改善　指向的　生產,　적절한　措置를　통한　過剩生產의　防止를　위해　過渡期中　國家豫算政策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農業・食糧經濟上의　필요한　構造的　調整過程을　촉진할　것이다.

④ 쌍방　政府는　上記　第2項　및　第3項의　措置들의　具體的　樣態에　관해　合意를　한다.

第 16 條　環境保護

① 有害한　環境作用으로부터　人間,　動植物,　土地,　물,　공기,　氣候,　景觀　등의　環境保護　및　文化와　그　밖의　有形財貨의　保護는　쌍방의　特別한　渴望이다.　이　경우　쌍방은　事前豫防原則,　加害者責任의　原則,　그리고　協力原則에　따른다.　쌍방은　獨逸環境聯盟設立의　조속한　實現을　추구한다.

② 東獨은　本條約　發效와　더불어　東獨에서의　새로운　設備나　施設에

관해 西獨에서 현재 요구되어지는 安定性과 環境保護가 環境法上 許可賦與의 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規則을 制定한다. 東獨은 현재 操業中인 設備나 施設을 위해서도 빨리 위의 요구에 相應한 規則을 만든다.

③ 東獨은 聯邦國家 構成과 並行하여 州次元에서 行政法院 管轄地域의 設定과 더불어 西獨의 環境法을 引受받는다.

④ 共同環境法을 계속 形成·發展시킴에 있어 西獨과 東獨의 環境要求는 가능한 조속히 높은 수준에서 相互調整되고, 계속 발전될 것이다.

⑤ 東獨은 環境保護措置의 國家的 奬勵 規則을 西獨의 것과 調和시킨다.

第 4 章 社會保障同盟에 관한 規定

第 17 條 勞動法秩序의 原則

東獨은 團結權, 資金自主決定權, 勞動爭議權, 勞動協約, 勞使共同決定權, 解雇保護 등에는 西獨의 法을 採擇한다. 詳細한 內容은 指導原則에 관한 共同議定書와 附屬文書 Ⅱ와 Ⅲ에서 규정된다.

第 18 條 社會保障의 原則

① 東獨은 다음과 같은 原則下에 社會保障의 詳細한 體制를 導入한다.

1. 年金·醫療·産災·失業의 각 保險은 國家의 法的 監督下에 각기 公法上의 自治行政機關을 통해 실시된다.

2. 年金・醫療・産災・雇傭促進을 포함한 失業保險은 특히 負擔金에 의해 지원받는다. 年金・醫療・失業保險의 負擔金은 西獨의 負擔率에 준해 使用者와 勞動者가 각각 반반씩, 産災保險은 使用者가 부담한다.

3. 保險給與는 報酬水準에 따라 결정한다.

② 우선적으로 年金保險・醫療保險・産災保險의 업무는 共同의 運營體에 의해 실시된다; 收入과 支出은 保險種類에 따라 따로 취급하고 淸算되어진다. 가능한 한 1991年 1月 1日까지 年金・醫療・産災保險을 위한 獨自的인 運營體가 설립되어질 것이다. 이 運營體設立目的은 西獨의 것과 一致하는 社會保障의 組織構造를 만드는데 있다.

③ 東獨에서는 過渡期동안 現存의 包括的 社會保障義務가 維持되어질 수 있다. 獨立的이고, 自由業에 從事하는 者에 대해서는 다른 충분한 社會保障이 있는 경우 社會保障義務의 免除가 豫想된다. 이런 의미에서 年金保險外에 職業別 生計保護機關의 設立이 可能하다.

④ 賃金所得者는－그의 賃金所得은 1952年 12月 22日 勤勞所得의 課稅에 관한 規則 第10條(GBI Nr.182 S.1413)에 따라 1990年 7月 1日 以前 최종적인 賃金淸算期間의 賃金의 特別稅率에 기초한다.

- 1990年 12月 31日까지는 年金保險負擔金을 위해 月給外에 一定補助金을 받는다.
- 600西獨마르크 勤勞所得까지는 30마르크 補助金
- 600이상 700西獨마르크 勤勞所得까지는 20마르크의 補助金

— 700이상 800西獨마르크 勤勞所得까지는 10마르크의 補助金

다양한 勞使關係에서 발생한 賃金들은 함께 계산되어진다. 使用者는 補助金을 勤勞所得者에게 支給한다. 使用者는 申請書를 내어 이 費用을 國家財政에서 辨償받는다.

⑤ 保險義務의 限界와 分納金 測定限界는 西獨의 原則에 따라 確定되어진다.

第 19 條 失業保險과 雇傭促進

東獨은 西獨의 雇傭促進法의 規定에 一致하는 雇傭促進을 포함한 失業保險制度를 導入한다. 이 경우 職業敎育과 轉職訓鍊과 같은 적극적인 勞動市場政策의 措置들은 特別한 意味를 지닌다. 過渡期의 段階에서는 東獨의 特殊性이 考慮된다. 쌍방 政府는 雇傭促進을 포함한 失業保險制度의 確立에 긴밀하게 協力한다.

第 20 條 年金保險

① 東獨은 年金法을 西獨의 賃金, 負擔金原則에 기초하는 年金保險法에 一致되도록 모든 필요한 措置를 導入한다. 이 경우 年金年度에서 5年間의 過渡期가 지나면 信賴保護의 原則이 考慮된다.

② 年金保險은 社會復歸, 勤務不能, 老齡 및 死亡時에 오로지 그에게 맡겨진 課題의 충족을 위해 그의 裁量에 맡겨진 金錢을 사용한다. 기존의 追加扶養制度 및 特別生計扶養制度는 原則的으로 1990年 7月 1日附로 廢止된다. 종래의 旣得權과 期待는 年金保險에서 존중된다. 이 경우에 特別規定에 기초한 給付가 不公正한 給付를 廢止하고 過剩給付를 삭감하려는 目的下에 검토되어진다. 審査를 통해 年金保險에 발생한 附加的 支出을 國庫에서 支給한다.

③ 年金保險의 給與額은 西獨마르크로 交換함에 있어서 45년간 保險에 加入하여 그 收入이 平均收入의 70%의 受領額이 되도록 정해진다. 既得權 尊重에 의해 年金保險에 드는 많은 費用은 國家財政에서 補償을 받는다. 保險契約期間 및 勤續期間의 多小에 따라 그 比率도 상응하여 높거나 또는 낮아진다.

個人的으로 관련된 年金의 引上率 計算에 대한 基礎는 東獨에서 平均所得者의 保險加入年度에 따른 다양한 年金額이다. 그런데 이 平均所得者는 社會保險을 위한 의무적 分擔金외에 그의 收入가운데서 東獨의 自由로운 追加保險을 위해 완전한 負擔金을 지불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어떤 引上이 있지 않는 한, 年金은 東獨의 마르크로 된 從前 年金額에 일치하는 西獨마르크로 支給받는다. 遺族年金은 死亡者가 전환후 받았어야 할 年金에 근거해 계산된다.

④ 年金保險의 給與는 東獨에서 純賃金(稅金控除後)과 純給與의 變化에 相應하여 調整된다.

⑤ 東獨에서의 任意性의 追加年金保險은 廢止된다.

⑥ 東獨은 年金保險給與에 있어서 國家補助金을 支拂한다.

⑦ 1990年 5月 18日이후 한쪽 條約當事者의 지역에서 다른 條約當事者의 지역으로 居住地를 옮긴 사람은 그곳에 머무는 기간동안 본인에게 해당되는 法規定에 따라 계산된 年金額을 종래의 管轄年金機關으로부터 支給받는다.

第 21 條 醫療保險

① 東獨은 醫療保險法을 西獨의 것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종래 東獨의 法規에 따라서는 醫療保險에서 財政支援을 받았지만, 西獨法規에 의해서는 醫療保險이 되지 않은 給與는 우선적으로 東獨의 國家財政에서 支出된다.

③ 東獨은 疾病의 경우 西獨과 동일한 繼續補償 支拂方式을 導入한다.

④ 年金者들은 醫療保險에 加入되어 있다. 醫療保險에 있어 각각의 分擔金率은 표준적이다. 年金加入者의 醫療保險支拂額은 年金保險에서 一括 支拂된다. 一括支拂額은 그 年金者에게 할당된 醫療保險額을 控除하기 전의 年金에 따라 決定된다. 年金額을 서독마르크로 교환할 때 예상되는 稅金控除後 年金水準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東獨의 常設 및 移動保健所施設의 投資는 國家財政으로 충당되며, 分擔金으로 支援되지 않는다.

第 22 條 保健衛生

① 쌍방은 인간의 醫療看護와 健康保護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② 東獨國民들의 醫療看護의 維持에 필요한 현재의 醫療體制는 당분간 지속된다. 동시에 東獨은 民間醫療機關을 받아들여, 西獨의 醫療供給體制로 轉換한다. 특히, 東獨政府는 開業醫, 開業齒科醫, 藥局 및 自營醫療機關의 開設, 민간에 의한 公共利益을 위한 病院施設을 許可해 준다.

③ 東獨은 특히 醫療保險業者와 醫療機關間의 條約上, 醫療酬價法上의 필요한 關係定立을 위해 필요한 法的 措置를 취한다.

第 23 條　產災保險

① 東獨은 產災保險法을 西獨의 法에 일치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措置를 導入한다.

② 產災保險의 給與는 西獨마르크로 교환할 때, 東獨에서의 평균 稅金控除前 賃金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확정되고 지불된다.

③ 西獨마르크로 교환된 다음 새로이 확정된 產災年金은 產災前 마지막 12달의 평균 稅金控除前 月給與에 기초해 확정된다.

④ 위의 경우 第20條 4項과 7項이 적용된다.

第 24 條　生活保護

東獨은 西獨의 生活保護法에 일치하는 社會保障制度를 도입한다.

第 25 條　財政補塡

過渡期間中 東獨의 失業保險과 年金保險의 分擔金과 國家補助金으로 必要經費를 다 충당치 못할 경우, 西獨은 第28條에 규정된 國家財政補助의 범위내에서 東獨에게 잠정적인 財政補塡을 한다.

第 5 章　國家豫算과 財政에 관한 規定

第 1 節 : 國家豫算

第 26 條　東獨 財政政策의 原則

① 東獨의 公的 豫算은 全體經濟的인 均衡이라는 요구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각각의 地域機關의 책임하에 세워진다. 그 目的은 市場經濟秩序에 맞는 豫算經濟를 세우는 것이다. 豫算은 收入과 支

出이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支出과 收入은 각각의 豫算計劃에 따라 밝혀진다.

② 東獨 豫算은 西獨의 豫算構造에 따라 編成한다. 通貨同盟의 導入과 더불어 1990년의 部分豫算을 편성하되, 다음 분야는 국가예산에서 특히 제외된다.

- 西獨에서 완전히 또는 대부분 分擔金 또는 賦課金으로 지원을 받는 社會分野
- 법적, 경제적인 變身을 통해 獨立企業이 된 企業
- 法的으로 독립된 交通企業體
- 特別資產으로서의 東獨 國營鐵道와 東獨郵便의 運送, 公的 住宅建設貸出은 個別對象의 현실에 맞게 配定한다.

③ 東獨의 地方機關들은 豫算編成과 執行時에 赤字를 감소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支出들이 포함된다.

- 財政補助의 減縮, 특히 製造品, 農產品, 食料品에 대한 단기적인 補助金 減縮은 EC規定이 최종적으로 자율적 價格維持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家計의 에너지, 住宅分野에서의 收入推移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한다.
- 公共分野에서의 人件費의 계속적인 削減
- 필요와 財政能力에 기초한 기본적 法規를 포함한 모든 지출의 검토
- 教育制度의 構造改革과 聯邦構造에 따른 豫備的 編成 (硏究分野를 포함해서)

收入部門에서도 赤字減縮을 위해서는 本章의 第2節에 있는 조치외

에도 西獨의 構造에 따라 公共奉仕에 대한 寄與金 및 手數料를 調整 내지 導入할 필요가 있다.

④ 國有財產의 在庫調査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國有財產은 우선적으로 經濟構造調整을 위해, 그리고 東獨의 國家豫算의 健實化를 위해 이용되어진다.

第 27 條 起債와 負債

① 東獨內의 各 地方行政體의 豫算上 信用貸付權能은 1990年에 100億마르크, 1991年에는 140億마르크로 한정되며, 西獨財務長官과 合意下에 그러한 수준에서 할당되어진다. 信託財產에 대해서는 事前財政支援을 위해서 그것의 評價上 豫想收益과 관련하여 1990年에 70億마르크, 1991年에는 100億마르크 信用貸付 輪廓이 확정된다. 西獨 財務長官은 기본적으로 변화된 條件下에서는 信用 上限線의 超越을 許容할 수 있다.

② 起債와 補償支給은 東西獨 財務長官사이에 合意로 이루어진다. 이는 擔保·保證 또는 여타 保障의 引受에 대해 그리고 國家豫算에서 나타난 義務的 委任의 總額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東獨의 西獨에의 合併後, 東獨國家豫算의 赤字는 信託財產의 賣却에서 오는 豫想收益額에 의해 辨濟되지 않는 한, 그 금액대로 信託財產에 委任된다. 이에 따라 남은 赤字는 東獨地域에 새로 編成된 州와 聯邦에게 1/2까지는 配當된다. 州와 市의 起債는 그대로 남는다.

第 28 條 西獨의 財政補塡

① 西獨은 豫算赤字를 補塡하기위해 1990年 하반기에 220億마르크,

1991年에 350億마르크의 財政支援을 保障한다. 뿐만 아니라 本條約 第25條에 따라 西獨의 負擔으로 年度保險에 대한 財政補塡으로서 1990年度 하반기에는 7億 5,000萬마르크, 失業保險에 대한 財政補塡으로서 1990年 하반기에는 20億마르크, 1991年度는 30億마르크가 지불되어진다. 支拂은 필요에 맞게 행해진다.

② 쌍방은 1971年 12月 17日의 「西獨과 西Berlin間 民間人과 貨物의 通過交通에 관한 協定 第18條」에 따라 東獨에 지급되는 總括通行料는 本條約 發效와 더불어 效力을 잃는다는데 합의한다. 東獨은 本條約 및 1979年 10月 31日의 「市內交通機關의 租稅와 手數料의 免除協定」상의 料金規則을 쌍방에 대해 效力을 정지시킨다. 1989年 12月 5日 合意書改正에서 쌍방은 1990年 7月 1日부터 「施行外換基金」名目으로 어떤 지급도 하지 않는데 합의한다. 外換基金에서 緣由한 아직도 현존하는 대출자금의 使用에 관하여는 쌍방 財務長官사이에 補充的 合意가 있을 것이다.

第 29 條 公務에 있어서의 過渡的 規定

東獨政府는 本條約 第2條 1項 1號를 遵守하여, 賃金契約 또는 過渡規定에서 새로운 服務法上 規定의 제한을 받는 公共行政分野에서의 特別規定은 東獨의 一般經濟 및 財政關係와 財政의 건실화라는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西獨의 人事關係法이 그 趣旨에 따라서 적용된다.

第 2 節 : 財政

第 30 條 關稅와 特別消費稅

① 東獨은 本條約 第11條 3項의 원칙에 따라 共同關稅를 포함한

EC의 關稅法과 附屬文書 Ⅳ의 기준에 따른 特別消費稅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인다.

② 쌍방은 關稅領域이 本條約의 適用領域도 포괄한다는데 합의한다.

③ 쌍방의 消費稅賦課地域間의 限界調整은 담배를 제외하고는 없다. 租稅自主權은 존중된다. 租稅納付額 移轉의 調整은 특별한 합의를 통해 규정되어진다.

④ 稅金徵收地域間에는 消費稅를 賦課해야 할 상품을 非課稅한 채 발송하는 경우, 한군데의 稅金徵收地域內에서의 非課稅된 商品去來를 규정하는 규정의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⑤ 輸出商品의 免稅는 쌍방의 租稅徵收地域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입증할 때 비로소 허용된다.

第 31 條 取得稅와 流通稅

① 東獨은 附屬文書 Ⅳ의 基準에 따라 取得稅와 流通稅를 규정한다.

② 販賣稅의 目的을 위해서 쌍방간에는 어떠한 租稅限度도 없다. 販賣稅上 限度調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租稅自主權은 그대로 유지된다. 事前租稅控除에 대한 權利는 他契約當事者의 경우 販賣稅의 기초가 되는 賣上에 대한 稅金까지 확대된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租稅減少의 補塡은 특별한 합의를 통해 규정된다.

③ 어느 한 條約當事者의 지역에서 무제한적인 財産稅義務가 있는 경우, 이 條約當事者는 독점적인 課稅權을 인정받는다. 쌍방지역에서 모두 무제한적인 租稅義務를 부과하는 경우, 이것은 租稅義務者와 긴밀한 個人的·經濟的 關係(삶의 利害의 핵심)를 갖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租稅義務者가 非自然人으로서 실질적인 營業實

續을 갖는 條約當事者에게 有効하다. 他條約當事者의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資産은 그곳 國內資産에 有効한 規定에 따라 평가된다.

④ 한 條約當事者의 지역에서 무제한의 相續稅와 贈與稅義務가 있는 경우, 1990年 12月 31日 이후 租稅가 매겨진 相續에 대해서는 이 條約當事者에게 독점적인 課稅權을 인정한다. 쌍방지역에서 모두 무제한의 租稅義務가 있는 경우, 이것은 租稅債務成立時 被相續人 또는 贈與人과 긴밀한 個人的, 經濟的 관계를 가졌거나 (삶의 利害의 핵심), 아니면 그 지역에서 被相續人 또는 贈與人이 非自然人으로서 실제적인 營業實續을 가졌던 條約當事者側에 有効하다. 第3項 2號가 評價를 위한 規定이다.

⑤ 1990年 6月 30日 이후, 1990年 1月 1日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死亡으로 인한 相續에 대해서는 上記 第4項이 적용된다. 1989年 11月 8日 이후 他當事者地域에서 居住地를 정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일상적인 滯留로하여, 死亡時에도 그 居住地에서 일상적인 체류를 한 쪽의 當事者의 시민이 死亡하면서 남긴 相續에는 他當事者地域에서 무제한한 稅金이 賦課될 때보다 더 높은 相續稅가 賦課되어서는 안된다.

⑥ 本條約 當事者의 相續稅 및 贈與稅賦課權利에서 야기된 通知 및 廣告義務는 각기 他當事者의 財務部官廳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第 32 條 情報交換

① 雙方은 租稅 및 獨占禁止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情報를 交換한다. 쌍방의 財務長官과 이들로부터 委任을 받은 官廳만이 情報

를 交換할 權限이 있다. 한쪽 當事者가 知得한 모든 情報는 國內法을 근거로 入手한 情報와 똑같이 祕密을 지켜야 하며, 이 情報는 단지 稅金의 確定, 徵收, 執行이나 刑事訴追, 또는 이 節에서 다루는 租稅와 獨占禁止에 관련된 公訴決定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기관들(法院과 行政官廳을 포함하여)에게만 허용된다. 이들은 이 情報를 단지 이 目的을 위해서만 利用한다. 이들은 이 情報를 公的 裁判節次, 또는 法院判決속에서 밝혀도 된다.

② 第1項은 어느 한쪽 當事者에게 다음 事項을 義務지우지 않는다.

- 어느 한쪽 當事者의 法律과 行政慣行을 違反하는 行政措置를 執行하는 일
- 어느 한쪽 當事者의 法律 또는 一般的 行政節次에서 入手될 수 없는 情報를 제공하는 일
- 일종의 貿易祕密, 產業祕密, 營業祕密이나 職業祕密, 또는 일종의 營業節次가 暴露됐거나, 혹은 그 情報提供이 公共秩序와 矛盾이 되는 情報를 제공하는 일

第 33 條 協議方法

① 쌍방은 徵稅基礎의 공정한 限界設定에 관한 相互理解를 통해 取得 및 流通稅의 二重課稅를 막는데 노력한다. 쌍방은 本節에서 다루는 稅金과 獨占에 관한 法律의 解釋과 適用에 있어 상호발생하는 어려움과 의문점을 相互合意를 통해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② 前項의 合意誘導를 위해 西獨의 財務長官과 東獨의 財務長官은 즉시 相互 協議할 수 있다.

第 34 條　財務行政機關의　設立

① 東獨은　本條約에서　야기되는　矛盾處理를　위해　西獨의　財務行政에　관한　法律에　따라　3단계의　財務行政을　위한　法的　基礎를　마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行政機關을　設立한다.

② 通貨・經濟・社會同盟의　設立까지　우선　기능적인　租稅　및　關稅　行政官廳을　설립한다.

第 6 章　結　　論

第 35 條　國際法上　條約

本條約은　西獨과　東獨이　第3國과　체결한　國際法上　條約은　侵害하지　않는다.

第 36 條　條約의　檢證

本條約의　規定들은　상황에　기본적인　變化가　있을　경우에는　再檢討된다.

第 37 條　베를린條項

1971年　9月　3日　4大國協定에　따라　本條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西Berlin까지　확대・적용된다.

第 38 條　發　　效

部屬文書　Ⅰ～Ⅸ　및　共同協定書를　포함한　本條約은　쌍방정부가　條約發效를　위해　필요한　憲法　및　기타　國內法的인　前提를　갖추었다고　상호　通告한　날　發效한다.

1990年 5月 18日 Bonn에서 독일어로 된 2개의 正本을 작성한다.

西獨을 위하여 東獨을 위하여

指導原則에 관한 共同議定書

通貨·經濟·社會同盟에 관한 本條約을 補充하기 위해 雙方은 本條約 第4條 1項 1號에 따라 拘束力있는 다음의 指導原則에 合意했다.

A. 一般的인 指導原則

I. 概 觀

1. 東獨의 法은 自由的, 民主的, 聯邦的, 法治國家的, 그리고 社會的 秩序의 基本原則에 따라 形成되며, 유럽공동체의 法秩序와 같은 방향을 指向한다.
2. 社會主義的인 合法性, 社會主義的인 國家秩序 및 社會秩序, 國民經濟의 中央集權的 指導와 計劃의 口實과 目的, 社會主義的 法意識, 社會主義的 世界觀, 개별적 結社 또는 政黨의 世界觀, 社會主義的 論理 또는 이와 유사한 槪念에 기초한 立法과 判決을 포함해 國家權力機關에 의무를 지우는 法規定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法律行爲者의 權利와 義務는 부당한 손해에서 經濟

的 弱者의 保護, 信義 誠實의 原則, 美風良俗에 그 限界를 둔다.

3. 許可는 一般福祉라는 불가항력의 根據에서만 되어진다. 그 前提는 명백히 規定되어져야 한다.

Ⅱ. 經濟同盟

1. 經濟的 活動은 우선 私經濟原則에 따라 그리고 自由競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契約의 自由는 保障된다. 經濟活動의 자유는 최소한으로밖에 간섭받지 않는다.

3. 企業家的인 決定은 計劃으로 인한 負擔에서 자유롭다.(例 : 生產, 給料, 供給, 投資, 勞使關係, 價格 및 利潤使用과 관련해)

4. 私企業과 自由業은 國營 및 組合企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는다.

5. 價格形成은 全體經濟的인 면에서의 불가항력적인 이유에서 國家가 決定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6. 生產의 自由, 土地 및 기타 生產手段의 處分과 利用의 自由는 經濟活動을 위해 保障된다.

7. 직·간접적으로 國有財產에 속하는 企業은 經濟性의 原則에 따라 運營된다.

   同企業들은 가능한 빨리 自由競爭으로 體質改善되어, 私有財產化된다. 이 경우 특히 中小企業에게 機會가 開放된다.

8. 郵便制度 및 通信事務에 대해서도 西獨 遞信組織法의 질서정연하고 組織的인 原則이 단계적으로 適用된다.

Ⅲ. 社會同盟

1. 모든 사람은 勞動 및 經濟條件을 保障·促進하기 위해 結社를 조직하고, 既存結社에 加入·脫退하는 것은 물론 缺席할 權利를 갖는다. 더욱이 그 結社에서 활동할 權利도 保障된다. 이러한 權利를 제한하는 모든 協定은 無效이다. 勞動組合과 使用者團體는 그 단체의 構成, 存續, 組織上의 自治, 그 단체에 상응한 활동 등을 保護받는다.
2. 賃金協商能力이 있는 勞動組合團體와 使用者團體는 자유로이 조직되며, 敵意가 없고, 超企業的 基礎위에 組織되고, 獨立性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現行 賃金法 自體를 拘束力있다고 認定해야만 한다. 나아가 이들 團體는 個別企業의 賃金協商對象者에 壓力을 行使함으로써 賃金締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3. 賃金 및 기타 勞動條件들은 國家가 아니라, 勞動組合, 使用者團體, 使用者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規定되어야 한다.
4. 自由獨逸勞動聯盟, 產別勞動組織, 企業의 勞組指導部의 特別 協力權을 예상하는 法規定은 더 이상 適用되지 않는다.

B. 個別的 法分野에 대한 指導原則

Ⅰ. 訴訟

1. 訴訟과 그 節次의 通告와 관련하여 集團, 社會組織體, 勞動組合, 企業, 社會를 代表한 原告와 被告의 協力을 규정하는 法規定은 이제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勞使紛爭에 있어서 諮問과 訴訟辯

護를 받을 勞動組合의 權利는 侵害되지 않는다.

2. 法院과 地方議會 및 기타 機關과의 協力, 法院批判 및 이에 대한 判事들의 報告義務를 규정한 法規들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3. 訴訟事件에 檢察廳의 協力에 관한 法規는 그것이 刑事訴訟節次, 家族法上의 事件, 親子關係事件, 禁治產者事件에 대한 協力인 경우에만 계속 適用된다.

4. 社會主義的 合法性, 社會主義的 國家秩序 및 社會秩序에 기초한 東獨刑法의 原則과 計劃經濟 構造의 견고화에 기여하면서, 미래 兩獨統一에 대립되고, 또한 自由民主的 法治國家原理에 모순되는 法規들은 本條約 發效後의 事件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刑法의 規定이 社會主義的 所有物에 관련되는 한, 이는 本條約 發效後의 事件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個人的 또는 私的 所有物에 관한 法規들은 本條約 發效後 기타 所有物 및 資產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 本條約 附屬文書 Ⅱ에서 열거된 規定이 刑事罰 또는 罰金賦課를 豫想하여, 이 賦課規定을 東獨의 制裁體系에 순응시키지 못하는 경우, 東獨은 이 規定들을 가능한 넓게 同化되도록 西獨의 法에 조화시킨다.

Ⅱ. 經濟法

1. 東獨에서의 信用貸付를 擔保하기위해 西獨에서처럼 同等價値를 지닌 權利, 특히 土地抵當權이 설정된다.

2. 자유로운 資本市場 導入을 위한 與件들이 東獨에도 마련된다. 이에는 특히 利子率 統制의 解除, 거래 가능한 有價證券(株式과 債務讓渡證書)의 導入등이 속한다.

3. 東獨에 住所 또는 居所를 가진 사람에 대해 本條約 第3條 3項에 列擧된 官廳의 行政行爲 및 기타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방법으로도 實施될 수 있는 前提條件들이 마련된다.

4. 東獨에서의 現行 保險業獨占은 廢止되며, 營業計劃에 保險率을 포함하지 않는 子保險會社에서 保險料 統制는 없어지고, 保險의 一般條件에 관한 現行 法規定 및 관련 規則들도 廢棄된다.

5. 東獨의 支拂去來上의 현재의 障碍는 廢止된다. 私法上의 支拂去來의 발달은 장려된다.

6. 對外經濟去來는 기본적으로 自由롭다. 이에 대한 制限은 兩獨의 合意에 기초하거나 全體 經濟的 관점에서 불가항력적인 理由가 있을 경우에만 許容된다. 東獨은 對外貿易獨占을 廢止한다.

7. 비교가능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해 東獨은 자기들의 統計를 西獨統計와 調和시키고, 西獨의 統計基準에 따라 西獨의 聯邦統計局 또는 獨逸聯邦銀行과 調整하여 다음의 情報를 제공한다 : 勞動市場, 物價, 生産, 販賣, 貿易, 小賣分野.

Ⅲ. 建築法

東獨은 建築計劃에 대한 設計 및 投資保障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西獨의 建築法 및 空間組織法에 상응하는 法的 基礎를 마련한다.

Ⅳ. 勞動法 및 社會法

1. 東獨의 使用者는 東獨에서 임시로 고용된 西獨出身 勞動者에게 西獨의 勞動法을 적용한다고 합의할 수 있다.
2. 勞動力을 臨時雇傭할 때는 雇傭과 保險이 독립적이어도 되는 경우, 社會保障保險에서는 雇傭에서 야기되는 保險義務가 免除될 수 있다.
3. 勞動者의 安全과 건강보호에 관한 東獨의 規定은 적절한 過渡期間을 거쳐 現行 西獨의 勤勞保護法에 조화시킨다.
4. 東獨은 勞使關係에 있어 법률상 최소한의 解雇告知期間을 變更할 경우, 西獨의 勞動者와 事務員에 대한 現行法上의 최소한의 解雇告知期間을 超過하지 못한다.
5. 東獨은 상당한 중요이유가 있을시 勞使關係에서 無期限 解雇豫告를 할 수 있는 權利를 확보하기 위해 西獨民法 第626條, 628條에 相應하는 法律上의 規定을 마련한다.

4. 獨逸統合條約

獨逸統一달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以下 西獨으로 약칭)과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동독으로 약칭)간의 체결조약 (Einigungsvertrag)

西獨과 東獨은—

平和와 自由에 立脚하여, 國際社會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자유로운 자결권 行使를 통해 獨逸의 統一을 完成하겠다는 결의하에,

法治國家的, 民主的 및 社會的인 聯邦國家에서 함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兩獨국민들의 念願에 따라,

平和的 方法으로 自由에의 突破口를 마련해준 이들과 獨逸統一 成就에의 使命을 고수하여 이제 이를 完成하는 이들에게 感謝와 尊敬을 표하면서,

獨逸 歷史의 持續性을 忍識하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며 독일의 民主發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거에서 비롯된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독일통일을 통해 유럽의 통합과 국경선 구분없이 모든 유럽민족들이 서로 信賴하며 共存할 수 있는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에 일조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유럽 모든 국가들의 기존 國境과 領土上의 통합 및 그 主權을 侵害하지 않음이 平和를 위한 基本 前提條件임을 인식하면서,—

독일의 통일달성에 관한 條約을 다음과 같이 締結하기로 合意하였다.

제 1 장 編入의 效力

제 1 조 州(Laender)

(1)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튜링겐주들은, 基本法 제23법에 의거하여 東獨의 獨逸聯邦共和國 편입발효와 동시에 1990年 10月 3日부로 獨逸聯邦共和國의 州들이 된다.

이들 各 州의 형성과 相互境界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22일에 제정된 동독내 州형성에 관한 憲法規定-주편성법-이 부록Ⅱ에 상응하게 그 기준이 된다.

(2) 베를린의 23개 구역들은 베를린州를 形成한다.

제 2 조 首都, 獨逸統一의 날

(1) 독일의 首都는 베를린이다. 議會와 行政府의 所在地 問題는 獨逸統合이 이루어진 후에 決定된다.

(2) 10月 3日은 독일통일의 날로서 법정 공휴일이다.

제 2 장基本法

제 3 조 基本法의 發效

聯邦法典 제3부 목차번호 100-1에 발표되고 1983년 12월21일 최후

수정된 西獨 基本法 제4조에 명시된 變更條項들을 包含하여, 本 條約에서 달리 規定하지 않는 한, 편입발표와 동시에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그리고 지금까지 適用에서 除外됐던 베를린의 일부 州들에서도 그 效力을 발한다.

제 4 조 編入과 關聯된 基本法의 改正

西獨의 基本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1. 전문은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된다.

   "신과 인류에 대한 사명을 認識하면서, 統合유럽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世界平和에 貢獻하겠다는 의지하에 獨逸國民은 憲法制定權에 의거이 基本法을 制定하였다.

   바덴-뷰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헷센, 맥클렌부르크-브레멘, 함부르크, 포오폼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쯔, 자아르란드, 작센, 작센-안할트, 슈레스비히-홀스타인 주와 튜링겐주의 獨逸人은 自由로운 自決權 行使를 通해 獨逸의 統一과 自由를 完成하였다. 이로써 이 基本法은 모든 獨逸 國民에게 適用된다.

2. 제23조는 廢止된다.

3. 基本法의 제51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명문화된다:

   "(2) 各 州는 最小한 3개의 投票權을, 2백만 이상의 人口를 所有하는 州들은 4개, 6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주들은 5개, 그리고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주들은 6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4. 135a조는 자구변경없이 第1項이 된다. 本 第1項에는 다음과 같은 항이 첨가된다.:

"(2) 제1항은 東獨과 傘下法人의, 그리고 西獨과 산하단체 및 공법기관의 채무에 適用되는데, 후자는 聯邦州들 그리고 시·군에로의 양도되는 동독재산 가치와 관련된다. 第1項은 東獨과 산하법인의 對策과 직결된 債務에도 適用된다."

5. 基本法에는 다음의 新設 第143條가 삽입된다.:

"제143조

(1) 統合條約의 제3조에 명기지역 소속권리는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들과 차이를 둘 수 있는 바, 이는 서로 다른 형편때문에 完全한 適應이 成就되지 않을 境遇나 이 기간중에만 유효하다.

상기 사항들은 제2항 제19조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제3항 제79조에 명시된 基本原則들과 합일되어야 한다.

(2) 기본법 제2장, 8장, 8a장, 9장, 10장 및 11장의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 까지는 適用되지 않는다.

(3) 제(1)항 및 (2)항에 相關없이 同 條約의 제41조와 그 實行規定들은 同 條約의 第3條에 명시된 地域에의 私有財産 公有化措置時 關聯 被害者들에 대한 財産 再還元措置가 完了된 後에도 존속한다."

6. 제146조는 아래와 같이 明文化된다.:

"獨逸의 自由와 統合이 이루어진 後 全獨逸國民들에게 適用되는 이 基本法은, 獨逸국민들의 自由로운 의사에 따라 의결된 새 憲法이

効力을 발하는 날로부터 그 意味를 상실한다."

제5조 將來의 憲法 改正

條約 締結 兩政府는 基本法의 개정이나 보완과 관련하여 統一獨逸의 立法機關이 2년내에 獨逸統合과 관련하여 提起하는 아래 事項들을 처리하는데, 특히:

- 1990년 7월5일자 양독 총리발표 공동 결의안에 의거한 행정부와 각 주들간의 관계
- 관련주들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새로운 편성 가능성
- 새로운 국가목표를 기본법에 추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기본법 제146조의 적용과 이에 따른 국민투표의 문제

제6조 基本法 適用의 例外規定

基本法 第131條는 第3條에서 명기된 지역들에는 당분간 効力을 발하지 않는다.

제7조 財 政 規 約

(1) 獨逸 聯邦行政府의 재정규약은 본 條約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조에 言及된 地域들에도 그 效力을 발한다.

(2)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거두어 들인 財政收入은 聯邦行政府와

州들 및 시·군에 대한 할당시 基本法 제106조에 따른다.

1.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4문 및 제4항은 適用되지 않는다.
2. 1996年 12月31日까지 各州 所得稅收入의 市·郡으로의 할당몫은 시·군이 속해있는 州들의 기본법 제 106조 5항에 따라 市·郡 住民들의 所得稅 支拂能力에 의하지 않고, 市·郡의 人口數에 따라 정해진다.
3. 1994년 12월31일까지 基本法 제106조 第7項 適用과는 달리 공동세 (Gemneinschaftsteuer)總收入의 각 州들의 몫과 주세금의 總收入중 최소한 20%,그리고 5항 1번에 따라 「獨逸統一基金」에서 配當되어진 주들 몫에서 최소한 40%가 매년 시·군에 配分된다.

(3) 基本法 제107조는 第3條에서 言及된 州들에게 다음과 같은 條件下에서만 適用된다. 즉, 1994년 12월31일까지는 서독의 現在까지의 모든 州들과 第3條에 言及된 州들사이에 第1項 4번의 規定이 適用되지 않으며 全獨逸州들에 대한 재정조정과 결산(기본법 제107조 2항)은 행해지지 않는다.

매상세(Umsatzsteuer)전독일주들의 몫은 동독의 주와 서독의 주에 할당되는데,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튜링겐 주들의 인구당 평균 매상세 몫은 바덴-뷰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헷센, 함부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쯔, 자아르란드 및 슐레즈비히-홀스타인 주들의 인구당 평균적 매상세 몫의, 1991년도에는 55%, 1992년도에는 60%, 1993년도에는 65%, 1994년도에는 70% 액수에 해당한다. 베를린州의 몫은 주민수에 따라 미리 계산된다.

(4) 제3조에 言及된 州들은 基本法의 제91a조, 91b조, 104a조 제3항 및 4항 및 금번 發表된 施行規則은 同 條約에 따라 1991年 1月 1日부로 發效된다.

(5) 統獨 成就 이후 년간 統獨基金中

1. 85%는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튜링겐 주에 대해서는 주민수에 비례해서, 서베를린은 주민수에 關係없이 一般財政 所要額에 따라 配當되고,

2. 15%는 상기 州들의 中央·公共任務 수행에 使用된다.

(6) 근본적인 여건변화시에는 제3조에 언급된 주들에 대한 추가재정지원여부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 3 장 法令의 調整

제 8 조 聯邦法의 過渡期的 適用

兩獨 統合과 同時에 제3조에 명시된 地域에는, 特定 주지역에 관한 適用範圍 制限이 없거나 同 조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한, 特히 부록 I 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지 않는 한, 聯邦法令이 適用된다.

제 9 조 東獨法令의 繼續適用

(1) 基本法 관할권 規定上 주법에 해당하고, 동 조약의 조인시 適用된 東獨法令은. 第143조를 除外한 基本法과 제3조에 명시된 地域에

게 발효되는 聯邦法 및 해당 EC法에 어긋나지 않거나 또는 조약상 별도 規定이 없는한 繼續 有効하다.

基本法 관할권 규정상 연방법에는 해당되나, 연방 전체에 걸쳐 單一하게 규정된 대상과 관련되지 않는 東獨法令은 聯邦法令 立案者에 의해 新規定이 制定될 때까지 제1문의 전제조건 내에서 주 地方法으로 繼續 有効하다.

(2) 부록Ⅱ에 수록된 동독법령은 동 조약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법과 즉각 적용 가능한 EC법과 어긋나지 않는한 계속 유효하다.

(3) 同 條約 조인후 공포된 東獨法令은, 兩 條約 當事者間의 合意下에 繼續 效力을 발한다. 제2항은 변동없다.

(4) 제2항과 3항에 따라 계속 有効한 法律은 그 對象이 聯邦의 獨占的 立法事項과 關係있는 한 聯邦法律로서 유효하다. 立法時 本法이 聯邦과 州間에 相衝되는 사항들과 一般法規와 관련되는 境遇 및 基本法의 여타 適用範圍내에 聯邦法律로 규정되는 專門分野와 관련되는 경우, 이는 또한 연방법률로서 繼續 有効하다.

(5) 부록Ⅱ에 수록된 東獨에 의해 公布된 敎會稅法은 제1조 1항에 명시된 州들에는 州法으로 繼續 適用된다.

제 10 조 유럽共同體法(EC法)

(1) EC에 관한 제조약과 변경사항, 보충사항, 국제합의사항, 국제조약 및 결의사항들은 東獨의 편입과 함께 제3조에 명시된 地域에 적용된다.

(2) EC에 관한 條約에 根據하여 제정된 法令은 EC내 해당기구에서 例外規定을 제정하지 않는 한 東獨의 편입과 함께 第3條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된다. 동 例外規定들은 행정적 요청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最小化하는데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3) 各州의 소관으로 轉換 또는 施行되는 EC법령은 州法規定에 따라 전환 또는 시행될 수 있다.

제 4 장 國際法上 條約 및 合意事項

제11조 西獨側 條約

國際機關 및 國際機構 회원가입을 規定한 조약을 包含한 西獨側의 國際法上 條約 및 合意事項들은 계속 유효하며, 부록 I 에 언급된 例外條約을 제외하고는 그 權利와 義務事項이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에도 適用된다. 個別的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 獨逸政府가 해당 조약 相對者와 협의를 한다.

제 12 조 東獨側 條約

(1) 統獨過程이 進行中인 現在 東獨側의 國際法上 조약들은 條約締結 당사자들과 論議를 거쳐서 繼續有効, 調停 또는 效力喪失 與否 등을 결정 또는 確認하기로 한다. 이 作業은 다만 信賴保護, 關聯國들의 이익, 서독측의 계약상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自由, 民主,

法治國家的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EC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統一獨逸은 東獨側이 맺은 國際條約 이행에 대한 입장을 조약당사자들 및 EC측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西獨은 加入되지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多者間 條約에 統一獨逸이 加入하려고 할 境遇에 獨逸은 모든 當事國과, EC의 관할권과 關聯되어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EC와 협의를 한다.

제 5 장 公共行政과 法律執行

제 13 조 公共機關의 過渡期的 存續

(1) 3條에 言及된 지역의 행정기구와 공공행정 및 법률집행을 위한 諸般機關은 그것이 位置해 있는 州政府의 管轄이 된다. 1個州이상의 業務活動 關聯을 가진 公共機關은 관련주 공동의 대표기관으로 이전된다. 고유업무를 自律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여러 傘下機關으로 構成된 기관의 경우, 각 산하기관은 그에 위치한 주정부의 관할이 된다. 주정부가 각 기관의 業務遂行과 각 기관으로의 業務양도를 規定한다. 1990年 7月22日에 결정된 州施行法 (Laendereinfuehrungsgesetz) 22조는 변함없이 효력을 가진다.

(2) 동독 편입효력이 發生하기까지 연방에 의해 基本法에 명시된 개별

관할권에 의거 인계된 業務를 담당했던 제1항 1번에 言及된 기관 혹은 傘下機關은 해당 聯邦政府機關의 管轄이 된다. 이 聯邦政府機關이 각 기관의 다른 기관에로의 業務讓渡와 업무청산을 決定한다.

(3) 제1항과 2항에 言及된 機關들에는

1. 문화, 교육, 학술 및 체육기관들과

2. 법인격이 공공행정기관인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도 해당된다.

제 14 조 州들의 共同機關

(1) 基本法上 명시된 個別 관할권에 의거 주정부에서 擔當하는 自體固有業務를 東獨 編入效力의 發生時까지 완수했던 공공기관과 그 傘下機關은 規定확정시까지는 1條1項에 言及된 주들의 共同機關으로 남는다. 단지. 이들 州들이 擔當業務를 處理하는데 그 機關들의 過渡期的 존속이 不可避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2) 각 州들의 공동기관은 주지사 선출시까지는 주정부 전권위임자의 관할이 되며, 주지사 취임후에는 주지사 傘下에 속한다. 이 기관들은 주정부 해당장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州政府 行政을 위한 過渡規定

(1) 제1조 1항에 言及된 각 주들의 州議會議長과 그 州에 속해 있는 各地域 政府의 전권위임자는 지금까지의 擔當業務를 編入效力 발생시로부터 주지사들의 選擧時까지 聯邦政府의 責任下에 있는 동 政府의 指示를 받는다. 주의회의장은 주의 전권위임자로서 주행정을 관리하

고 주의 각 지방행정당국과 아울러 양도된 業務일 境遇에는 시와 각 구역 그리고 주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명령권을 가진다. 제1조 1항에 言及된 주들에서 주정부 전권대리인이 임명되면 그들은 編入效力 發生時까지 1문과 2문에 언급된 임무와 주의회의장으로서의 權能을 가진다.

(2) 서독의 주정부들과 聯邦政府는 동독 州行政府 구성시 行政的 협력을 한다.

(3)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정부 지사들의 요청에 따라 서독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最大한 1996년 6월 30일까지 특정자문업무 수행을 行政的으로 지원한다.

다른 주정부 및 聯邦政府 소속 관리들이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協調를 하면 주지사는 동 전문업무 분야에 대해 자신의 命令權을 부여한다.

(4) 聯邦政府側에서 州政府에 대해 전문적 業務遂行 지원시에는 業務遂行에 必要한 재정수단을 提供하며, 여기 使用된 財政費用에 대해서는 독일통일기금이나 수입판매세(Einfuhr－Umsatzsteuer)에 대한 各州들이 분담해야 할 몫으로부터 정산처리한다.

제 16 조 베를린 統合州政府 構成時까지의 過渡的 規定

베를린시 統合州政府가 構成될 때까지 서베를린의 시정부(Senat)와 동베를린의 시정부(Magistrat)가 統合 베를린 州政府의 任務를 遂行한다.

제 17 조 政治人 復權

조약 쌍방은 모든 政治犯과 反法治國家的, 違憲的 불법재판의 犧牲者들이 된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는 法的 基礎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SED 불법 정부치하에서 시달린 이 희생자들은 복권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제 18 조 司法審判 效力의 持續

(1) 編入效力 發生 이전에 발표된 東獨裁判 決定事項은 제8조에 의거하여 발효된 法律이나 제9조에 의거하여 繼續 有効한 法律의 適用에 따라 持續的인 効力을 가지며 執行될 수 있다. 동 法律에 따른 法院判決과 그에 따른 집행이 一致하는가를 法治國家的인 原則에 의거 檢討한다. 제17조는 이와 관계없이 適用된다.

(2) 東獨 刑事裁判所에서는 판결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조약 부록 I에 따라 법률상 유효한 決定事項을 司法的으로 소급 무효화 할 수 있는 독특한 權利가 허용된다.

제 19 조 公共行政機關 決定事項 效力持續

編入効力 발생 이전에 發布된 東獨 行政 공문서는 繼續 유효하며 그것이 法治國家的 原則이나 이 條約의 규정들과 不一致할 境遇 廢棄될 수 있다. 그밖에 行政文書 효력존속에 관한 規定은 변함없다.

제 20 조 公共業務의 法的인 關係

(1) 東獨 編入時 公務員의 法的 關係는 부록 I 에 합의된 과도적 規定

에 준한다.

(2) 基本法 제33조 제4항의 수권적 權能에 의해 주어진 公共業務는 즉시 公務員이 遂行해야 한다. 公務員法은 부록 I 에 合意된 規定에 準하여 施行된다. 基本法 제92조는 變更되지 않는다.

(3) 軍人法은 부록 I 에 合意된 規定에 준하여 施行된다.

제 6 장 公共財産과 負債

제 21 조 行政財産

(1) 特定業務 遂行에 必要한 東獨의 재산중에서 1989. 10. 1현재 基本法에 명시된 行政目的上 주로 각 주·시구역 및 기타 公共 行政機關이 施行해야 하는 것으로 規定23된 目的의 財産이 아닌 境遇에 한하여서만, 聯邦政府 財産이 된다.

前 東獨 國家保安部(Stasi) 業務遂行에 使用된 行政財産은 그것이 위에서 言及된 시점('89.10.1)에서 이미 社會的·公共的 目的에 사용되지 않았을 境遇 신탁청에 귀속된다.

(2) 行政財産이 제1항 규정상 聯邦財産에 속하지 않을 境遇, 이 行政財産은 東獨의 서독편입과 동시에 기본법에 따라 해당 行政業務를 遂行하는 공공기관에 속한다.

(3) 公法上의 다른 法人으로부터 聯邦政府, 州政府 및 각 시구역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맡겨진 재산은 해당 법인이나 그의 권리승계자에

게 되돌려진다. 이전 제국의 재산은 연방재산이 된다.

(4) 제1항부터 3항, 그리고 聯邦法에 따라 行政財産이 聯邦財産이 될 境遇, 이 財産은 제3조에 言及된 지역의 公共業務 수행을 위해 使用된다. 이 原則은 財産 賣却으로 생긴 受益金의 使用에도 適用된다.

제 22 조 國家財政財産

(1) 特定 行政業務에 直接的으로 必要치 않은 토지 및 임야재산, 不動産 및 동산을 包含한 3조에 言及된 지역에 속한 法人들의 공공재산은 社會保險의 財産을 除外하고는 그것이 신탁청에 讓渡되지 않거나 혹은 信託法 제1조 1항 2절 3절에 의거 法律로서 위임되지 않는 한 동시에 연방정부의 신탁관리하에 둔다. 財政財産이 전 국가보안부(Stasi)임무수행에 주로 使用된 境遇, 그것은 신탁청에 귀속한다. 財政財産이 1989년 10월1일 이후 社會福祉的·公共的 目的에 使用된 境遇는 신탁청에 귀속치 않는다. 연방법에 의하여 재정재산이 연방정부와 1조에 言及된 주들에 割當될 境遇 聯邦政府와 1조에 言及된 주들은 各各 總財産의 1/2을 保有한다. 각 시구역은 각 주에게 分配된 몫의 適切한 배분에 參與한다. 이에 따라 聯邦政府가 配當받는 財産은 제3조에 言及된 지역들에서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使用되어야 한다. 전체주들에 배당된 재산의 각 주로의 分配는 편입발효와 동시에 서베를린을 除外하고는 각 주의 人口數에 비례해서 實施된다. 제21조 3항은 각 狀況에 맞추어 適用된다.

(2) 聯邦 財務長官이 연방 財產管理廳을 通해 管理의 引受를 規定하지 않는 한 새로운 法律이 제정될 때까지 旣存管理廳이 財政財產을 管理한다.

(3) 제1항과 2항에 言及된 地域들의 法人體들은 각 地域의 法人 相互間의 財產의 法的·實在的 關係가 解明되지 않거나 爭論중인 그러한 財產評價에 관한 記錄을 담고 있는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및 기타 진행과정의 기록에 관한 열람과 이에 대한 정보입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지한다.

(4) 제1항은 住宅擔當 國營企業體의 法人體에 속한 住宅부양을 위해 使用된 인민재산에 대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이미 주택부양책에 대한 具體的 施行計劃을 위해 할당된 인민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1항은 適用되지 않는다. 이 財產은 편입효력 발생시 해당부채를 동시 인수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所有로 轉換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社會的 重要性을 고려하여 주택의 수급을 단계적으로 市場經濟的 주택수급경제로 轉換한다.

이와 더불어 個人住宅 所有의 장래를 위해 私有化가 迅速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國家機關의 住宅에 대해서는 21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1항은 適用되지 않는다.

제 23 조 負債規定

(1) 편입 발표시까지 累積된 東獨 재정의 총부채는 法律的 資格이 없는 聯邦의 특별재산에 의해 引受된다. 그 特別財產은 부채상환 의무를 수행한다.

이 특별재산은 다음의 경우에 신용대부권을 부여 받는다:

1. 특별재산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2. 이자 및 신용대부 창출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3. 시장유통경로를 통한 특별재산의 채권 구입목적을 위하여

(2) 본 특별재산은 聯邦財務長官이 管轄한다. 特別財産은 문제발생시 재무장관명의로 協商, 起訴, 被訴등의 法律適用을 받는다. 特別히 규정하지 않는 한, 特別財産을 擔當할 法院은 연방정부 소재지에 位置한다. 연방은 特別財産의 부채에 責任을 진다.

(3) 편입 발효시로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特別財産에 의해 지출된 이자는 聯邦政府와 신탁청이 각각 그 액수의 절반을 擔當한다. 上記 特別財産 支出 이자금은 그 지불이행 月末까지 聯邦과 신탁청에 의해 상환된다.

(4) 西獨과 東獨間의 貨幣·經濟·社會統合 實施에 관한 1990. 5. 18자 조약 27조 3항에 의거, 聯邦과 제1조에 명기된 州들 및 신탁청이 1993. 12. 31까지 누적된 特別財産 關聯(또는 지출)總負債를 1994. 1. 1. 부로 공식 인수한다.

負債의 개별 할당몫은 1990. 5. 18자 체결조약에 의한 1990. 7. 25자 법 34조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規定된다.

제1조에 명기된 州들의 개별 부담액은 편입 발효시까지 각 州 人口數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때 서베를린의 人口數는 考慮되지 않는다.

(5) 特別財産은 1993년 말로 해체된다.

(6) 편입시까지 동독 국가재정 形態로 負擔한 제반 상환의무와 보증 및 채무담보는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인수된다.

제1조 1항에 명시된 주들과 베르린주중 지금까지 基本法의 適用을 받지 않았던 일부(現在의 동베를린 지칭;역주)는 獨逸聯邦共和國이 引受한 이 제반 상환액과 債務擔保 總額의 절반을 재인수한다.

결손액은 편입 발효시까지의 人口數를 考慮하여 각 州에도 할당되는데, 서베를린의 人口數는 考慮되지 않는다.

(7) 베를린 國立銀行에 대한 東獨의 參與지분은 제1조 명기 주들에게 移讓될 수 있다. 베를린 國立銀行에 대한 東獨의 持分權利는 제1절과 제3절에 따른 양도시까지 聯邦에 귀속된다.

조약 당사자들은, 獨占法 심사권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베를린 國立銀行이 全體 혹은 部分的으로 獨逸聯邦共和國內 公法 信用機關으로나 또는 여타 法人體로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債權과 債務들이 全部 把握되지 않을 境遇, 베를린 國立銀行의 이 殘留部分은 청산될 수 있다. 베를린 국립은행에 대한 東獨의 보증에 따른 채권과 채무는 聯邦이 인수한다. 이는, 제1절 내지는 제3절에 따른 지분 양도후에 發生되는 財務事項에 適用되지 않는다. 제5절은 베를린 國立銀行의 청산과정에서 發生되는 새로운 債務에도 適用된다.

연방이 보증의무에 따라 책임을 질 境遇, 이 負擔은 聯邦政府 財政의 總負債로 통합되며, 편입 발효시부터는 제1항에 명시된 法的 資格이 없는 特別財産에 의해 인수된다.

제 24 조 獨逸聯邦共和國과 他國에 대한 債務 및 債權의 淸算

(1) 對外貿易 및 貨幣價値 獨占分野에서 발생했거나 1990年 7月1日까지 西獨과 他國에 대한 東獨의 여타 國家業務 수행시 發生한 債權과 債務는, 이것이 편입 발효시까지도 유효할 境遇에는 聯邦 財務長官의 지시와 監督下에 청산된다. 편입 발효후 獨逸聯邦共和國과 체결될 債務移轉協定에는 제1절에 명기한 채권도 역시 包含된다. 해당 채권은, 그 가치가 評價되어지는 한에서만, 聯邦 財務長官에 의해 신탁형식으로 管理되거나 혹은 연방으로 이양된다.

(2)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은, 필수 관리비용과 수지 차이로 야기된 이자비용 및 청산시 자체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은 기관부담 기타 손실내용 일체를 1993년 11월 30일까지 청산위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上記 支出, 費用 및 손실을 1993년 11월 30일 이후 연방과 신탁청이 절반씩 분담한다. 細部事項은 聯邦法에 의해 規定된다.

(3) 獨逸民主共和國 自體 기관으로나 또는 相互 經濟원조용 부속기관으로 소급되는 債權과 債務는 獨逸聯邦共和國이 가하는 별도 規定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規定은 1990年 7月 30日 이후 發生했거나 發生하는 債權과 債務에도 適用될 수 있다.

제 25 조 信託財産

國有財産의 私有化 및 재편성에 관한 1990년 6월 17일자(東獨法典 I

33번, 300면)法令－信託法－은 編入 發效時 다음의 指針에 따라 繼續 효력을 발한다:

(1) 신탁청(Treuhandanstalt)은 信託法 規定에 따라, 競爭力을 갖도록 과거 國家所有 기업을 재조직하고 私有化 할 任務을 賦與받는다. 신탁청은 연방 직속 공법기관이 된다. 이의 實務 및 法的 감독은 聯邦財務長官에게 귀속된다. 財務長官은 실무감독시 聯邦 經濟省長官 및 關聯部處 長官들과 協議를 한다.

신탁청의 資本出資에 聯邦은 間接的으로 參加한다. 정관변경은 聯邦政府의 동의를 必要로 한다.

(2) 신탁청 理事會 任員은 16명에서 20명으로, 제1회 理事會 발족시에는 23명으로 增員된다. 東獨議會에서 선발되는 2인의 대표자 대신, 제1조에 명기된 주들이 신탁청 理事會 議席을 각기 1席씩 割當받는다. 신탁법 제4조 제2항과 달리, 신탁청 이사회장과 理事들은 聯邦政府로부터 任命된다.

(3) 條約의 兩 當事者는 國有財産이, 이의 재정담당 機關과는 相關없이 오직 제3조에 명기된 지역내 조치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合意한다.

이는 1990年 5月 18일자 條約의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탁청의 수익금도 공히 적용된다. 농업 구조개선(Strukturanpassung)을 위해서는 신탁청 수익금은 特殊한 境遇 農産業體의 負債償還 措置로 使用될 수도 있다. 事前에 이들業體 所有財産物이 使用되어야만 한다. 同업체로부터 離脫하는 事業部分의 負債는 惠澤 對象에서 제외된다.

債務淸算을 위한 支援은 또한, 해당업체가 차후 경제력에 따라 지원금의 全額또는 部分을 상환한다는 條件으로 행해질 수 있다.

(4) 1990年 5月18일자 條約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청에 부여된 신용대부 창설 한도액은 170억 마르크에서 250억 마르크로 인상된다. 上記 言及負債들은 一般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聯邦財務長官은 상환기간 연장과 基本條件 변동시 負債 상환선 超過를 許可할 수 있다.

(5) 신탁청은 聯邦財務長官과의 協議下에 상환의무 대부와 지불보증 및 기타 담보설정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6) 1990년 5월18일자 조약 제10조 제6항의 지침에 따라, 2;1 화폐교환시 限度規定으로 인해 交換되지 못한 저축금을 차후 國家所有 財産에 대한 債權 形式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구된다.

(7)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은, 서독 마르크화의 개시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제출될 때까지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는 신탁청이 독일신용은행과 여타 은행들에 지불할 수 있다.

제 26 조 特別財産:東獨 國營鐵道

(1) 제1차 조약(1990년 5월 18일 조인) 제26조 제2항상 東獨 국영철도(특별재산)에 속하는 제반 東獨所有 財産 및 서베를린내 東獨財産들

은 발효와 동시에 東獨 국영철도(特別財産) 로서 西獨財産이 된다. 이에는 1945년 5월 8일 이후 東獨 國營鐵道(特別財産)資本으로 획득되었거나 혹은 국영철도의 영업에 使用되거나 그 전임기관의 營業에 使用되어진 財産權도 이에 속한다.

이때 이 재산권이 차후 東獨 國營鐵道의 同意下에 다른 目的에 쓰여진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財産權이 어떤 法人을 위해 取得되어진 것인가는 考慮되지 않는다. 1991년 1월31일까지 동독 국영철도로부터 1990년 7월 11일자(東獨法典 I, 44번, 718면)신청규정 1조 4항에 상응하여 명시된 재산권은 東獨 國營鐵道의 동의로 다른 目的에 使用되어졌던 財産에 해당되지 않는다.

(2) 上記 財産權 外에도 이와 關聯된 제반 債務 및 채권 역시 東獨 國營鐵道(特別財産)로 이양된다.

(3) 西獨 聯邦鐵道廳 理事長과 東獨 국영철도청 理事長이 두 特別資産의 統合에 대한 責任을 진다. 이때 이들의 任務는 쌍방 鐵道의 技術的·組織的 結合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 27 조 特別財産:東獨遞信

(1) 동독체신(特別財産)에 속하는 所有權과 기타 모든 財産權은 西獨의 財産이 된다. 이는 聯邦 체신청의 特別財産과 統合된다. 上記 財産權과 外에도 이와 관련되는 債務와 債權은 「연방 체신청(特別財産)」으로 이양된다.

公權的, 政治的 目的을 위한 財産은, 이와 관련된 債務와 債權과 더불어 聯邦 체신청(特別財産)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1945년 5월 8일 獨逸帝國 체신에 속했던지 혹은 1945년 5월 8일 이후 이전의 독일제국 체신의 자본에 의해 획득되어진 것이든지 또는 동독체신의 영업에 使用되어진 재산권은 全部, 차후 동독체신의 同意下에 다른 目的에 쓰여진 境遇를 除外하고는 어떤 법인을 위해 取得되었는가를 考慮하지 않고, 東獨체신(특별재산)에 귀속된다. 1990년 1월 31일까지 동독체신에 의해 1990년 7월 11일의 財産權 청구신청규정 1조 4항에 상응하는 적용에 따라 언급되는 재산권은 동독체신의 同意下에 다른 目的에 使用된 재산으로 認定되지 않는다.

(2) 서독 체신부장관은 연방 체신청 企業들의 意見을 청문회를 通해 청취하여 그 3개 기업의 분할 特別財産으로서 東獨체신(특별재산)분배를 규정한다.

서독 체신부장관은 연방 체신청 3개企業의 意見을 聽取하여 3년내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어떤 재산이 公權的, 政治的 目的에 使用되어질 것인가를 確定짓는다. 長官은 이를 자산가치 評價額의 조정없이 인수한다.

제 28 조 經濟的 奬勵措置

(1) 편입 效力發生과 더불어 3조에 言及된 지역은 유럽공동체(EC)의 管轄事項을 考慮하여 西獨地域에 存在하고 있는 經濟的 장려조치를 위한 聯邦規定의 適用을 받게 된다. 特別히 구조 조정의 必要性이 과도기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中産層에 대한 各別한 고려하에 均衡있는 經濟構造에로의 可能한 한 조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해당 관할부서(Zustaendigen Ressort)는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성장과 구조변경의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바, 그 프로그램은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 이 3조에 명시된 州에 有利하도록 特別 프로그램의 創設을 通한 지역경제 장려조치(그와 더불어 이 地域에 有利하도록 우선순위가 보장된다.)
- 經濟性이 높은 社會 간접자본시설(Wirtschaftnahen Intrastruktur)에 最大限의 역점을 둔 각 시구역의 經濟的 前提條件의 改善을 위한 조치
- 中產層의 조속 發展을 위한 조치
- 產業의 자가 책임에서 形成된 再構造 조정개념(예를들어 企業健實化 프로그램, COMECON國家를 위한 輸出生產)에 입각한 경제의 현대화와 새로운 構造創出을 위한 措置들
- 個別的인 檢討에 따른 企業의 채무상환

제 29 조 對外經濟關係

(1) 동독의 旣存 對外經濟關係중 特히 COMECON國家에 대한 현존 조약상의 義務는 信賴保護를 받는다. 이 對外經濟關係는 모든 參加國들의 利益을 고려하여 그리고 시장경제적 원칙 및 EC의 관할권을 존중하여 繼續 發展, 形成되어 갈 것이다. 統獨政府는 專門的 管轄權의 範圍內에서 이 對外經濟關系가 組織的으로 規定되도록 最善을 다할 것이다.

(2) 西獨 聯邦政府 및 統獨政府는 유럽공동체의 해당기구들과 제1항에

준하여 과도기동안 對外貿易에 있어 어떠한 例外規定이 必要한가에 대해 合意한다.

제 7 장 勞動, 社會保障, 家族, 婦女, 保健, 環境保護

제 30 조 勞動과 社會保章

(1) 統獨후 立法機關은 다음과 같은 任務를 띈다.

1. 노동계약법, 일요일·공휴일의 勞動許可를 包含한 公法上의 勤勞時間法 및 여성근로자 保護特別法 등을 可能한 조속한 時日內에 統一化시켜 새로 편찬하는 작업
2. 공법상의 근로보호를 위해 유럽공동체법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東獨 勤勞保護法을 一致시켜 현시점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

(2)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勤勞者들은 연령 57세가 지나고 나면 첫 養老年金을 지급받을 때까지(3년 期間의) 준노년 연금(Altersuebengangsgeld)을 (法的 연금보험으로부터)支給받을 수 있다. 준노년 연금액은 最終 실수령 平均月給의 65% 금액이다. 연금신청기간이 단지 1991. 4. 1까지만 유효한 노동자들의 준노년 연금액은 처음 312일 동안에 한하여 5% 인상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연방고용청이 실업수당규정 및 고용촉진법 제105조 C항 規定에 의거하여 준노년 年金을 지불한다. 연방고용청은 준노년 연금신청자가 지금까지 일한 곳에서 業務能力이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判明되면

해당 연금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준노년 연금은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초과하면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된다. 준노년 연금규정에 따라 신규신청의 경우 1991년 11월 31일까지 女性勤勞者들은 만 55세 이후부터 最大한 5년동안 준노년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3) 제3조에 명기된 地域에서 제1차條約(1990년 5월 18일 조인)과 關聯하여 年金·事故·失業者 保險料 支給에 追加的으로 支給되는 사회보장 지원금은 신규가입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동 지원금은 최대한 1995년 6월 30일까지 支給된다.

(4) 社會保險 任務를 각 保險團體에 分擔하면 각 團體는 保險金을 지급하고 資金을 調達하며 同 任務를 個別的으로 수행한다. 각 사회보험단체에 대한 財產分配(차변 및 대변)는 法律的으로 최종 確定되어진다.

(5) 東獨의 사회법 제6권(연금보험)과 帝國保險 規定法 제3권(사고보험)의 적용 細部內容은 연방법규 내에서 규정된다.

연금보험법상 1992년 1월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 基本的으로 最小한 1990년 6월 30일 現在, 그때까지 제3조에 言及된 州들에 유효했던 연금법에 따라 추가금제도나 특별 부양제도에 상관없이 지급됐던 額數만큼 年金이 支給되며,
2. 1990년 6월 30일 現在까지 제3조에 言及된 州들에 適用됐던 年金法에 따라 年金신청가격이 있으면 同年金은 지급이 허가된다.

상기 東獨法의 過渡期的 適用(Ueberleitung)은 제3조에 언급된 주들의 임금, 봉급, 연금을 서독내 다른 주들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이루어져야 한다.

(6) 職業病에 관한 法令을 繼續 發展시키면서, 現在까지 동조약 제3조에 명시된 地域에서 適用되었던 規則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제 31 조 家族과 婦女

(1) 統獨後 立法機關은 남녀권리 균등화를 위한 立法制度를 發展시키는 임무를 띈다.

(2) 法的·제도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就業活動上 出發條件이 서로 相異한 狀況에서 가정과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는 法的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統獨後 立法機關들의 임무이다.

(3) 同 條約 제3조에 명시된 지역들의 탁아시설의 持續的인 運營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 기간에 同 시설들의 운영비를 分擔한다.

제 32 조 自律的인 團體勢力

自律的 후생사업단체들과 自律的 靑少年 원조기구들은 시설과 奉仕活動을 通해 基本法上의 社會福祉國家主義 정신구현에 필수적 기여를 한다. 제3조에 명시된 지역들에서의 자율적 후생사업단체들과 자율적 청소년 원조기구들의 設立과 확대는 基本法上 權限의 範圍內에서 장려·지원된다.

제 33 조 保 健

(1) 제3조에 명시된 地域들에서의 住民들에 대한 제반 의료 水準이 신속하고 꾸준히 改善되도록 하며, 西獨 기타주들의 狀況과 비슷해지도록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 立法機關의 任務이다.

(2) 편입되는 東獨州들에서의 의료보험회사의 醫藥品에 대한 보험수가 지불시 發生되는 결손을 防止하기 위해서 統獨後 입법기관은 한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편입되는 東獨地域과 현재의 西獨地域에서의 의료보험가입 義務者間의 수입차액과 相應하는 제조자 供給價格 부분은 의약품 가격규정에 의거 인하시킨다.

제 34 조 環境保護

(1) 제1차 조약(1990년 5월 18일 조인)과 東獨 環境關係法(1990년 6월 29일 制定, 東獨法典 42번 649면)에 의거 달성된 獨逸 환경통합에 立脚하여 예방의 原則, 원인야기 부담의 원칙, 協力의 原則을 존중하는 가운데, 人間의 自然的 삶의 원천을 보호하고 生態學的 生活與件들을 最小한 西獨에서 도달한 수준으로 向上시키는 것이, 立法機關의 任務이다.

(2) 3조에 명시된 地域內에서 제1항에서 言及된 목표들을 促進시키기 위해, 환경정화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이 基本法의 권한규정 範圍內에서 수립된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방지 대책이 最優先的으로 세워져야 한다

제 8 장 文化, 敎育, 科學, 體育

제 35 조 文 化

(1) 分斷期間중 兩獨逸의 相異한 發展에도 불구, 藝術과 文化는 獨逸民族의 持續的인 단일성 維持의 기초가 되었다. 그것들은 窮極的으로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獨逸의 國家的 統一過程에 있어 獨自的이며 필요불가결한 기여를 하고 있다. 統一된 獨逸의 세계속에서의 위치와 이미지는 그의 政治的인 比重과 經濟的인 能力 이외에도 그의 문화국가로서의 의의에 좌우된다.

對外文化政策은 同伴者的인 共同作業을 바탕으로 한 文化交流를 우선목표로 한다.

(2) 제3조의 언급된 地域에서의 文化的 財産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文化的 任務遂行과 資金調達問題는 保障되어야 하며 基本法上의 管轄權 분담에 따라 새로운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도 西獨聯邦의 각 주와 똑같은 文化·藝術의 보호와 진흥의 의무를 지닌다.

(4) 지금까지 中央集中的으로 운영되던 文化施設과 機關은 그것이 위치한 주나 地方自治團體(Kommunen)의 담당기관에 이양된다. 聯邦政府를 통한 部分的 財政調達은 예외적인 경우에, 특히 베를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5) 전후 사건들로 인해서 분산소장된 프로이센政府의 소장품들(현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기밀 국가문서고, Ibero-Averika 연구소, 음악연구를 위한 국립연구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은 베를린

으로 다시 집중 소장된다. 프로이센 文化財財團이 過渡期的 擔當機關이 된다. 장래 이전 국립프로이센소장품 관리규정 제정을 위해서 포괄적인 擔當機關이 베를린에 設置된다.

(6) 문화기금은 文化, 藝術 그리고 예술인 장려를 위해 過渡期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계속 적용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部分的 資金調達은 基本法에 의한 管轄權 分擔의 範圍내에서 가능하다. 후속 기관에 대해서는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들의 編入問題를 協商하는 過程에서 주들의 文化財團과 별도 協議를 해야 한다.

(7) 分斷의 結果로 發生한 東西獨間의 差異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은 과도적으로 제3조에 언급된 地域內에서의 문화적 社會施設 진흥을 위한 개별적 文化措置와 機關들의 財政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36 조 放 送

(1) 東獨의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은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들과 아직 基本法 適用을 받지 않는 동베를린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公共法人體가 되며, 주관할 業務로 規定된 任務를 遂行하는데 한하여 최대한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任務를 계속한다. 동 기관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公營放送 基本原則에 준하여 라디오와 TV방송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동독 遞信廳에 속해 있던 放送技術, 라디오·TV방송 제작

과 관리를 위한 시설은 동 기관에 속하게 된다. 제21조는 이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2) 동 기관의 조직들은

1. 방송대리인

2. 방송자문위원회이다.

(3) 放送代理人은 東獨 總理의 推薦에 의해 동독 議會에서 선출된다. 동독 의회에서 선출되지 못할 경우 放送代理人은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들의 주의회의장과 베를린 시장들의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방송대리인은 기관을 지휘하며 동 기관을 대표한다. 그는 동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法律的, 非法律的인 責任을 지며, 즉시 1991년도 수지균형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4) 放送諮問委員會는 社會 主要團體의 代表者들 가운데 18명의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된다. 그중 3명의 위원은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들의 주의회와 베를린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放送諮問委員會는 모든 프로그램 問題에 대한 諮問權을 가지며 주요한 인사, 경영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한 결정 참여권을 갖는다. 放送諮問委員會는 동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방송대리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동 委員會는 동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새로운 放送委員을 선출할 수 있다.

(5) 동 기관의 財政은 우선적으로 제3조에 言及된 地域에 居住하는 시청자들로부터 收納된 시청료수입으로 充當된다. 동 기관은 시청료의 債權者이다. 그외에는 광고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6) 제1조에 言及된 期間內에 동 기관은 방송의 聯邦國家的 性格에 따라 (각 주정부로 분산되는) 제1조에 언급된 주들의 共同國家條約에 의해 解體되거나 個別 또는 多數의 주들로 構成된 공공기관에 이양된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위에서 언급된 국가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동 기관은 이 期限의 終了와 함께 解體된다. 解體時에 現存하는 차변자산과 대변자산은 제1조, 제3조에 언급된 地域內에서 1991년 6월 30일 현재 徵收되어지는 시청료의 比率에 따라 정해진다. 제3조에 言及되어진 地域內의 방송지속을 위한 주들의 의무는 변함없이 有効하다.

(7) 國家條約 效力發生과 함께 제6항에 의거하여 늦어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1항 부터 6항까지 그 效力을 喪失한다.

제 37 조 敎 育

(1) 동독내에서 取得되거나 또는 國家가 公認하는 學校敎育, 職業敎育 및 大學卒業 自格 또는 資格證은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3조에 명시된 地域 또는 서베를린을 包含한 서독의 다른 주들내에서 施行된 試驗이나 取得된 資格證들은 동등하게 取扱되며,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同等한 權限을 부여받는다. 동등가치 인정은 申請에 의해 해당관청의 確認으로 決定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인정에 관해서는 聯邦政府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내의 特別規定이 우선 適用된다. 國家로부터 취득되었거나 國家가 公認하는 또는 수여받은 대학 職業名稱과

等級 및 學位의 使用權利는 계속 有効하다.

(2) 교원시험(순위고사)에는 文教長官會議에서 통용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文教長官會議는 이에 相應하는 과도규정을 制定한다.

(3) 見習職 組織法과 專門職 組織法에 의한 시험합격증과 공인된 견습직의 卒業試驗과 도제시험은 동등하게 취급된다.

(4) 제3조에 言及된 지역들내에서의 학제변경에 要請되는 規定들은 제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決定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必要規定들은 文教長官會議에서 합의된다. 상기 두 경우는 합부르크 協定과 文教長官會議에서 추가 合意事項을 그 기초로 한다.

(5) 卒業 이전에 大學을 바꾸는 學生들은 卒業試驗 規定에 관한 一般規定(ABD) 제7조의 基本原則 또는 國家考試 許可適用은 規定에 의해 그 학점을 認定받는다.

(6) 東獨의 기술, 전문학교 졸업증을 바탕으로 확인된 大學進學 資格은 1990년 5월 10일 文教長官會議 결정과 그 부록 B에 의해 認定된다. 학교 및 大學卒業後의 上級 職業教育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大學卒業의 인정과 관계된 其他 原則과 절차는 文教長官會議에 의해 마련된다.

제 38 조 學問과 研究

(1) 제3조에 명시된 地域內에서 학문과 연구의 必須的 改革은, 성과가 있는 기관은 保存한다는 방침하에, 공공기관에 대한 학술심의회에의 鑑定書를 근거로 한다. 이 감정은 1991. 12. 31까지 終結되어

야 하는 바, 中間結果는 사전에 段階的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후속 규정들은 이 감정업무를 가능케 하며,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학문과 연구가 獨逸聯邦共和國의 共同硏究 구조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2) 編入發效와 동시에 東獨의 과학아카데미는 學會로서 硏究團體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구분된다.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學會가 어떤 형식으로 尊屬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州法으로 決定한다. 硏究團體와 기타 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3조에 언급된 지역들의 기관으로서, 이들이 폐지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存在한다. 이 團體와 기관에 대한 過渡期的 財政補助措置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確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은 1991년도에 聯邦政府와 1조에 언급된 주들로부터 마련된다.

(3) 硏究協會와 기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기관 고용원들의 노사관계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관을 이양받는 주정부와 시한부 雇傭關係로서 지속된다. 本條約 부록 I에 기록된 法律要件에 의해 正常的 또는 非正常的으로 勞使關係를 解約시킬 수 있는 권리는 불변한다.

(4) 동독의 건축아카데미와 동독 농업아카데미 및 食糧·土地·森林部 소속기관들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內容이 適用된다.

(5) 聯邦政府는 주정부와 교섭을 할 때, 基本法 91b에 의거하여 敎育計劃 및 기관의 장려조치, 學問硏究 推進이 地域性을 탈피하여 제3조에 言及된 地域까지 확대되도록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상을 調整하고 체결한다.

(6) 聯邦政府는 西獨 硏究機關에 의해 확정된 硏究方法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신속히 全聯邦에 適用되도록, 그리고 제3조에 명시된 地域內 學者들과 學問機關이 현행 硏究奬勵 措置를 받도록 노력한다. 硏究와 개발장려 措置는 西獨內에서 그 施行期間이 終了되었을지라도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한다. 세금조치는 여기서 제외된다.

(7) 編入發效와 동시에 동독의 硏究審議會는 解體된다.

제 39 조 體 育

(1) 제3조 해당 地域內에서의 제반 체육기구는 自治體制(Selbstverwaltung)로 개편된다. 담당 公共機關들은 基本法에 명시된 개별 管轄權에 의거 체육을 정신적·물적으로 육성한다.

(2) 제3조 해당 지역내에서의 우수경기 종목은 將來性이 立證되었을 경우에만 육성된다. 이를 위한 제3조 해당 지역내 공공기관의 財政對策은 기존 聯邦獨逸의 法令과 基本原則들의 適用을 받는다. 이 法的 테두리내에서 Leipzig소재 신체연마 및 체육 硏究機關(FKS), Kreischa(Dresden 근교) 소재 國際올림픽위원회 인정 약물복용 감독기관과 동베를린 소재 체육용구 硏究 및 개발부서는—각기 적정 法律形式을 갖추어—필요 규모내에서 통독 單一機構로 지속 運營되거나, 기존 기구들과 통합된다.

(3)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過渡期間 동안 장애자 체육은 聯邦의 支援을 받는다.

제 9 장 臨時 및 最終決定

제 40 조 條約과 協定

(1)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貨幣·經濟·社會統合 條約이 담고 있는 의무조항들은, 이들이 본 조약과 상이하다고 規定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이점에 관한 협정사항들이 통독과정중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경우 계속 유효하다.

(2) 독일연방공화국 혹은 연방주들과 獨逸民主共和國간에 締結된 기타 諸般條約과 協定이 명시하는 權利와 義務사항은 통독절차가 進行되는 동안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兩國 統合 法律機關에 의해 인수되거나, 適應對策이 마련되거나 직접 解決된다.

제 41 조 財產問題에 대한 規定

(1) 1990년 6월 15일 發表한 양독정부 共同聲明書 내용이 財產問題公開規定(제3부칙)에 대한 本條約의 근간을 이룬다.

(2) 特別法律 規定에 따라 특정 대지나 건물이 긴급한 거의 確定的인 投資目的에, 특히 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場의 설치에 소요될 때와 이러한 투자결정의 시행이 國家經濟 차원에서, 특히 고용을 확보하고 창출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대지나 건물의 소급반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투자가는 투자내력 요지를 명기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계획 실제이행

은 반드시 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과거 소유자의 보상문제 역시 규정할 수 있다.

(3) 獨逸聯邦共和國은 1항에 言及된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여타 법률규정을 발할 수 없다.

제 42 조 國會議員 派遣

(1) 동독의 편입전까지 동독의회는 제11차 독일연방의회로 보낼 144인의 의원과 충분한 후보의원을 선출한다.

관련 제안은 동독의회 소속 정당과 단체들에 의해 행해진다.

(2) 선출된 이들은 동독의회 의장에게 수락선서를 하여 제11차 연방의회의 의원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편입의 발효와 더불어 비로소 유효하다. 동독의회 의장은 선출결과를 수락선언문을 동봉하여 즉각 연방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3) 제11차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과 이의 상실은 1975년 9월 1일 공포되고, 1990년 8월 29일에 최후 수정된 연방 선거법(연방법전 Ⅱ, 1990, 813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 의원이 탈락될 경우, 이 의석은 최우선 후보의원에 의해 채워진다. 이 후보는 탈락된 자가 파견의원으로 선출될 때 소속했던 정당출신이어야 한다. 편입 완료전까지의 보충후보자 선정은 동독의회 의장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된 다음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차후 결정된다.

제 43 조 州政府 構成時까지의 聯邦上院 關聯 臨時規定

제1조 1항 해당 주들의 구성에서부터 주 수상(Ministerpraesident)선출시까지는 주 전권대표가 연방상원 의사일정 심의자격(beratende Stimme)으로 참석한다.

제 44 조 法規補塡(Rechtswahrung)

본 조약이 명시하는 법규는 독일민주공화국 혹은 제1조 해당 주들의 이해를 위해 편입 완료후 이들 각 주에 적용될 수 있다.

제 45 조 條約發效

(1) 본 조약은 첨부 의정서(Protokoll)와 3개의 부록을 포함하여, 발효에 따른 양국간 필수 전제사항들이 성취되었다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가 상호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2) 본 조약은 편입 완료후 연방법규에 해당된 법률(als Bundesrecht geltendes Recht)로 존속한다.

1990년 8월 31일 베를린에서 2부의 독일어 원문으로 체결한다.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DR. Wolfgang Schaeuble	Dr. Guenther Krause

議定書(Protokoll)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통독 달성에 대한 조약 서명시 본 조약과 관련되어 다음의 사항들이 확정되었다.

Ⅰ. 條約의 條(Artikel)와 附錄(Anlage)에 대하여

1. 제1조에 대해 :

(1) 베를린 주의 경계는 1920년 4월 17일(기본법 1290조, 123면)자 법에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결정된다.

- "서베를린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영토교환에 따른 1971년 12월 20일자 Enklaven(자국 영토로 둘러싸인 타국 영지) 문제처리 협정속에 여타 Enklaven과 다른 소지역들을 포함시키기로 협정"하였는 바, 이 협정의 제1조에 대한 의정서 비고사항(Protokoll－vermerk)은 전 지역에 확대 적용되며, 베를린과 부란덴부르그 州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효력을 발한다.
- 1949년 10월 7일 이후 베를린 시의회(Abgeordnetenhaus)또는 시민의원 총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선거가 실시되었던 구역은 모두 베를린에 포함된다.

(2) 베를린과 부란덴부르그 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계문제를 1년내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 한다.

2. 제2조 제1항에 대해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연방 입법기관의 결의안 제2절에 따른 결정들을 제1차 통독 연방의회 선거와 더불어 언급된 주들이 완전한 참여권(volle Mitwirkungsrechte)을 취득한 후로 유보시키로 합의한다.

3. 제2조 제2항 대해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1990년 10월 3일을 법정 휴일로 정함에 있어 조약의 발효전에 취소될 수 없도록 확정된 업무활동들도 이에 모두 포함하기로 합의한다.

4. 제4조 5번에 대해 :

제143조 1항과 2항은 시간적 의미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는 장래의 입법과정시 참작되지 않는다.

5. 제9조 제5항에 대해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서베를린에 적용되고 있는 교회세법(Kirchens-teuerrecht)이 1991년 1월 1일 부로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지역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베를린주의 통지를 확인한다.

6. 제13조에 대해 :

편입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공공 행정기관에 의해 업무할당을 받지 못하는 기구나 부속기구는 다음과 같이 해체된다.

(1) 공공업무와 실무관계(Sachzusammenhang)를 맺고 있는 기구와 부속기구는 그 공공업무 담당 행정기관(연방, 주 주연합체)에 의해 정리된다.

(2) 그밖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구와 부속기구는 연방에 의해 정리된다. 불확실한 사례에 대해서 해당주나 연방은 정리부서를 설

치할 수 있다.

7. 제13조 제2항에 대해 :

기구의 전체 또는 부분이 연방으로 흡수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이전된 업무는 그 질과 양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원에 의해 인수된다.

8. 제15조에 대해 :

주 행정기관의 구성과 특수 전문업무의 수행시 소요되는 연방 및 주의 행정보조비는, 이들이 구성하는 회계부서(Clearingsstelle)에 의해 책정된다.

9. 제16조에 대해 :

조약 체결당사자들은, 1990년 10월 3일 부로 베를린 시장은 연방상원 의원으로 임명되며, 동베를린 시정부(Magistrat)의원과 기타 베를린 주정부의 임원들은 연방상원 대표부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베를린 주의 통보를 확인한다.

10. 제17조에 대해 :

이 규정은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수용된, 제17조의 의미에 따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된다.

11. 제20조 제2항에 대해 :

부록 I에서의 협정 방침에 따른 공무원법 도입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공무원채용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하여 필수 고정직책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12. 제21조 제1항 제1절에 대해 :

군사용 토지에 대한 그밖의 다른 권리주장들은 해당 주들에게 통

보되어야 한다. 연방재산이 되는 종전의 군사용 토지가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사전에 해당 주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3. 제22조 제4항에 대해 :

주택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국유토지 역시 제4항에 귀속되며, 이 토지는 목적변경없이 차후 주택조합의 소유로 이전되어야 한다.

14. 제35조에 대해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본 조약의 제35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공포한다.

① 서 슬라브민족과 문화에 대한 소속의지 표명은 자유이다.

② 서 슬라브문화와 전통의 보존 및 발전은 보장된다.

③ 서 슬라브민족의 일원과 조직들은 공공생활시 서 슬라브어를 배양하고 보존할 권리를 누린다.

④ 기본법에 따른 연방과 주 간의 관할권분할(Zustaendigkeitsverteilung)은 변경되지 않는다.

15. 제38조에 대해 :

독일민주공화국의 일반과학 아카데미, 건축 아카데미, 농업 아카데미가 다른 국가들의 기관이나 국제부서와 맺은 협정들은 본 조약 제12조에 수록된 원칙에 의해 검토된다.

16. 제40조에 대해 :

제3조 해당지역 독일인의 의료비용 인수는 연방정부의 승인하에, 연방정부에 의해 해결된다.

17. 부록 Ⅱ 제2장 제3항 2번에 대해 :

제 정당은 선거준비 및 선거기간 동안 기회균등의 권리를 누린다. 회비, 기부금 또는 국가로부터의 선거비용 배상외에 다른 방법으로 입수된 금전 또는 금전가치가 있는 재산, 특히 예전의 제휴정당(Blockpartei)소지재산 및 동독 PDS의 재산은 선거준비와 선거전에 사용될 수 없다.

정당들의 재무책임자(Schatzmeister)는 이 사항의 준수에 따른 맹세를 원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사용의 포기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12월 1일까지 확인토록 한다. 선거실시전 예전의 동독 제휴정당과 연합을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들은 연합일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해 보고를 해야 하는 바, 이는 1990년 11월 1일까지 정당법 제24조 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각 결산 및 개시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제출된다.

18. 부록 Ⅲ에 대해 :

조약 체결당사자들은 6번의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공동성명 7번 명기 전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다.

Ⅱ. 條約에 대한 議定書上의 聲明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조약의 확정 서명시까지 베를린과 전체 독일을 망라하는 전승4국 권리와 책임 및 독일 통일달성의 외적 전망에 관한 회담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된다는데 대해 합의한다.

5. 獨逸問題에 관한 國際的 協議內容

가. 第1次 「2+4會談」

(1) 會談概要

○ 日時 및 場所:90. 5. 5, Bonn

○ 參加者:東·西獨 및 美·英·佛蘇등 6개국 外務長官

○ 主要議題:統一獨逸의 NATO회원국 殘留문제, 전승4대국의 獨逸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종식문제

* 「2+4회담」의 法的 根據:

「2+4회담」의 法的 根據는 전승4대국의 獨逸에 대한 점령권 및 獨逸統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포츠담협정(1945. 8)과 獨逸條約(1955. 5)인 바, 이는 제2차 世界大戰을 종결짓는 獨逸과 전승4대국간 평화조약이 締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임.

(2) 會談內容 및 평가:

○ 제1차 「2+4회담」에서 參加國들은 統獨作業을 가속화 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統獨에 관한 2차대전 戰勝4大國의 명시적 승인을 도출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됨.

○ 그러나 동 회담은 통독과정의 최대 難題로 부각되어 온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에 대해서는 소련의 반대로 인해 합의도달에 실패함. 그러나 蘇聯은 통독이 實現되기 전에 統一獨逸의 군사적 지위가 규정되어야 하며 통독과정의 내부적 節次와 대외적 측면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내려져야 한다는 종전의 主張을 撤回하고, 일단

동·서독간 내부적 統一節次를 밟은 뒤 통일독일의 NATO회원국 문제는 추후 決定할 것을 제의함.

○ 蘇聯의 동 제의에 대해 西獨은 統獨과 관련된 대내외문제 解決의 분리는 통일추진과 독일의 주권회복에 치명적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反對를 표명했으나, 소련의 統獨관련 對內外문제 연계 주장 철회는 向後 統獨過程이 급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美國等 西方側은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동독의 西獨에의 편입이라는 인식하에 東西獨의 自體日程에 의한 통독과정의 進行을 지지하고, 전후 독일에 대한 4대국의 권한종식과 統一獨逸의 NATO회원국 잔류를 주장했으나, 「2+4」회담에서 蘇聯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배려함.

○ 즉, 서방측은 고르바쵸프 大統領이 통일독일은 소련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통일후 일정기간동안 현재의 동독영토에 소련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統一獨逸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一環으로서 제반 군축협상의 가속화 및 CSCE의 제도화 등을 推進한다는 立場임.

○ 그러나 美國은 서방권의 集團防衛裝置로서 NATO의 存續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 보는 한편, CSCE는 회원국을 위한 실질적인 安全保障을 제공하지 못하며 동·서 양진영이 安保問題를 함께 論議할 수 있는 政治的 광장으로서의 役割에 局限되어야 한다는 立場인바, 이는 NATO, WTO를 대체하는 CSCE에 기초한 신유럽 안보질서

수립을 주장하는 蘇聯의 입장과 相衝됨.

나. 제2차 「2+4會談」

(1) 會談概要

○ 日時 및 場所:90. 6. 22, 동베를린

○ 參加者:東·西獨 및 美·英·佛·蘇 6개국 외무장관

○ 主要議題:統一獨逸의 政治·軍事的 地位

(2) 會談內容

○ 同 會談에서 蘇聯은 下記 內容의 統一獨逸의 軍事的 地位에 관한 最終協定 草案을 제시함.

① 통독후 5년의 과도기동안 4대전승국의 獨逸에 대한 권한을 認定함.

② 과도기중 東·西獨 주둔 外國軍이 단계적으로 完全 철수한 뒤, 독일의 NATO 가입을 허용함.

③ 統一獨逸의 兵力을 3년내에 25만명 이하로 감축함.

④ 91년 중반까지 베를린 駐屯 외국군을 완전 철수시킴

(3) 評價

○ 蘇聯의 同 提案은 제1차 「2+4회담」시의 「통일독일의 NATO 가입반대」라는 입장에서 「統獨 5년후 NATO 가입허용」으로의 입장변화인바, 統一獨逸이 소련의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이 確實히 보장되기만 한다면 통일을 妨害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明白히 한 것으로 해석됨.

○ 서방측은 통일독일의 全面的이고 완전한 주권회복을 주장하면서 蘇聯側 提案을 거부하였으나, 동 會談에서 밝힌 소련의 입장은 서방

측이 주장하는 統一獨逸의 NATO잔류에 한걸음 유연하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됨.

다. 獨·蘇 頂上會談

○ 헬무트 콜 西獨首相은 90. 7. 15-16간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쵸프 대통령과 統獨問題에 관한 頂上會談을 가진 후 8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要旨는 아래와 같음.

① 통일독일은 동·서독과 베를린은 包含함.

② 통독 실현과 함께 전승 4개국의 獨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면 해제됨.

③ 統一獨逸은 완전한 주권을 行使하며 어떠한 군사동맹에 속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④ 統一獨逸은 동독주둔 소련군의 3-4년내 철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련과 條約을 체결함.

⑤ 蘇聯軍이 동독 영토에 殘留하는 동안 NATO의 조직은 동지역에 適用되지 않음.

⑥ 東獨 영토에 소련군이 殘留하는 동안, 西方 3個國(미·영·불)軍은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음.

⑦ 西獨은 빈에서의 유럽 在來式무기 감축협상(CFE)회의 석상에서 統一獨逸軍의 상한을 3-4년내에 37만명으로 삭감하도록 제안할 용의가 있음. 감군은 CFE조약이 發効한 뒤에 시작됨.

⑧ 統一獨逸은 核兵器, 生·化學武器의 생산 및 보유를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함.

○ 統獨에 관한 소련측 양보의 배경

－獨·蘇 頂上會談에서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그동안 強力히 반대해 왔던 통일독일의 NATO 가입을 허용한 것은 獨逸統一의 가장 중요한 대외적 장애물이 除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소련의 統獨關聯 기본입장은 통독문제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상 소련에 불리하게 作用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통독문제 해결을 현 NATO, WTO 兩 軍事同盟體制를 대체하는 범유럽안보체제로서의 CSCE의 제도화에 연계시켜 統一獨逸의 군사력을 牽制하려는 의도 및 동구권의 이탈에 대한 適切한 經濟的 보상 요구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련은 NATO의 非軍事化와 CSCE의 역할증대를 요구해 온 바, 1990. 7.5－6間 開催된 런던 NATO頂上회담에서 西方側이 군사력 감축 및 核武器 의존 감소등 NATO군사전략의 발전적 변경 시사, 統一獨逸의 병력수준제한 용의, WTO국가들과의 共同不可侵宣言 제의, CSCE의 기능강화등 획기적 결정을 함으로써 소련의 對西方 안보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함. 또한 1990. 7.9－11間 휴스턴 G7 정상회담을 통하여 서방측은 對蘇 경제지원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바, 이로써 소련이 그동안 추구해 온 安保·經濟的 측면에서의 대부분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 독일의 NATO 잔류 및 東獨駐屯 蘇聯軍 철수시기에 대한 蘇聯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한편, 소련은 통일독일의 NATO殘留 許容에 대한 댓가로서 서독으

로부터 대규모 經濟援助를 약속받았으며, 통일독일과의 광범한 협력을 규정한 獨·蘇間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서방관측통들은 獨·蘇關係의 긴밀화가 향후 美國·獨逸關係, EC및 서방세계 전체에서의 독일의 역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소련이 統獨後 3-4년의 과도기동안 유지시킬 東獨주둔 蘇聯軍을 독일과 서방측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可能性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라. 제3차 「2+4회담」

(1) 會談概要

○ 日時 및 場所:90. 7. 17, 파리

○ 參加者:東·西獨, 美·英·佛·蘇 및 폴란드等 7개국 외무장관

○ 主要議題:獨·폴란드 國境線에 관하여 하기 5개항의 원칙에 합의함.

① 統一獨逸은 現在의 東·西獨과 베를린의 영토만을 포함함.

② 동·서독은 영토의 반환요구를 防止하기 위하여 현 西獨基本法을 개정할 것에 동의함.

③ 통일독일은 여타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영토에 관한 權利를 主張하지 않음.

④ 東·西獨과 폴란드는 조약에 의해 상호 국경선을 확정할 것에 合意함.

⑤ 4大 전승국은 상기 東·西獨의 공약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同公約의 실행과 동시에 독일의 국경선을 확정될 것임을 선언함.

(2)評價

○ 獨·폴란드 국경선(오데르-나이세線)문제는 1945년 포츠담 協定에서 소련이 2차대전중 폴란드 동부지역을 흡수한 댓가로 오데르江과 나이세江 以東의 독일영토를 폴란드에 할양키로 잠정결정한 후, 최종확정은 平和條約 체결시까지 보류하였으나, 獨·폴란드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統獨後 해결과제로 提起되어 왔음.

○ 그동안 폴란드는 東獨·폴란드條約(1950), 서독·소련조약(1970), 서독·폴란드조약(1970) 및 헬싱키협정(1975)을 통하여 현 국경선의 불가침을 보장받은 바 있으나, 輿論調査에서 서독 국민의 25% 정도가 失地回復에 찬성할 정도로 보수적 性向을 보임에 따라 폴란드는 統獨前 국경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현 유럽국경의 유지를 바라는 蘇聯을 비롯한 유럽 각국도 이에 同調해 왔음.

○ 제3차 「2+4會談」에서는 통일독일의 동부 국경선을 현재의 東獨·폴란드間 국경선으로 확정하되, 統獨後 조속한 시일내 獨·폴란드間 國境條約을 체결한다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統獨의 주요 外部的 장애요인이 제거됨

마. 제4차 「2+4會談」

(1) 會談 概要

○ 日時 및 場所:90. 9. 12, 모스크바

○ 參加者:東·西獨 및 전승4개국 외무장관

○ 主要議題:統獨關聯 最終解決條約 締結

○ 6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同會談에서는 「통독관련 최종 解決에

관한 조약」(전문 및 10조)이 署名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前文〉

• 獨逸(東・西獨), 佛蘭西, 蘇聯, 英國, 및 美國은 유엔헌장에 따라, 諸民族의 동등한 自決原則을 존중

• 상기 6개국은 통독과정에서 이루어진 國境問題의 최종 타결이 유럽평화와 安定에 기여함을 인정

• 統獨달성과 동시에 전승4개국의 권리와 의무 상실

第1條:統獨국경은 東獨과 西獨의 국경으로 함.

第2條:독일의 武力不使用 宣言

第3條: • 獨逸政府의 핵・생물・화학무기 제조, 보유 및 사용포기 선언

• 獨逸軍事力을 3-4年內 37만명으로 감축

第4條:소련군 撤收問題 관련 獨・蘇間 별도 협정체결

第5條: • 통독후 독일군대중 NATO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는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東獨地域 주둔금지

• 여타 국가의 군대는 東獨地域에 주둔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軍事訓鍊도 금지

• 별도 협정에 따라 蘇聯軍이 철수할 때까지 美・英・佛軍隊의 현수준 베를린 주둔 허용

• 소련군 철수 이후, 동독주둔 獨逸軍은 군사동맹에 소속가능

第6條:統一獨逸의 동맹(alliance)가입 권리보장

第7條: • 전승4개국의 권리와 책임 종료

• 統一獨逸의 완전한 주권 회복

第8條:조약비준 절차

第9條:조약 서명 6개국의 批准書 기탁과 동시에 발효

第10條:條約 정본은 獨·佛·露·英語로 작성

(2) 評價

○ 統一獨逸과 주변국가들과의 평화유지 및 독일의 완전한 主權回復을 보장하는 同協定의 체결은 통독에 관한 외부적 조건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전후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2차대전에 관한 최종적 해결로 評價됨.

○ 동독주둔 蘇聯軍隊 철수와 關聯, 1994년까지 同 撤收軍隊를 위한 蘇聯內 주택건설등의 목적으로 120億 마르크를 지원키로 콜 首相과 고르바쵸프 大統領間에 90.9.10 電話통화에서 合意되었다고 보도된 바, 이는 상기 협정에 대한 蘇聯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간 미국이 주장해 왔던 東獨地域內에서의 NATO군 기동훈련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군대통과 및 함대기항은 허용키로 합의를 보았음. 또한 재래식 또는 核武器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 소위 「Dual Carryng System」을 東獨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兩陣營間의 문제점이 해결되어 同 條約이 설명될 수 있었음.

○ 한편, 겐셔 西獨外務長官은 90.9.13모스크바에서 統一獨逸과 소련간의 협력증진을 獨·蘇 友好協力條約에 假署名함

6. 獨·蘇 善隣友好協力 條約

前 文

獨逸聯邦共和國과 蘇聯社會主義聯邦共和國은

－유럽과 世界平和의 維持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自覺하며,

－過去를 종식시키고, 理解와 和解를 통해 유럽의 分斷克服에 실질적인 貢獻을 한다는 念願에서,

－安定的인 安保構造에 바탕을 둔 유럽의 恒久的이고 공정한 秩序와 共同의 價値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럽연합을 創造할 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人權과 基本的 自由가 범유럽 유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의 준수가 平和的 秩序의 創造過程에 있어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신념에서,

－유엔헌장의 原則과 目標들 그리고 1975년 8월 1일 헬싱키최종조약의 規定과 이에 대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후속문서들을 遵守할 것을 確認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兩國間 오랜 歷史的인 훌륭한 傳統과 선린, 우호 協力을 兩國關係의 기초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수년간 獨逸聯邦共和國 및 獨逸民主共和國과 蘇聯間의 關係發展에 基礎하여,

－양국간 모든 分野에서 相互 성과있고 이익이 되는 協力을 發展시켜 나가며, 相互 關係가 유럽의 平和와 兩國 住民들의 이익 증진에 기

여하도록 한다는 念願에 충만하여,

—1990년 9월 12일의 獨逸統一의 外的 局面에 대한 최종 합의문(2+4 합의문, 역자 주)에 관한 協定의 署名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獨逸聯邦共和國(이하 獨逸로 함, 譯者 주)과 蘇聯은 다음 原則들을 상호 關係의 基準으로 삼는다:

- 相互 相對方의 主權의 平等, 領土의 保全, 政治的 獨立性을 尊重하며;
- 個人의 尊嚴과 權利 그리고 人類의 生存과 자연환경의 保存에 대한 關心이 兩國 政策의 핵심을 이루며;
- 모든 사람들과 國家들이 그들 자신의 運命을 아무런 외부간섭 없이 자유롭게 決定하고, 獨自的인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發展을 追求할 權利를 가지며;
- 核과 在來式의 모든 戰爭이 信賴할 수 있을 만큼 防止되어야 하며, 平和가 維持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原則에서,

  國內 및 國外政策에 있어서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이 우선하며, 條約上의 義務를 성실히 履行할 것을 再確認하며;
- 人類와 現代社會의 創造的 潛在力을 平和保障과 모든 사람들의 福祉 增進에 使用할 것을 염원한다.

제 2 조 獨逸과 蘇聯은 모든 유럽國家들의 領土 保全을 현 境界線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尊重할 것을 서약한다.

兩國은 누구에 대해서도 領土에 관한 要求를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提起하지 아니한다.

양국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경계를 이 協定에 署名하는 오늘 그대로 現在와 未來에도 侵犯할 수 없는 것으로 看做한다.

제 3 조 獨逸과 蘇聯은 相對方의 領土 保全과 政治的 獨立性에 대해 유엔헌장과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조약(헬싱키최종조약, 역자 주)의 原則과 目的에 附合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武力 使用이나 위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兩國은 相互間의 의견차이를 오로지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하며, 각자의 武力을 자위와 集團的 강제조치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兩國은 결코 어떠한 條件하에서도 相對方과 제3국에 대하여 먼저 武力을 使用하지 아니한다. 兩國은 모든 국가들이 이 不可侵誓約에 참여할 것을 要請한다.

어느 일방이 攻擊을 받게 될 경우, 다른 일방은 攻擊者에 대하여 軍事的 또는 다른 支援을 提供하지 아니하며, 紛爭이 유엔헌장과 기타 集團安保上의 原則과 節次에 따라 解決될 수 있도록 可能한 모든 수단을 動員한다.

제 4 조 獨逸과 蘇聯은 특히 유럽에서 방어하기에는 충분하나 공격하기에는 불충분한 낮은 수준으로의 相互 軍事力 均衡이 이뤄질 수 있도록 兵力과 武器의 실제적인 減縮에 관한 구속력있고 효과적으로 檢證可能한 合意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信賴構築 및 安定措置를 兩者間 및 다자간에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 5 조 쌍방은 1975년 8월 1일의 헬싱키최종조약에 基礎하여 유럽에서

의 안보와 協力 發展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여기에 참여하는 國家들과의 協力을 強化하며 恒久的인 組織과 機構의 設立을 통해 이를 發展시킨다.

이러한 努力의 目標는 平和, 安定, 安全을 보장하고 유럽을 단일한 법률과 민주주의 그리고 經濟, 文化, 情報分野의 協力을 통해 統合하는 것이다.

제 6 조 獨逸과 蘇聯은 雙務的 關係의 擴張과 發展을 위하여 그리고 國際問題에 대한 각자의 立場을 調整하기 위하여 定期的인 協議를 가질 것에 合意하였다.

쌍방은 協議를 위해 일년에 한번이상 필요할 경우 最高位級 政治會談을 開催한다.

일년에 적어도 두번이상 外務長官會談을 개최하며, 國防長官會談도 定期的으로 開催한다.

다른 分野의 關係長官들도 相互 利害關心事項에 대한 協議가 필요할 경우 會談을 開催한다.

쌍방간에 이미 存在하는 委員會의 活動을 強化하기 위해 可能한 努力을 다 기울이며, 필요와 協議에 따라 새로운 혼합된 委員會를 設立한다.

제 7 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볼 때 평화를 위협·파괴하거나 國際關係 發展에 危險한 狀況이 造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狀況을 개선 克服하는데 적합한 수단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각자 입장을 調整하기 위해 즉각 協商을 실시한다.

제 8 조 獨逸과 蘇聯은 相互間의 關係를 安定되고 長期的인 基礎위에

올려놓고 兩國과 兩國住民의 信賴를 增進하기 위하여 특히 經濟, 產業, 科學, 技術分野에서의 協力을 增進할 것을 합의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經濟, 產業 및 技術協力의 發展에 관한 包括的인 協定에 서명할 것이며, 이와함께 각 分野別로 별도의 합의서도 채택해 나간다. 쌍방은 潛在的인 경제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적이고 進步된 訓練分野의 協力이 相互 關係發展에 중요하며, 이러한 協力의 擴大 發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제 9 조 獨逸과 蘇聯은 相互利益을 위해 經濟分野의 協力을 擴大 發展시켜 나간다. 쌍방은 國內法 規定과 國際協約에 따른 의무 範圍內에서, 가능한 한 상대방의 市民과 企業 및 국영기관의 企業活動에 유리한 環境을 造成한다. 이것은 특히 資本投資와 投資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쌍방은 經濟協力을 위해 兩側의 當事者間에 締結된 契約과 計劃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이를 促進한다.

제 10 조 쌍방은 1986년 7월 22일의 경제 및 技術協力에 관한 協定에 基礎하여 交流를 발전시켜 나가며, 共同의 事業을 推進한다. 쌍방은 모든 사람의 利益과 健康과 繁榮을 위해 現代 科學技術의 成果를 이용하며, 이 분야의 硏究者와 硏究機關의 創意力을 支援하고 증진해 나간다.

제 11 조 쌍방은 자연자원의 보존이 건강한 經濟的 社會的 發展에 必須不可缺하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1988년 10월 25일의 協定에 기초하여 環境保護 分野에서의 協力을 유지 발전한다는 각자의 決定에 동의한다.

쌍방은 環境保護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解決하며, 環境 有害要因 연

구와 그 防止手段 開發에 協力한다. 쌍방은 國際的 특히 유럽에서 超國家的인 環境政策 樹立을 위한 共同戰略과 槪念發展에 參與한다.

제 12 조 쌍방은 獨逸地域과 蘇聯間의 超現代的 기술을 이용한 交通協力(航空, 鐵道, 海運, 運河, 道路)을 확대해 나간다.

제 13 조 쌍방은 互惠의 原則에 따라 兩國間 社會, 經濟, 文化目的 및 科學技術協力 目的을 위한 兩側 住民의 訪問許可節次를 簡素化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4 조 쌍방은 政黨, 勞組, 財團, 學校, 大學, 體育團體, 教會, 社會團體, 女性團體, 環境保護, 기타 다른 社會團體 및 組織들간 協力과 양측 주민들간의 接觸을 폭넓게 지원한다.

쌍방은 兩國의 議會間 接觸 強化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쌍방은 共同體, 지방, 주 그리고 (蘇聯)共和國間 友好와 協力을 환영한다.

獨逸－蘇聯間 討論廣場(discussion forum)과 전파매체간 협력도 중요한 役割을 할 것이다.

쌍방은 청소년들과 그들 組織間 交流 接觸 및 共同作業을 보다 손쉽도록 한다.

제 15조 獨逸과 蘇聯은, 수세기에 걸쳐 相互 풍부한 文化遺産과 유럽의 共同文化 유산에 끼친 쌍방의 간과할 수 없는 貢獻 그리고 文化交流가 양측 주민들간의 相互 理解增進에 미치는 重要性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文化協力을 增進해 나간다.

쌍방은 문화센터의 設立과 活動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장려한다.

쌍방은 自發的으로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相對方의 言語와 文化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公共의 그리고 個人的인 시도를 장려한다.

쌍방은 學校, 大學 기타 다른 教育機關에서 相對方의 言語를 배울 수 있는 可能性을 擴大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쌍방은 교사의 教育과 訓練, TV, 라디오, A/V장비, 컴퓨터를 포함한 교육장비의 보급에 있어 상대방을 지원한다. 쌍방은 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교의 설립을 지원한다.

蘇聯에 居住하는 獨逸人과 獨逸에 永住하는 소련시민은 그들의 언어, 문화, 전통을 보존하며, 그들의 民族的, 言語的, 文化的 主體性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존하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쌍방은 이러한 目的을 장려하기 위한 상대방의 活動을 保障하고 促進한다.

제 16 조 獨逸과 蘇聯은 각자의 領域에 있는 相對方의 文化遺產을 保存한다.

쌍방은 분실되거나 非合法的인 去來에 의해 현재 각자의 領域에 있는 藝術品을 본래 소유자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반환할 것에 동의한다.

제 17 조 쌍방은 相互關係에 있어 인도적 문제에 관한 協力의 特別한 重要性을 強調하고자 한다. 쌍방은 이러한 協力을 強化해 나가며, 양측의 광범한 慈善機關을 포함한 인도적 분야의 協力을 強化해 나간다.

제 18 조 獨逸政府는 戰爭과 獨裁에 의한 蘇聯 희생자들의 記念碑가 尊重되고 獨逸法에 의해 보호될 것임을 선언한다. 마찬가지로 蘇聯의 戰爭死亡者들의 무덤도 繼續 보호될 것이다.

蘇聯政府는 蘇聯領域내에 있는 獨逸人 무덤에의 出入을 許可하며, 그 유지·보존을 허용한다.

쌍방의 적절한 조직이 이 分野의 協力을 強化해 나가도록 한다.

제 19 조 獨逸과 蘇聯은 민사절차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f Civil Procedure)에 기초하여 家族法과 民法 문제에 대한 法律的 協調를 強化한다. 쌍방은 각자의 法律體系와 國際法에 따라 犯罪事件에 대한 法律的 協調를 發展시켜 나간다.

獨逸과 蘇聯은 組織犯罪, 테러리즘, 마약범죄, 民間航空·海上運送에 대한 不法的 개입, 僞造紙幣의 制作 流通, 藝術品의 不法的 이동을 포함한 밀수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關係機關間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協力의 條件과 節次는 별도로 합의한다.

제 20 조 쌍방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및 旣存 協定上의 利害關係를 考慮하여, 國際機構에서의 양국정부간 協力을 增進시켜 나간다. 쌍방은 어느 일방이 구성국인 國際 특히 유럽 기구와 다른 일방과의 協力增進을 서로 돕는다.

제 21 조 이 條約은 각자가 이미 다른 나라와 締結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協定으로부터 제기되는 權利와 의무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條約은 어느 일방에 반대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며, 쌍방은 양측간 協力을 유럽安保協力會議의 발전에 動態的 部分으로 看做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요한다 : 批准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교환한다. 이 조약은 批准書를 交換하는 날로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이 조약은 향후 20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는 어느 일방이 만기 1년전까지 합의를 무효로 하지 않는 한 自動的으로 5년간 延長된다.

7. 全유럽安保協力會議 頂上會談 結果

가. 概要

○ 미국·소련·캐나다 및 전 유럽의 34개국 수뇌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90. 11. 19－21파리)된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정상회담에서는

①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협정(CFE) 체결

② NATO·바르샤바조약기구 (22개국)간 불가침 우호선언

③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선언』 (일명:파리헌장)을 채택한데 이어, 각국 수뇌연설 및 개별국간 정상접촉 등을 통해 페르샤만 사태와 소·동구 지원問題를 集中 협의함으로써 신유럽질서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歷史的인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번 회의 참가국은 ① NATO 16개국 ②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국 ③ 북구 및 남구 12개국 등으로 헬싱키회의 (35개국)에 버금감.

※ 알바니아는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개국은 프랑스정부의 비공식 초청인사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하였으나, 蘇聯의 拒否權 행사로 개막식이후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음.

나. 關聯 主要動向

○ 이번 회의직전 정식 조인(11.19)된 유럽배치 재래식전력 감축협정은 NATO 16個國과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국이 비엔나에서 속개된 유럽 재래식전력 減縮會談(11.15)에서 탱크, 전투기 등 5대병기의 보유상

한선, 초과병기 처리장치, 검증방법 등을 골자로 합의한 협정(총 23개 조항)으로서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 공격용 재래식 무기의 限度를 設定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信賴構築의 土臺를 마련하였음.

협정문 주요골자

① 5대병기 保有上限線

○ 탱크 2만대, 장갑차 3만대, 대포2만대, 전투기 6,800기, 헬기 2,000기

○ 국가별 보유상한선은 양측 총보유수의 33.3%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兩側 合意에 의거,최대 37,8%까지 보유 가능

② 초과병기 處理措置

○ 초과병기의 大部分은 완전 廢棄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는 민수용 전환 허용

○ 병기 처분은 조약발효후 16개월내 25%, 28개월내 60%등 40개월내 완전 삭감

③ 檢證方法

○ 군사정보교환과 현장·공중·위성사찰을 통한 상호 감시

○ 현장사찰 회수는 보유전력에 따라 결정

④ 紛爭調停機構 설치

○ 이견조정 및 분쟁해소를 위해 『합동협의그룹』설치

재래식전력 현황 및 감축 규모

구 분	현 보유력		CFE 협정 상한선
	NATO	바르샤바기구	
탱크	23,600대	52,600대	20,000대
포	18,504문	41,800문	20,000문
장갑차	34,025대	73,997대	30,000대
전투기	5,700기	12,280기	6,800기
헬리콥터	2,235기	3,500기	2,000기
해군기	2,618기	1,061기	차기 CFE협상대상
군함	565척	361척	차기 CFE협상대상
잠수함	227척	254척	차기 CFE협상대상
지상병력	289만 6천명	290만 6천명	차기 CFE협상대상

○ 이번 유럽재래식전력 減縮協定에서 나타난 특징은 쌍방이 그동안 논의해온 병력삭감 문제는 除外되었으나, 쌍방이 5대병기의 減縮에 일단 합의, 재래식전력의 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特定地域內 무기의 集中配置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대륙을 다음과 같이 4개지역으로 구분, 戰爭可能性을 사실상 排除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① 핵심지역(독일, 폴란드, 체코):전차 7,500대, 대포 5천문이 상한선

② 중간지역(영·불·이태리, 발트3국 및 백러시아)

③ 후방지역(모스크바, 우랄, 볼가군구, 스페인):상당히 높은 상한선 유지 가능

④ 측면 지역 (레닌그라드, 코카서스, 노르웨이 ,터키): 자체 상한선 설정

○ 그러나 실제 양측의 同數 보유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나토는 보유병기를 10-15%를 廢棄하는데 반해, 바르샤바조약기구는 40-60%를 감축해야 하는 불균형적인 삭감을 추진해야 하며, 소련 및 統一獨逸의 전력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여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注目됨. 단지 아직 병력수의 제한과 상호 영공개방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아 있으며, 蘇聯이 이번에 減縮된 재래식 무기와 독일 주둔군의 철수병력을 우랄산맥 동쪽지역에 이동시킬 경우,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새로운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에 採擇된 파리헌장은 자유·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유럽질서를 強調하고, 이를 具現키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으로서 인권, 경제협력, 환경문제 해결 등을 主張하였으며, 獨逸統一을 追認함과 동시에 현 국경선을 재확인하였음.

○ 특히 CSCE의 상설기구화에 合意함으로써 東西冷戰 종식후 범유럽 평화체제를 지탱할 중추기구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상설 사무국을 프라하에, 분쟁방지센터를 비엔나에, 自由選擧감시기구를 바르샤바에 설치키로 하고, CSCE의회 협의회를 발족·運營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정상회담을 매 2년마다 개최하며, 이사회로서 외상회담을 매년 開催하기로 合意하였음.

파리憲章 要旨

1. 民主主義 平和, 統合의 새로운 時代

우리들 참가국 정상은 커다란 변화와 歷史的인 기대의 시기에 파리에 모였다. 유럽에 있어서 對立과 分裂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의 우리의 관계가 존경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유럽은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스스로를 解放시키고 있다. 헬싱키최종문서의 이념은 유럽에 민주주의와 평화, 통합의 새시대를 열었다.

① 人權, 民主主義, 法의 支配

우리는 유일한 정치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를 건설, 강화할 의무를 진다. 人權과 基本的 自由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법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自由롭고 公正한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民主主義는 人間과 法의 支配 尊重에 基礎를 둔다. 우리는 국내 少數民族의 民族, 文化, 言語, 宗教的 독자성을 존중한다.

② 經濟的 自由와 責任

經濟的 자유, 사회정의,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은 번영에 不可缺하다. 자유와 정치적 복수주의는 시장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이다. 시장경제 이행을 成功시키는 일은 重要하며 繁榮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③ 參加國간의 友好關係

유럽에 새 시대가 탄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유럽 제국, 미국, 캐나다 사이의 우호관계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제국민간의 우정을 촉진하기로 決議한다.

유엔헌장 및 헬싱키최종문서에 따라 모든 나라의 영토보전, 政治的 독립에 대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과 그 行使를 禁止한다.

④ 安全保障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협정(CFE)의 조인을 환영한다. 일련의 實質的인 새로운 신뢰·안전 조성조치의 採擇을 시인한다.

⑤ 統合

「獨逸問題의 最終解決에 관한 條約」에 커다란 만족을 표명한다. 북미와 유럽 각국 양측의 참가가 CSCE의 基本的 特徵이다. 공통행동과 협력, 연대에 의해서만 직면한 도전에 對處할 수 있다.

⑥ CSCE와 세계

참가국의 운명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連結돼 있다. 유엔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촉진에 기여하는 유엔의 役割 강화를 희망한다.

2. 세부 실천 방안

CSCE의 모든 원칙, 조항을 완전 이행하고, 나아가 균형잡힌 포괄적인 協力關係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인권분야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불가침한 것으로 존중한다.

이 목적을 위해 1991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오슬로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연다.

소수민족 보호가 忠實히 되도록 협조하는 일이 긴급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少數民族問題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91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開催한다.시민간의 自由로운 이동과 접촉, 정보나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自由社會와 繁榮을 누리는 문화의 유지와 發展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安全保障

CFE 조약과 신뢰조성조치(CBM)에 관한 협의의 성과를 한층 강화한다. CBM과 CFE를 계속하여 92년 개최 예정인 헬싱키 재검토회의때까지 協議를 完了하도록 努力한다. 또 화학무기의 포괄적 금지조약 및 영공개방 計劃을 조속히 締結하도록 촉구하다.

③ 경제협력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협력은 참가국간 관계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변영된 통일유럽을 건설하는데 有効하다. 市場經濟의 확립과 자립경제기반의 創設에 애쓰고 있는 諸國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確認한다.

④ 環境

참가국은 環境問題 해결의 긴급성과 개별적이고 공동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認定한다. 또 환경파괴에 관한 정보 교환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유럽환경기관(EEA)의 설립을 환영한다.

3. CSCE의 새로운 구조와 제도

차기 정상회담은 92년 헬싱키에서 열리는 재검토회의와 함께 열리며 그후 2년에 1번씩 개최된다. 이사회로서 외무장관회담을

적어도 년1회 연다. 이사회는 CECE 정치적 협의의 주요 場이 된다. 제1회 회의은 91년 베를린에서 연다. 고급사무레벨위원회가 이사회를 준비하고 그 決定을 이행하며, 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緊急懸案事項을 검토하는 특별회의 및 각료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이들 協議事項을 行政支援하기 위해 프라하에 事務局을 설치한다. 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위기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빈에 분쟁방지센터를 設置한다. 선거에 관한 참가국간의 접촉과 정보교환을 위해 바르샤바에 자유선거사무소를 設置한다.

전 가맹국의 國會議員을 포함한 CSCE議會 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회의보다 積極的인 참여를 摸索한다.

다. 평가 및 전망

○ 이번 CSCE 34개국 정상회담은 戰後 冷戰體制의 종식과 동반 협력시대의 신유럽질서 구축을 公式的으로 선언했다는 데에서 歷史的 의미가 있으며, 유럽이 向後 신국제질서 구조상 美·蘇와 대등한 實體로 부상하였음을 실감케 해주었음.

○ 이번 회의의 성과는

① 재래식전력 감축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재래식 전쟁위협을 減小시킴은 물론, 영공 개방, 화학무기 전폐, 전략·전술핵 감축협상 등 持續的인 군축노력과 신뢰구축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② 새로운 유럽질서의 재편을 위한 공동가치 理念으로 西方側의 민주·자유경제체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유럽체제의 安定을 위해 CSCE의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③ 종래의 군축·인권문제 중심에서 政治·經濟協力을 비롯한 소수민족문제, 국제범죄, 분쟁문제 등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擴大했다는 점 등이 特記할 만함.

○ 금후 전반적인 유럽질서 재편방향은 EC를 유럽통합의 基本軸으로 하되, 범유럽 차원에서 서구, 동구, 소련간 協力關係를 중심으로 CSCE통합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獨逸統合 研究 資料集

1990년 12월 20일 인쇄
199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통 일 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145
인쇄처 양동문화사

〈 비매품 〉